#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 방안

권미경 이재희 최인화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 방안

권미경 이재희 최인화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리말

다문화가족 지원 현장에서 이혼, 사별 등을 이유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다문화 배경과 한부모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지닌 가족 상황에서도 자녀들은 성장하고 있고, 시간이 지난 이후 그 과정을 돌이킬 수는 없다.

배경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서 부 모의 상황으로 인해 성장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한국사 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자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은 최소 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렇듯 다문화 지원정책 중 사각지대로 보이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의 육아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그를 반영한 정책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문화 한부모의 현황과 양육 실태를 통계분석과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파악하고 지원요구를 수렴하였다. 그 결과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양육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개선 방안을 성장하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 역량 강화, 지원 제도 및 정책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제언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이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와 그 자녀들을 위한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그동안 본 연구 과정에 참여하여 주신 학계 전문가, 정책 실무자,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회** 

# 차 례

요약	1
I. 서론 ·····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 내용	10
3. 연구 방법	11
4. 선행 연구	16
Ⅱ.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현황	20
1. 다문화 결혼, 이혼 및 출산 현황	20
2.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특성	
3. 소결	44
Ⅲ.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지원 정책 현황	47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2.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3. 국외 정책 사례	
4. 소결	93
Ⅳ.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양육지원 요구	96
1. 결혼, 이혼과 사별의 어려움	
2. 국적 취득/귀화 관련 문제	
3. 주거 및 공간 문제	
4. 경제적 문제	103
5. 자녀 양육 과정의 어려움	107
6. 지원 이용 및 개선 요구	115
7. 소결	
V.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지원 정책 개선방안 ····································	127
1. 지원정책 개선 방향	

2.	지원정책	개선	방안		•••••	•••••	•••••	•••••	 •••••	·· 130
참고	문헌	•••••		•••••	•••••	••••	•••••		 	·· 144
부록						••••	•••••		 	149
부	록 1. 다문	화 배	경을 지닌	한부모	면담지				 	151

# 표 차례

〈丑	I -3- 1>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분석 대상12
〈丑	I -3- 2>	심층면담 대상자 개요13
〈丑	I -3- 3>	조사내용14
〈丑	I -3- 4>	자문회의 개최15
〈丑	I -3- 5>	참여 전문가15
〈丑	$\Pi$ -1- 1 $\rangle$	다문화 결혼 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2014~2016) 20
〈丑	$\Pi$ -1- 2 $\rangle$	평균 결혼 연령(2014~2016)22
〈丑	<b>□-1-</b> 3>	성별 출신 국적별 비중(2013~2015) 24
〈丑	$\Pi$ -1- 4 $\rangle$	다문화 이혼 건수 및 전체 이혼 중 다문화 비중(2014~2016) 25
〈丑	$\Pi$ -1- 5 $\rangle$	다문화 이혼 미성년 자녀 유무별 비중(2014~2016) 28
〈丑	$\Pi$ -1- 6 $\rangle$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출생 비중(2014~2016) 29
〈丑	<b>□-2-</b> 1>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월평균 소득32
〈丑	<b>∏-2- 2</b> >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주택 점유형태32
〈丑	<b>□-2-</b> 3>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전반적인 건강상태33
〈丑	<b>□-2-4</b> >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슬픔 및 절망감 경험34
〈丑	<b>□-2-</b> 5>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35
〈丑	<b>□-2-</b> 6⟩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생활 만족도35
〈丑	<b>□-2-</b> 7>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자녀와의 의사소통 관계 및 부모역할 37
〈丑	<b>□-2-</b> 8>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만5세 이하 자녀의 부모역할 어려움 38
〈丑	<b>□-2-</b> 9⟩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재학생 학부모 역할 어려움 39
〈丑	<b>□-2-1</b> 0⟩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한국생활의 어려움40
〈丑	<b>□-2-11</b> >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사회적관계도42
〈丑	<b>□-2-12</b> >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교육지원 필요정도 $1$ 43
〈丑	<b>□-2-13</b> >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교육지원 필요정도 243
〈丑	III-1-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49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63
〈丑	III-2- 2>	모자가족복지시설 유형70
〈뀨.	III-2- 3>	2017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75

〈丑 Ⅲ-5	2- 4>	기타 저	소득 한	부모가	족지원 사	업	•••••	•••••	•••••	•••••	78	
⟨묲 Ⅲ-5	2- 5>	자산형/	성 지원 …		•••••		•••••				82	
⟨묲 Ⅲ-5	2- 6>	다문화	한부모 >	지원체계	네				•••••		84	
〈丑 IV-	7- 1>	다문화	한부모 >	가정의	어려움과	고려되	는 대	안		1	124	

# 그림 차례

[그림 ]	I-1- 1]	다문화 결혼 건수 및 다문화 비중 추이, 2008~2016 21
[그림 🛮	I-1- 2]	다문화 결혼 유형별 비중(2008, 2015~2016) 21
[그림 🛮	I-1- 3]	평균 결혼 연령(2016)23
[그림 ]	I-1- 4]	다문화 결혼 부부 연령차별 비중(2016)23
[그림 ]	I-1- 5]	결혼종류별 비중(2016)
[그림 ]	I-1- 6]	다문화 이혼 건수 및 다문화 비중 추이(2014~2016) 26
[그림 ]	I-1- 7]	다문화 유형별 이혼 비중(2008, 2015~2016) 27
[그림 ]	I-1- 8]	다문화 이혼 연령(2015)27
[그림 ]	I-1- 9]	결혼 생활 지속기간별 비중(2016) 28
[그림 ]	I-1-10]	이혼종류별 비중(2016)
[그림 ]	I-1-1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16) …30
[그림 ]	I <i>-</i> 1-12]	다문화 출산 유형별 비중(2008, 2015~2016) 30
[그림 ]	I-1-13]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2016) 31
[그림 II	I-1- 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51
[그림 V	7 <b>-1-</b> 1]	다문화 한부모를 위한 지원정책 개선방향 및 방안130

# 요약

4	ì	- 11	
		M	ᆍ

□ 문헌연구

가	여구이	필요성	민	모전

□ 다문화가족지원 현장에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혼, 사별 이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초보적인 수준임.
□ 다문화 지원정책 중 사각지대로 보이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의 지원요구를 파악하고 정책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 을 마련해야하는 시점임.
□ 본 다문화 한부모의 현황과 양육 실태를 통계분석과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파악하고 지원요구를 수렴함으로써,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의 건 강한 양육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다문화 한부모 가족, 이혼 결혼이주여성 등 선행연구에 나타난 다문화 가족 특성 어려움의 양상 및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고찰함.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 현황을 파악함.
□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제도와 국외 관련 지원정책 사례를 검토함.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의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 견을 수렴함.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의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

- 다문화 한부모, 한부모 이주 여성, 다문화 해체가족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함.
- 통계청에서 2017년도 발표한 '2016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분석함.
- 다문화 가족지원 관련 제도 및 법적 기초를 검토함.
- 다문화와 한부모 관련 지원이나 국외 정책 사례를 온라인 자료와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함.

#### □ 관련 통계자료 분석

- 2015년도에 실시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함.

#### □ 심층면담

- 다문화 배경을 지닌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총 15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여부, 한 부모가 된 경로(이혼, 사별), 자녀연령(영유아, 초등학생)등을 고려하여 눈덩이 표집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함.
- 결혼, 자녀양육 경험, 이혼 또는 사별, 한부모로 경험하는 어려움, 정책적 지원요구 등을 질의함.

### □ 전문가(학계/현장) 자문회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 사업 담당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지원사업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 경험을 지닌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함.

#### 라. 선행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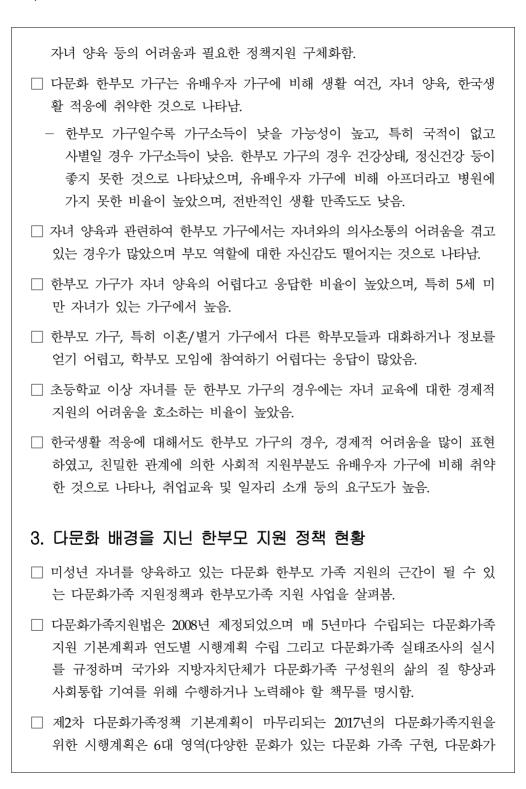
관련	선행	연구들을	보다	현상학적	관점이	세서 경	형험하는	문제점과	특성	파악에
초점-	을 둔	연구와 >	지원방	안에 무기	세를 둔	연구	로 구분히	나여 고찰현	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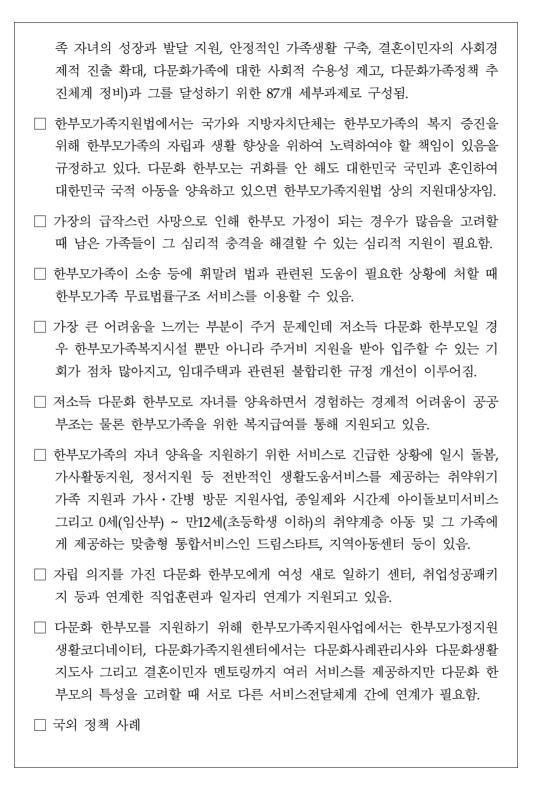
□ 관련	년 선행	연구들은	연구	대상자에의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야고	1 연구	보다는 주류	· 질적	연구의 방	번이로 c	기루어짐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와 그 자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그들의 여	거려움
은 구체하하고	그에	대하 지워방아을 모색한이 주류를 이루	

□ 다문화 배경국가와 상관없이 다문화 한부모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서 도출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 국적 미해결 등으로 수렴됨.
2.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현황
□ 통계청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2016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와 2015년도에 실시한 다문화 가족실태조사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통해 다문화 결혼, 이혼, 출산 등 현황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을 파악함.
가. 다문화 결혼, 이혼 및 출산 현황
<ul><li>□ 다문화 결혼은 최근 9년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체 결혼에서 다문화 결혼 비중이 2008년 11.2%를 정점으로 2016년도에 7.7%임.</li></ul>
□ 다문화 가구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합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고, 남편과 아내의 연령차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편과 아내가 모두 초혼인 비율이 낮고 재혼 등 결혼 유형이 상대적으로 다양함.
□ 결혼 비중 감소와 함께 전체 이혼 건수 중 다문화 이혼 건수도 최근 9년간 감소하였으나 2016년도 전체 결혼 중 다문화 비중이 7.7%인 것에 비해 전체 이혼 중 다문화 비중이 9.9%로, 결혼 건수 대비 이혼 수가 한국인간 이혼보다 높음.
□ 다문화 출산 수는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인 간 결혼에서 출산 수치보다 감소폭이 많지 않아 출생아 수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8년에 2.9%에서 2016년도에 4.8%로 크게 증가하여 다문화 가구에서 어머니의 출산 연령이 한국인 가구에 비해 어리고, 출산 간격이 짧음.
나.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특성
□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혼인상태(유배우

자, 사별, 이혼/별거), 국적취득 여부(국적 있음, 국적 없음)를 교차 분석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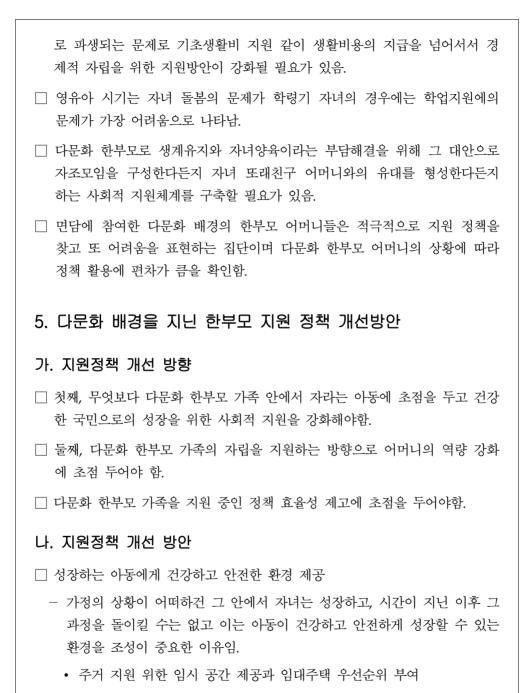




 우리와 비슷하게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문화 정책을 발전시켜 온 독일의 경우를 '독일의 이주통합정책'을 통해 살펴봄.

## 4.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양육지원 요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부모 대상 심층면담 내용과 다 문화 한부모 관련 지원 정책 실무자와 지원 단체 관련자의 면담내용을 분석 제시함.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15인의 면담내용을 통해 결혼, 이혼과 사별 등 한부모가 된 과정과 국적 취득 문제, 거주,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지원 이용의 어려움 등을 파악함.
	관련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 선행연구자, 지원 실무자, 자조모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무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다문화 한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지원을 위해서 는 한 부분의 개선이 아닌 종합적이고 총체적 접근이 필요함.
	다문화 배경을 지닌 여성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이혼 상황과 사별 후 재산 분배의 과정이 어머니들에게 불리하고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확인함.
	다문화 배경을 지닌 어머니들에게 국적 취득은 지원정책과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나 그 과정이 수월하지 않음.
-	<ul> <li>한국어 교육, 귀화준비 교육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서류 준비나 은행 잔고 확보 등에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이러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다문화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이 국적 취득 후 지원 가능하므로 국적의 취득을 돕는 것이 우선 필요한 과정으로 고려됨.
	다문화 한부모의 경제적 빈곤은 이혼과정의 불평등, 국적 미취득 등 의 결과



• 자녀양육 기간 동안 다문화 한부모의 한국 국적 인정

•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강화

- □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 역량 강화
  - 어머니 스스로 양육자로의 역량을 낮게 인지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보완되어야 함.
    - 예방적 차원의 상담 및 학습기회 확대
    - 워스톱 정보제공
    - 다문화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마련 및 강화
    -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자조모임 활성화
- □ 다문화 한부모 지원 제도 운용 효율성 제고
  - 법적 제도적 정비
  - 지자체 정책 숙지와 담당 업무분담, 정확한 안내가 필요
  - 다문화 한부모 지원정책 안내 매뉴얼 개발 및 배포
  - 지원 정책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 지원정책에 접근 못하는 다문화 한부모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현황 파악

정책 방향	지원방안
다문화 <b>한부모</b> 가족 안에 성장하는 <b>아동</b> 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제공	-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 자녀양육 기간 동안 기초생활 지원 -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다문화 <b>한부모</b> 가족 <b>어머니</b> 역량 강화	- 예방적 접근으로의 상담, 학습기회 확대 - 원스톱 정보제공 및 안내 -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제공 - 사회적 네트워크/자조모임 등 연계 강화
다문화 <b>한부모 지원 제도 및 정책</b> 의 효율성 제고	- 법적 제도적 정비 - <b>지자체</b> , 중심 정책안내 - 전달체계 역할과 업무 분장 명료화 - 다문화 <b>한부모</b> 현황 자료구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가족지원 현장에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혼·별거 혹은 사별 등의 이유로 한부모 여성 결혼이 민자 또는 귀화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이혼・별거 혹은 사별 상태의 결혼이민자, 귀화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자녀양육과 교육에도 부담이 심각 하다. 귀화나 영주권 취득이전이면, 외국인 신분으로서 국민기초보장수급권자 지정 등을 포함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기 쉽다.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양육과정에 도움을 받기 어렵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을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혼, 사별 이후 다문화 가족이 직면하는 현실과 이에 기초한 정책 의제 개발은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 서지 못하고 있어(김이선・김영란・이해응, 2016. p.9) 많은 정책적 지원에서 배 제되기 쉬운 상황이다.

다문화 지원정책 중 사각지대로 보이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의 지원요구를 파악하고 정책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시점이다. 특히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 안에서 성장하는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1부 제2조)에서 명시하듯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한다. 더욱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심각성을 더하는 현황을 고려할 때 출생한 자녀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이며 다문화 배경을 지님으로 인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한부모의 현황과 양육 실태를 통계분석과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파악하고 지원요구를 수렴함으로써,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양육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및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감으로써 다문화 배경을 지닌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 2. 연구 내용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양육환경 구축을 위한 양육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을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첫째, 다문화 한부모 가족, 이혼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족특성과 다면적 인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그 어려움의 양상 및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둘째, 가장 최근 발표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 현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 중인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양육 지원요구에 초점을 두었다. 매 3년 마다 수행되는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한부모 변인을 활용하였다.

셋째,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제도와 한부모 지원제도를 검토하였다. 현 제도와 법규 검토를 통해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이 현행 제도에서 하에서 사 각지대로 정책 수혜 시 배제되기 쉬운 부분을 확인하였다. 독일 등 국외 관련 지원정책 사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넷째,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의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의 사례와 연구대상자에 대한 심층면담으로 자녀양육 현황과 어려움, 지원요구를 파악하였다. 또한 현재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던 학계 전문가 등을 통해 지원정책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섯째,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3. 연구 방법

####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다음의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다문화 가족 영유아 지원 제도 및 개선방안 관련 연구를 다문화 한부모, 한부모 이주 여성, 다문화 해체가족 등의 키워드를 이용 검색하여 파악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다 문제점과 특성 파악에 초점을 둔 연구와 지원방안도출에 초점을 둔 연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통계청에서 2017년도 발표한 '2016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내용 중 한부모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다문화 가족지원 관련 제도 및 법적 기초를 검토하였다.

넷째, 다문화와 한부모 관련 지원이나 국외 정책 사례를 온라인 자료와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 나. 관련 통계자료 분석

2015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통해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서는 함께 거주하는 자녀만 자녀로 간주하기 때문에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유로 분석 대상을 선정할 때, 함께 거주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녀가 있어야지만 응답할 수 있는 문항에 실제 응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분석에서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활용한 문항은 '귀하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다음 중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와 '귀하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다음 중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이었다. 두 문항은 만 5세 이하나 초·중·고등학교 재학(휴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할 수 있도록 제시한 문항이었다. 두 문항 중에 하나라도 응답한 표본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sup>1)</sup> https://mdis.kostat.go.kr/ (인출일: 2017년 11월 14일)

총 10,922명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표본의 83.3%는 여성이었고 14.7%는 남성이었다. 연령 기준으로 살펴보면 30~39세가 35.2%, 40세~49세 24.0%, 30세 미만이 22.8%였다. 이혼/별거는 2.7%, 사별인 경우는 1.2%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96.2%였다. 국적이 있다고 응답한 표본은 45.5%, 없다고 응답한 표본은 54.5%였다.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결혼, 이혼, 출산 등 현황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혼인상태, 국적취득여부를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응답자 특성	표본 수	비율(%)
	합계	10,922	100.0%
	남성	1,608	14.7%
성별	여성	9,093	83.3%
	무응답	221	2.0%
	30세미만	2,490	22.8%
	30세~39세	3,846	35.2%
연령	40세~49세	2,620	24.0%
연생	50세~59세	1,201	11.0%
	60세 이상	544	5.0%
	무응답	221	2.0%
	유배우자	10,502	96.2%
혼인상태	사별	130	1.2%
	이혼/별거	290	2.7%
	있음	4,966	45.5%
한국국적	없음	5,956	54.5%

〈표 I-3-1〉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분석 대상

## 다. 심층면담

본 연구는 연구대상에의 접근이 쉽지 않은 한계를 지녀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지원 제도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및 규모는 다음 <표 I-3-2>와 같다. 다문화 배경을 지닌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총 15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여부, 한 부모가 된 경로(이혼, 사별), 자녀연령(영유아, 초등학생)등을 고려하였다. 한부모가 된 사유를 중심으로 면담자 특성을 구분 제시하였다.

주: 2015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토대로 재분석함.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자와 한부모 자조모임 참 여자를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 \Pi$	1 -	<b>3</b> _	2)	人I:	츠며	다	LH	상자	٦L	Q
\ <del></del>	- 1	U	<u>_</u> /		$\circ$		ш	O(N)	ノロ	

면담자 (N=16)	연령	출신 국가	국적 상태	체류 기간	자녀	취업 여부
이혼 1	41	필리핀	필리핀	6년	유아 1	0
이혼 2	36	중국	중국	5년	초등 2	O
이혼 3	31	러시아	러시아	6년	유아 1	O
이혼 4	46	미얀마	미얀마	10년	영아 1	X
이혼 5	30	중국	중국	6년	유아 1	X
이혼 6	38	태국	태국	9년	초등 1	O
이혼 7	25	중국	중국	2년	영아 1	O
이혼 8	42	중국	중국	15년	초등 2	O
이혼 9	50	일본	일본	21년	유아1, 중등1, 고등1, 성인1	X
사별 1	45	몽골	몽골	15년	중등 1	O
사별 2	51	중국	한국	15년	초등 1	O
사별 3	38	베트남	베트남	13년	초등 1	O
사별 4	44	중국	한국	13년	초등 2	O
사별 5	32	캄보디아	한국	10년	초등 1	O
사별 6	52	일본	한국	10년	초등 1	X
사별 7	31	베트남	한국	9년	초등 1	X

주: 본 연구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 자료임.

조사내용의 내용은 다음 <표 I-3-3>과 같으며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부록 1>로 제시하였다. 결혼, 자녀양육 경험, 이혼 또는 사별, 한부모로 경험하는 어려움, 정책적 지원요구 등을 질의하였다.

〈표 I-3-3〉조사내용

-	7분	비고
	결혼 생활	결혼 후 가장 힘들었던 점/시부모와의 관계/취업여부/같은 국적 사람들과의 교류여부, 이혼(사별) 후 가장 달라진 점/재산분배 과정/시부모와의 교류/자녀와 아버지의 교류, 이혼(사별) 이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이혼 결정 당시/이후 도움을 준 사람
어려움 현황	주거 및 경제재산	소득 수준, 이혼(사별) 이후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험, 거주지 구할 때 어려운 점/받았던 지원유형
	자녀 양육	가장 어려운 점,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제도의 여부,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 스스로 가장 잘하고/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모국 방문 여부(귀국 후 자녀가 어려워한 부분), 양육비 수령여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 요청 경험)
	자녀 관련	기관 이용여부(이용 시 어려움 여부), 자녀의 기관(학교) 생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유무/활동유형, 이혼(사별) 후 자녀의 변화/ 자녀의 어려움/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건강 및 일반복지	의료보험 혜택여부, 자녀 및 본인의 건강진단 유무, 기초 생활 수급 수령 여부
어려움 현황	직장 및 사회관계	현재 주로 교류하는 사람, 취업 방법, 구직 시 어려웠던 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령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시간, 직장에서 힘든 점
	귀화	귀화 신청 횟수, 귀화과정의 어려움, 귀화 시 도움 받은 곳, 향후 받고 싶은 귀화 관련 지원
	한국사회 인식 및 문화적응	한국을 자녀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다문화 한 부모 어머니로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든 점
	향후계획	한국 거주계획, 귀국 계획, 한국에 머무를 시 가장 걱정되는 점
정책 요구	정책이용 및 요구	다문화/한부모 가족으로서 받은 혜택, 현재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요구하는 지원유형
개인	부모특성	연령, 국적, 한국 거주기간, 결혼연령, 남편과 헤어진 이유,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배경	자녀특성	자녀 수,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자녀의 이용 및 재원 기관, 거주 상황, 모국에 거주했던 경험,

# 라. 전문가(학계/현장) 자문회의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회의 를 개최하였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 사업 담당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지원 사업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 경험을 지닌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자문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4 장에 제시하고 그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I-3-4〉 자문회의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1차 자문회의	9. 21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 담당 실무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 관리사 글로벌한부모회(자조모임) 회장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다문화 한부모 가족 현황 및 어려움
2차 자문회의	11.17	관련 선행연구 전문가 2인	도출한 결과 중심 제언 검토
3차 자문회의	11.29	현장전문가, 지원전달체계 실무자	제언의 실효성 검토

〈표 I-3-5〉참여 전문가

대상	전문 영역 및 담당 업무
전문가 1	다문화 한부모 지원정책 실무자
전문가 2	다문화 한부모 사례 관리사
전문가 3	다문화 한부모 지원 실무자
전문가 4	다문화 한부모 자조모임 관리자
전문가 5	다문화 한부모 관련 선행연구자
전문가 6	다문화 한부모 관련 선행연구자

#### 4. 선행 연구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가족 특성과 다면적인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다문화 해체가족,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 등으로 그 표현은 다양하나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와 그 자녀에 초점을 둔연구들은 주로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됨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경험하는 문제점과 특성 파악에 초점을 둔 연구와 지원방안에 무게를 둔 연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 가. 경험과 특성 파악 중심 연구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삶의 적응과정을 파악하고자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이주여성 8명과의 면담을 근거이론에 의해 분석한 연구(이현주, 2013)가 이루어졌다. 연구는 그 삶의 중심현상으로 '무력감'을, 맥락적 조건으로 '경제적 고통', '자녀의 사춘기 방황', '차별 당함'을, 중재적 조건으로 '종교에의 의지', '자녀의 위로', '외부지원', 결과로 '두 문화의 공존', '아이를 위해 견담' 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일자리 정책의 마련과 취업준비과정 지원,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된 지원체계의 마련, 기초생계비 지원 방안 개선, 한부모 이주여성들을 위한 자조모임의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중적 특수성을 지 님에 관심을 두고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8인의 자립경험에 대해 내러티브 인터 뷰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상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김강남, 2016)도 있다. 연구에서는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의 본질을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기', '숙명을 딛고 일러서기', '새로운 도전과 도약으로 주체성 열어가기'로 요약하였다.

다문화 가족의 유형을 구분하여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특성을 자녀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구체화한 연구(팜티휀짱·김영순·박봉수, 2014)가 보고되었다. 연구는 8명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의 심층면담 자료 분석을 토대로 가족유형에 따른 영유아기 자녀양육 경험을 설명하면서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어

려움', '자녀를 위한 희생', '한국의 친척 및 가족과 단절', '자녀의 정서적 불안'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 나. 지원 사례 및 지원 방안 중심 연구

다문화 한부모 가족 발생 전 후 삶의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최승인, 2012)도 보고되었다. 연구는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결혼이주여성 7인에 대한 심 층면담을 통해 다문화 한부모 가정이 되는 원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한부모 가정이 되게 되는 상황은 결혼 상태에서의 가족문제, 경제적 빈곤, 적응문제, 체류 제도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이혼 후의 문제는 자녀의 양육, 경제, 가족과의 문제, 심리, 주위사람으로 구분하여 사례연구법을 통해 접근 분석하였다. 한부모가 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이 되기 전에 예방을 위한 대안들(상담전화, 다문화가족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이 유사한 다른 연구들과 구별된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지원 사례에 대한 연구(박영신, 2014)로는 드림스타트 사례를 중심으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 어려움을 조망한 것이 있다. 연구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자녀지원은 주로 학령기 학업지원 및 프로 그램 지원에 집중되어있음을 강조하면서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정예리(2011)는 필리핀 어머니 출신의 해체가족 여성결혼이민자 3인과의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적 지원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가족해체 이후 그들이 한국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또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것을 통해 해체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 개입방안, 지원방안을 법적 문제 지원, 자녀양육 지원, 일자리지원, 주거문제 지원, 정서적 지원, 자녀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지원, 사회적 적응문제 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다문화 이혼 가정 중 중국인의 경우가 60%를 상회함을 고려하여 김성옥 (2013)은 이혼한 중국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지원 서비스, 그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문화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검토와 다문화 이혼 가정 중국인 어머니 6명 대상 면담을 통해 언어적 소통, 경제적 측면, 심리 정서적 측면, 사회적 문제, 법적 문제, 교육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구체화

하였다. 연구(김성옥, 2013)는 현재 추진 중인 지원정책들이 다문화 이혼 어머니들에게 실효성 없는 지원으로 인식되는 원인을 지원서비스 접근, 정보 접근에의 제한점과 서비스 이용 불편으로 지적하였다. 지원부처의 분산과 정책의 잦은 변동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다문화 가족정책 검토와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이주여성 보호쉼터의 입소경험자 10명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이혼 별거 다문화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이지훈, 2013)도 이루어졌다. 연구는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을 해체 예방 정책, 해체 위기대응 정책, 해체 후 사후관리 정책으로 구분하며 이 중 사후관리 정책이 특히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주류를 이루는 심층면담이 아닌 통계자료의 분석과 법 제도 등 문헌 고찰을 통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고찰한 장명선(2015)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보다 더 열악한 정책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인식하였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언어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회적 네트워크 부족, 차별과 편견, 심리적 불안감 등 이중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나 이들에 대한 법적 정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이들이 대한 법제 정비를 통해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심인선(2013)도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다문화 해체가족의 증가에 주목하고 경남의 다문화 가정의 실태를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면서 그들의 지원을 위한 과제로 경제적 자립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한다고 지적 하였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연구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 변화에 주목하여 귀화자 가족과 이민자-한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한 연구 (김이선 외, 2016)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제3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의 주변적 위치에 놓인 세부집단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했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과 여성이민 자 30명에 대한 인터뷰,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등에 대한 정책 분석 등의 방 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는 이민자-한부모 가족이 사회적 소외, 경제적 빈곤, 자녀 양육의 문제 등 중층적인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대해 김이선 등(2013)은 주거 지원, 안정적 생활과 자립을 위한 지원, 국적 미취득 한부모의 체류 및 복 지관련 제도 개선, 사각지대 이민자-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등으로 유목화 하여 다면적인 정책을 제언하였다.

#### 다. 소결

첫째, 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연구 대상자에로의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양적 연구보다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와 그 자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함이 주류를 이룬다.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의 어려움은 한부모의 문제와 다문화 배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으로 중첩되는 김이선 등(2013)이 강조했던 것처럼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닌 중층적 문제임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다문화 배경국가와 상관없이 다문화 한부모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서 도출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 국적 미해결 등으로 수렴된다. 또한 이에 대한 지원책 제언도 그에 따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 Ⅱ.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현황

본 장에서는 2017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와 2015년도에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중심으로 다문화 결혼, 이혼, 출산 등 현황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서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혼인상태, 국적취득 여부를 교차 분석하여 자녀 양육 등의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1. 다문화 결혼, 이혼 및 출산 현황

#### 가. 결혼

2016년도 다문화 혼인 수는 21,709 건으로 전체 우리나라 혼인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4년도에는 2,561건으로 전년대비 총 9.5% 감소하였다. 다만 2016년도에는 한국인간 혼인 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다문화 혼인의 건수는 줄었지만 비중은 7.7%로 작년 대비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1〉다문화 결혼 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2014~2016)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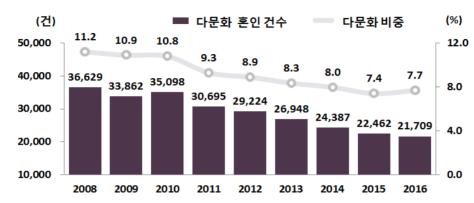
				الد (ح			1ロシ ネ	^1				
	전체					L	├문화 혼 <sup>0</sup>	인	한국인 간 혼인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혼인 건수			305,507	302,828	281,635	24,387	22,462	21,709	281,120	280,366	259,926	
(비중)			(100.0)	(100.0)	(100.0)	(8.0)	(7.4)	(7.7)	(92.0)	(92.6)	(92.3)	
전 년	증	감	-17,300	-2,679	-21,193	-2,561	-1,925	-753	-14,739	-754	-20,440	
대 비	증감률		-5.4	-0.9	-7.0	-9.5	-7.9	-3.4	-5.0	-0.3	-7.3	

주: 1) 다문화 혼인: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4

<sup>2)</sup>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혼인: 남녀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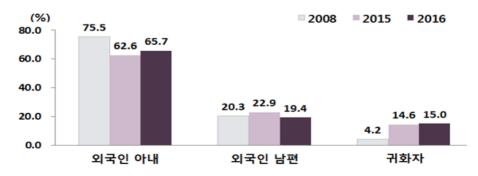
최근 9년간 다문화 혼인건수와 다문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8년 다문화 비중이 11.2%에 달했던 것을 기점으로 2015년에 7.4%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4

[그림 II-1-1] 다문화 결혼 건수 및 다문화 비중 추이, 2008~2016

다문화 결혼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의 비율이 2008년에 75.5% 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62.6%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5.7%로 소폭 증가하였다. 외국인 남편의 비율은 2008년도와 2015년도 2016년도 큰 차이가 없이 20% 수준이었다. 반면, 귀화자의 비율이 2008년도에는 4.2%였으나 2015년도에 14.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5.0%까지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5.

[그림 II-1-2] 다문화 결혼 유형별 비중(2008, 201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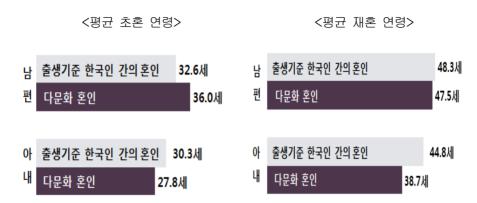
다문화 평균 결혼 연령을 살펴보면 초혼인 경우에는 2014년에는 남편 35.2세 아내 27.8세였으며 2016년도에는 남편 36.0세, 아내 27.8세로 남편 연령이 소폭증가하였다. 한국인 간의 혼인 연령이 2016년 기준 남편 32.6세 아내 30.3세인 것에 비해 남편 연령이 높고 아내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혼인이 재혼인 경우에는 2016년도에 남편 47.5세 아내 38.7세로 한국인간 재혼 연령이 남편 48.3세 아내 44.8세인 것에 비해 아내의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 평균 결혼 연령(2014~2016)

단위: 세

		전체								출생기준						
				다문화 혼인			외국인·귀화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ı			자			한국인			혼인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초	남편	32.4	32.6	32.8	35.2	35.4	36.0	32.4	32.2	32.4	36.7	37.1	37.7	32.2	32.4	32.6
혼	아내	29.8	30.0	30.1	27.8	27.9	27.8	26.7	26.8	26.8	30.9	30.8	31.1	30.0	30.1	30.3
연령차		2.6	2.6	2.7	7.4	7.5	8.2	5.7	5.4	5.6	5.8	6.3	6.6	2.2	2.3	2.3
재	남편	47.1	47.6	48.2	47.4	47.4	47.5	47.2	46.8	45.9	47.4	47.7	48.0	47.1	47.7	48.3
혼	아내	43.0	43.5	44.0	39.8	39.3	38.7	38.9	38.4	38.0	43.8	44.2	43.4	43.5	44.0	44.8
연령차		4.1	4.1	4.2	7.6	8.1	8.8	8.3	8.4	7.9	3.6	3.5	4.6	3.6	3.7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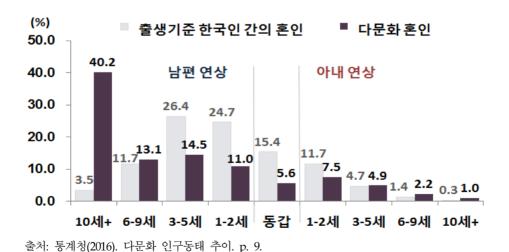
- 주: 1) 연령미상 및 혼인종류 미상 제외
  - 2) 다문화 혼인 :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 3) 외국인 · 귀화자 : 혼인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 4) 출생기준 한국인 : 배우자는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다문화 혼인에 해당되지만, 혼인 당사자는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 5)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혼인 : 남녀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8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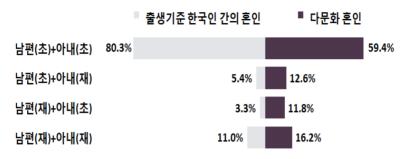
[그림 II-1-3] 평균 결혼 연령(2016)

다문화 혼인과 한국인간 혼인간의 남편과 아내의 결혼 연령차를 살펴보면 남자가 10세 이상 높은 비중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3.5%에 반해 다문화인 경우에는 4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가 연상인 비율이 한국인 간결혼에 비해 다문화 혼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4] 다문화 결혼 부부 연령차별 비중(2016)

결혼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문화 혼인의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 모두 초혼인 비율이 59.4%로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남편은 초혼 아내 재혼, 남편 재혼 아내 초혼, 남편 재혼 아내 재혼의 비율이 한국인간 혼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20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10

[그림 II-1-5] 결혼종류별 비중(2016)

성별 출신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남편이 외국인인 비율은 2014년 32.7%에서 2016년도에 30.1%로 감소하였다. 반면 아내가 외국인인 비율은 2014년 75.6%였다가 2016년도에는 80.2%로 증가하였다. 남편 외국국적의 경우에는 2016년 기준 중국 9.9%, 미국 6.4%, 베트남 2.6% 순이었다. 아내 국적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중국 29.5%로 가장 높고 다음이 베트남이 20.9%였으나 2016년도에는 베트남이 2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26.9%, 필리핀 4.3% 순이었다.

〈표 II-1-3〉 성별 출신 국적별 비중(2013~2015)

							5	난위: 건, %			
	남편		-		아내						
 연도	2014	2015	2016		연도	2014	2015	2016			
 건수	24,387	22,462	21,709		건수	24,387	22,462	21,709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한국	67.3	66.9	69.9		한국	24.4	23.3	19.8			
외국1)	32.7	33.1	30.1		외국1)	75.6	76.7	80.2			
중국	9.5	9.7	9.9		베트남	20.9	23.1	27.9			
미국	7.2	7.3	6.4		중국	29.5	27.9	26.9			
베트남	1.2	1.9	2.6		필리핀	4.9	4.7	4.3			
캐나다	2.0	2.1	1.8		일본	5.5	4.6	3.9			

(표 Ⅱ-1-3 계속)

`	,									
		남편			아내					
	연도	2014	2015	2016		연도	2014	2015	2016	
	일본	4.8	3.6	1.8		태국	1.8	2.5	3.3	
	호주	1.0	1.1	0.9		미국	2.9	3.0	2.8	
	영국	0.8	0.9	0.9		캄보디아	2.4	2.5	2.4	
	프랑스	0.7	0.8	0.6		대만	1.0	1.2	1.2	
	대만	0.5	0.7	0.6		우즈벡	1.1	1.0	1.1	
	독일	0.6	0.6	0.4		캐나다	0.8	0.8	0.9	
	기타	4.3	4.4	4.1		기타	4.7	5.4	5.5	

주: 1) 국적미상 제외

2) 귀화자는 귀화 이전 출신 국적, 외국인은 혼인 당시 외국 국적으로 분류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13

## 나. 이혼

다문화 이혼 건수 및 전체 이혼 중 다문화 비중을 살펴보면 다문화 이혼 건수는 2014년도에 12,902건이었다가 2016년도에 10,631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혼비중도 2014년도 11.2%에서 2016년도에는 9.9%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다문화 결혼 비중이 2016년도에 7.7%인 것에 비해 이혼 비중은 9.9%인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한국인간 결혼에 비해 다문화 이혼의 발생 건수가많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최근 9년간 다문화 이혼 건수 및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12.6%(14,450건)로 정점을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 Ⅱ-1-4〉다문화 이혼 건수 및 전체 이혼 중 다문화 비중(201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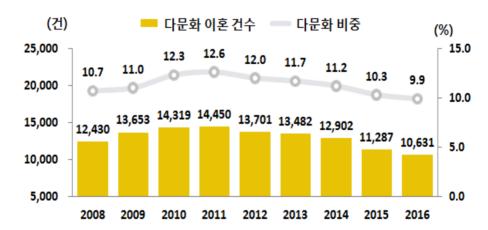
단위: 건. %

		전체		Ľ	<del>-</del> 문화 이	혼	한국인(출	출생기준)	간 이혼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이혼 건수	115,510	109,153	107,328	12,902	11,287	10,631	102,608	97,866	96,697
(비중)	(100.0)	(100.0)	(100.0)	(11.2)	(10.3)	(9.9)	(88.8)	(89.7)	(90.1)
전 년 감	218	-6,357	-1,825	-580	-1,615	-656	798	-4,742	-1,169

(표 Ⅱ-1-4 계속)

			전체		τ	├문화 이 <sup>‡</sup>	<u></u>	한국인(출	출생기준)	간 이혼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대 비	증감 률	0.2	-5.5	-1.7	-4.3	-12.5	-5.8	0.8	-4.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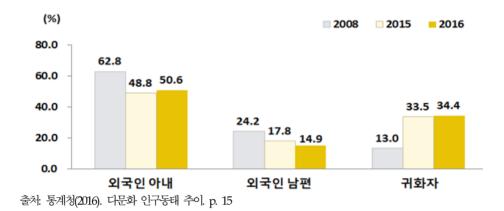
주: 1) 다문화 이혼 :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2)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 : 남녀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14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14

[그림 II-1-6] 다문화 이혼 건수 및 다문화 비중 추이(2014~2016)

다문화 유형별 이혼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외국인 아내의 비율이 62.8%였다가 2016년도에 50.6%로 감소하였다. 외국인 남편의 비중도 2008년도에는 24.2%였으나 2016년도에는 14.9%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귀화자의 비율은 2008에 13.0%였다가 2015, 16년도에는 약 34%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II-1-7] 다문화 유형별 이혼 비중(2008, 2015~2016)

다문화 이혼연령을 한국인간 이혼연령과 비교해 보면 다문화 이혼의 남편 연령은 48.5세이고 아내의 연령은 38.8세로 한국인간 이혼 남편 연령 47.1세, 아내연령 44.2세에 비해 남편의 연령은 다소 높고 아내의 연령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16

[그림 II-1-8] 다문화 이혼 연령(2015)

다문화 이혼 미성년 자녀 유무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문화 이혼에서 미성년 자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은 한국인간 이혼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30%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도에 26.6%였다가 2016년도에 32.0%로 증가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Ⅱ-1-5〉다문한 이혼 미성년 자녀 유무별 비중(201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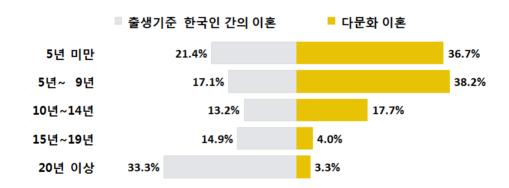
단위: 건. %

			전체			다문화 이혼			한국인(출생기준) 간 이혼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건수*		115,252	108,397	106,468	12,735	11,081	10,497	102,517	97,316	95,9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성년 자녀	있음	49.6	48.7	47.9	26.6	29.5	32.0	52.5	50.9	49.7	
여부	없음	50.4	51.3	52.1	73.4	70.5	68.0	47.5	49.1	50.3	

- 주: 1) 미성년자녀 유무 미상 제외
  - 2) 다문화 이혼 :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 3)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 : 남녀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16

결혼생활 지속기간 기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문화 이혼의 경우는 5년~9년의 비중이 3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년 미만이 36.7%였다. 이러한 이혼 비중은 한국인간 이혼의 20년 이상이 33.3%로 가장 높은 것에 비해 결혼생활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17

[그림 II-1-9] 결혼 생활 지속기간별 비중(2016)

이혼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인간 이혼은 협의 이혼이 80.6% 재판이혼이 19.4%인 것에 반해 다문화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57.3% 재판이혼이 42.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재판이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18

[그림 II-1-10] 이혼종류별 비중(2016)

### 다. 출산

다문화 가구에서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 21,174명, 2015년도에 19,729명, 2016년도에 19,431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생아 수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4.9%, 2015년 4.5%, 2016년 4.8%로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저하되었지만 다문화 가구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9년간 출생 중 다문화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2.9%였다가 2009년부터 4.3~4.9%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6〉다문화 출생아 수 및 출생 비중(2014~2016)

단위: 건, %

				전체		じ	문화 부.	모	출생기	준 한국역	인 부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출	생아 수	-	435,435	438,420	406,243	21,174	19,729	19,431	409,823	414,600	382,694
 (비중)			(100.0)	(100.0)	(100.0)	(4.9)	(4.5)	(4.8)	(94.1)	(94.6)	(94.2)
전 년	증 7	}	-1,020	2,985	-32,177	-116	-1,445	-298	-660	4,777	-31,906
건 비	증감물	F.	-0.2	0.7	-7.3	-0.5	-6.8	-1.5	-0.2	1.2	-7.7

주: 1) 부모 국적 미상(기아, 영아사망 등) 포함

<sup>2)</sup> 다문화 부모: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sup>3)</sup> 출생기준 한국인 부모: 부모 모두 출생기준이 한국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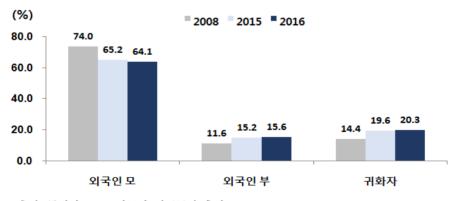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22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22

[그림 II-1-1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16)

다문화 출산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외국인 모 74.0%, 외국인 부 11.6%, 귀화자 14.4%였으나 2016년도에는 외국인 모 64.1%, 외국인부 15.6%, 귀화자 20.3%로 외국인 부와 귀화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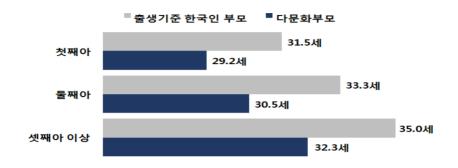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24

[그림 II-1-12] 다문화 출산 유형별 비중(2008, 2015~2016)

출산 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을 살펴보면 첫째아의 경우에는 다문화 어머니 29.2세, 한국인 어머니 31.5세, 둘째아 경우에는 다문화 어머니 30.5세, 한국인 어머니 33.2세, 셋째아의 경우는 다문화 어미니 32.3세, 한국인 어머니의 경우 35세로, 전반적으로 한국인 어머니 보다 어린 연령에 출산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인 어머니보다 각 출산 순위별 가격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p. 26

[그림 II-1-13]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2016)

# 2.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특성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혼인상태(유배우 자, 사별, 이혼/별거), 국적취득 여부(국적 있음, 국적 없음)를 교차 분석하여 자 녀 양육 등의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가 생활 여건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Ⅱ-2-1>과 같다. 사 별인 경우에는 200만원미만이 28.5% 이혼/별거인 경우에는 34.5%인 것으로 나 타났다. 유배우자인 경우에 200만원 미만이 31.5%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혼/별거인 경우에 저소득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적이 없는 경우에 가구소득이 200만원이 미만이 비율이 이 사별 36.7%, 이혼/별거 42.5% 로 나타나 국적이 없고 한부모 가구일 경우에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II-2-1〉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200만원 200~400만 400~600만 600만원 하국 국적 혼인상태 합계(수) 미만 워 미만 워 미만 이상 유배우자 31.5 51.0 14.3 3.2 100.0(10,502) 전체 사별 28.5 54.6 5.4 100.0(130) 11.5 이혼/별거 34.5 50.3 11.7 3.4 100.0(290) 유배우자 33.1 49.9 13.9 100.0(4,616) 3.0 사별 26.0 56.0 12.0 6.0 100.0(100) 있음 이혼/별거 33.2 52.4 11.2 3.2 100.0(250)  $X^2(df)$ 6.796(6) 유배우자 30.2 51.9 3.4 100.0(5,886) 14.6

50.0

37.5

10.0

15.0

4.731(6)

3.3

5.0

100.0(30)

100.0(40)

자료: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적용)

36.7

42.5

없음

사별

이혼/별거

 $X^2(df)$ 

다문화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2-2>와 같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자가가 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 26.4%, 전세(월세 없음) 19.3% 순으로 나타났다. 사별의 경우에도 자기집 48.5%, 보증금 있는 월세 28.5%, 전세가 18.5% 순이었으며, 이혼/별거인 경우도 유사하게 자기집 45.2%, 보증금 있는 월세 29.7%, 전세가 15.5%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혼/별거 가구가 유배우자에 비해 월세에 살고 있는 비율이 유배우자와 사별인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2〉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 명 한국 국적 혼인상태 1 2 3 4 (5) 합계(수) 유배우자 47.2 19.3 26.4 2.5 4.5 100.0(10,502) 정체 사별 48.5 18.5 28.5 100.0(130) 1.5 3.1 이혼/별거 45.2 15.5 29.7 4.5 5.2 100.0(290) 유배우자 19.5 47.5 26.2 2.4 4.4 100.0(4,616) 있음 사별 27.0 100.0(100) 53.0 16.0 2.0 2.0

<sup>\*</sup> p < .05, \*\* p < .01, \*\*\* p < .001

(표 Ⅱ-2-2 계속)

한국 국적	혼인상태	1	2	3	4	5	합계(수)
0) 0	이혼/별거	42.8	15.6	32.0	4.4	5.2	100.0(250)
있음	X²(df)			12	2.507(8)		
	유배우자	47.0	19.2	26.6	2.6	4.5	100.0(5,886)
없음	사별	33.3	26.7	33.3	0.0	6.7	100.0(30)
	이혼/별거	60.0	15.0	15.0	5.0	5.0	100.0(40)
	$X^2(df)$			8	.376(8)		

주. ①자기 집, ②전세(월세 없음),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⑤무상 자료: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적용)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살펴보면(<표 II-2-3> 참조), 유배우자인 경우에는 좋은 편이다 68.9%, 나쁜 편이다 5.8%인 것에 반해 사별은 좋은 편이다 55.4%, 나쁜 편이다 16.9%, 이혼/별거인 경우에 좋은 편이다 47.9% 나쁜 편이다 14.8%로 한부모 가구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적고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나쁜 편이라는 응답은 국적이 있고 사별인 경우가 20.0%, 국적이 있고 이혼/별거인 경우가 16.0%로 나타났다.

〈표 II-2-3〉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전반적인 건강상태

단위: %, 명

한국 국적	혼인상태	좋은편이다	보통이다	나쁜편이다	합계(수)
	유배우자	68.9	25.3	5.8	100.0(10,502)
전체	사별	55.4	27.7	16.9	100.0(130)
	이혼/별거	47.9	37.2	14.8	100.0(290)
	유배우자	65.9	27.7	6.4	100.0(4,616)
있음	사별	53.0	27.0	20.0	100.0(100)
	이혼/별거	48.8	35.2	16.0	100.0(250)
	X²(df)		88.16		
	유배우자	71.2	23.5	5.3	100.0(5,886)
없음	사별	63.3	30.0	6.7	100.0(30)
	이혼/별거	42.5	50.0	7.5	100.0(40)
	X²(df)		20.94	3(8)**	

주: 좋은 편이다(매우 좋은 편이다+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나쁜 편이다+매우 나쁘다) 자료: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적용)

<sup>\*</sup> p < .05, \*\* p < .01, \*\*\* p < .001

<sup>\*</sup> p < .05, \*\* p < .01, \*\*\* p < .001

지난 1년 2주 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표 II-2-4> 참조), 유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런 적 없다가 62.9%, 가끔 느꼈다가 30.1%, 자주 느꼈다가 7.0%인데 반해 사별인 경우에는 그런 적 없다가 45.4%, 가끔 느꼈다가 36.2% 자주 느꼈다가 18.5%, 이혼/별거인 경우에는 그런 적 없다가 44.1%, 가끔 느꼈다가 41.7%, 자주 느꼈다가 14.1%로 나타나 한부모인 경우에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적이 없고 사별인 경우에 자주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Ⅱ-2-4〉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슬픔 및 절망감 경험

단위: %, 명

한국 국적	혼인상태	그런적 없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합계(수)
	유배우자	62.9	30.1	7.0	100.0(10,502)
전체	사별	45.4	36.2	18.5	100.0(130)
	이혼/별거	44.1	41.7	14.1	100.0(290)
	유배우자	62.4	30.7	6.9	100.0(4,616)
ما ٥	사별	48.0	36.0	16.0	100.0(100)
있음	이혼/별거	44.0	41.2	14.8	100.0(250)
	X²(df)		59.967	7(6)***	
	유배우자	63.4	29.6	7.0	100.0(5,886)
A 0	사별	36.7	36.7	26.7	100.0(30)
없음	이혼/별거	45.0	45.0	10.0	100.0(40)
	X <sup>2</sup> (df)		33.317		

주: 자주 느꼈다(자주 느꼈다+매우 자주 느꼈다)

지난 1년간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Ⅱ-2-5>와 같다. 유배우자인 경우에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7%였으나 사별 인 경우에는 25.4%, 이혼/별거인 경우에는 26.2%로 상대적으로 한부모인 경우에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별, 이혼/별거 가구에서 유사하게 25% 이상이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적용)

<sup>\*</sup> p < .05, \*\* p < .01, \*\*\* p < .001

〈표 Ⅱ-2-5〉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명
한국 국적	혼인상태	있다	없다	합계(수)
	유배우자	10.7	89.3	100.0(10,502)
전체	사별	25.4	74.6	100.0(130)
	이혼/별거	26.2	73.8	100.0(290)
	유배우자	9.7	90.3	100.0(4,616)
있음	사별	25.0	75.0	100.0(100)
从日	이혼/별거	26.0	74.0	100.0(250)
	X²(df)		86.013(2)***	
	유배우자	11.5	88.5	100.0(5,886)
없음	사별	26.7	73.3	100.0(30)
以口	이혼/별거	27.5	72.5	100.0(40)
	X²(df)		16.354(2)***	

자료: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적용)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2-6>과 같다. 유배우자인 경우에는 만족한다가 59.4%, 만족하지 않는다는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인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33.1%, 만족하지 않는다가 32.3%였으며 이혼/별거인 경우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8.6%,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1.0%로 나타나 한부모인 경우에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한부모인 경우에 유배우자인 경우보다 만족하는 비율은 낮고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6〉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생활 만족도

단위: %, 명

한국 국적	혼인상태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합계(수)
	유배우자	59.4	32.4	8.3	100.0(10,502)
전체	사별	33.1	34.6	32.3	100.0(130)
	이혼/별거	28.6	40.3	31.0	100.0(290)
	유배우자	54.4	36.7	8.9	100.0(4,616)
있음	사별	35.0	32.0	33.0	100.0(100)
	이혼/별거	26.4	41.2	32.4	100.0(250)
	X²(df)		220.94	6(8)***	

<sup>\*</sup> p < .05, \*\* p < .01, \*\*\* p < .001

(丑	Ⅱ-2-6	계	(속)
----	-------	---	-----

한국 국적	혼인상태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합계(수)
	유배우자	63.2	29.0	7.8	100.0(5,886)
없음	사별	26.7	43.3	30.0	100.0(30)
以口	이혼/별거	42.5	35.0	22.5	100.0(40)
	X²(df)		45.690	)(8)***	

주: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약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별로만족하지 못한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나. 자녀 양육

자녀와의 의사소통 관계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다이상 응답한 결과는 <표 II-2-7>과 같다.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의 경우 유배우자는 90.6%, 사별은 90.0%였으나 이혼/별거는 86.6%로 다소낮게 나타났다. 특히 국적이 있으면서 이혼/별거인 경우, 국적이 없으면서 이혼/별거인 경우에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나는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유배우자의 경우에는 56.2%, 사별인 경우에 65.4%, 이혼/별거인 경우에 56.9%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국적이 있고 사별인 경우, 국적이 없고 이혼/별거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에 "대체로 그렇다"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인 경우에 87.9%, 사별인 경우에 86.2%, 이혼 별거인 경우에 81.7%로 나타나 이혼/별거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에 "대체로 그렇다"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인 경우에 73.5%, 사별인 경우에 63.1%, 이혼/별거인 경우에 62.4%인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인 경우에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적용)

<sup>\*</sup> p < .05, \*\* p < .01, \*\*\* p < .001

〈표 II-2-7〉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자녀와의 의사소통 관계 및 부모역할

					<u> 단위: %, 명</u>
		자녀와	자녀	자녀와의	 부모역할을
한국 국적	혼인상태	친밀하다고	친구들을 잘	관계에	
		느낀다	알고 있다	만족한다	잘 하고 있다
	유배우자	90.6	56.2	87.9	73.5
전체	사별	90.0	65.4	86.2	63.1
	이혼/별거	86.6	56.9	81.7	62.4
	유배우자	89.7	58.1	87.3	72.2
있음	사별	92.0	69.0	87.0	62.0
双百	이혼/별거	86.0	56.0	80.8	61.2
	X²(df)	16.761(8)*	7.823(8)	28.629(8)***	45.586(8)***
	유배우자	91.3	54.7	88.3	74.6
어o	사별	83.3	53.3	83.3	66.7
없음	이혼/별거	90.0	62.5	87.5	70.0
	X <sup>2</sup> (df)	12.993(8)	12.715(8)	7.542(8)	23.112(8)**

주: 각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적용)

\* p < .05, \*\* p < .01, \*\*\* p < .001

<표 Ⅱ-2-8>에서는 만 5세 이하 자녀의 부모 역할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모의 역할 어려움에 대한 응답결과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배우자인 경우에 22.5%, 사별인 경우 14.8%, 이혼/별거인 경우가 11.6%였다. 상대적으로 한부모인 경우에 어려움이 없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대해 배우자나 가족과 의견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배우자는 11.1%, 사별 3.7%, 이혼별거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거나 가족 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우자나 가족과 의견차이가 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배우자인 경우에는 1.8%, 사별인 경우에는 7.4%, 이혼/별거인 경우에는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별인 경우에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에 살펴보면 유배우자인 경우는 21.6%, 사별인 경우에는 33.3%, 이혼/별거인 경우에는 4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인 경우보다 사별, 이혼/별거인 경우에 다른학부모들과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국적이 없

고 이혼/별거인 경우에 58.3%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배우자인 경우에 31.5%, 사별인 경우에 33.3%, 이혼/별거인 경우에 24.6%로 나타났다. 특히 국적이 있고 사별인 경우에 학교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유배우자인 경우에 10.0%, 사별인 경우에 3.7%, 이혼/별거인 경우에 4.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인 경우에는 1.5% 사별인 경우 3.7%, 이혼/별거인 경우에 5.8%로 나타났다. 기타에 대한 응답은 국적이 없고, 한부모 가구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2-8〉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만5세 이하 자녀의 부모역할 어려움

									단위: %, 명
한국 국적	혼인상태	1	2	3	4	5	6	7	합계 (수)
	유배우자	22.5	11.1	1.8	21.6	31.5	10.0	1.5	100.0(6,700)
전체	사별	14.8	3.7	7.4	33.3	33.3	3.7	3.7	100.0(27)
	이혼/별거	11.6	5.8	1.4	46.4	24.6	4.3	5.8	100.0(69)
	유배우자	25.9	11.0	1.6	23.4	26.2	10.3	1.6	100.0(2,356)
있음	사별	14.3	0.0	7.1	28.6	50.0	0.0	0.0	100.0(14)
以古	이혼/별거	12.3	7.0	1.8	43.9	24.6	5.3	5.3	100.0(57)
	X <sup>2</sup> (df)				30.	.271(12)*	*		
	유배우자	20.7	11.1	1.9	20.6	34.4	9.9	1.4	100.0(4,344)
없음	사별	15.4	7.7	7.7	38.5	15.4	7.7	7.7	100.0(13)
<b></b>	이혼/별거	8.3	0.0	0.0	58.3	25.0	0.0	8.3	100.0(12)
	X <sup>2</sup> (df)				25	.545(12)*	÷		

주: ①어려움이 없음, ②자녀 양육에 대해 배우자나 가족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③자녀의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④다른 학부모들과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⑤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⑥자녀교육에 필요한경제적 지원을 하기 어려워서, ⑦기타

자료: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적용)

초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부모 역할의 어려움은 <표 Ⅱ-2-9>와 같이 나타났다.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인 경우에 22.9%, 사별인 경우에 25.5%, 이혼/별거인 경우에 14.9%였다. 상대적으로 국적이 있고 이혼 별거인 경우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sup>\*</sup> p < .05, \*\* p < .01, \*\*\* p < .001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배우자인 경우에는 30.1%, 사별인 경우에는 21.8%, 이혼/별거 인 경우에는 2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 자인 경우에 10.5%, 사별인 경우에 7.3%, 이혼/별거인 경우에는 12.9%로 였다. 특히 이혼/별거인 경우에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 준비의 어려움을 겪는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 우자인 경우에 13.8%, 사별인 경우에 10.0%, 이혼/별거인 경우에 10.4%였다.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 인 경우에 9.6%, 사별인 경우에 15.5%, 이혼/별거인 경우에 10.4%였다. 사별인 경우에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았다.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 면 유배우자인 경우에 12.1%, 사별인 경우 20.0%, 이혼/별거인 경우에 25.7%였 다. 한부모 가구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려움이 높았 고 특히 이혼/별거인 경우에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어렵다고 응답 한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어려움을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인 경우 1.0%, 사별인 경우에 0.0%, 이혼/별거인 경우 1.2%였다.

〈표 II-2-9〉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재학생 학부모 역할 어려움 단위: %, 명

한국 국적	혼인상태	1	2	3	4	5	6	7	<u>합</u> 계(수)
	유배우자	22.9	30.1	10.5	13.8	9.6	12.1	1.0	100.0 (5323)
전체	사별	25.5	21.8	7.3	10.0	15.5	20.0	0.0	100.0(110)
	이혼/별거	14.9	24.5	12.9	10.4	10.4	25.7	1.2	100.0(249)
	유배우자	23.6	30.8	11.4	12.3	10.1	10.8	0.9	100.0(3143)
있음	사별	27.5	23.1	7.7	9.9	15.4	16.5	0.0	100.0(91)
从日	이혼/별거	13.8	24.8	12.8	10.1	10.6	26.6	1.4	100.0(218)
	X²(df)				63	.460(12)	***		
 없음	유배우자	21.8	29.0	9.3	16.0	8.7	14.0	1.1	100.0(2180)
	사별	15.8	15.8	5.3	10.5	15.8	36.8	0.0	100.0(19)

(표 Ⅱ-2-9 계속)

한국 국적	혼인상태	1	2	3	4	(5)	6	7	합계(수)
	이혼/별거	22.6	22.6	12.9	12.9	9.7	19.4	0.0	100.0(31)
	X <sup>2</sup> (df)				1	2.346(12	2)		

주: ①어려움이 없음, ②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③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④다른 학부모들과 대화 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⑤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⑥자 녀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어려워서, ⑦기타

자료: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적용)

### 다. 한국생활 적응의 어려움 및 정책지원 요구사항

다문화 가구의 한국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외로움을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인 경우는 36.3%, 사별인 경우 33.8%, 이혼/별거인 경우에 37.9%였다. 특히 국적이 없고 사별인 경우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40.0%로 높았다.

자녀 양육 및 교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인 경우에 35.1%, 사별인 경우에 43.8%, 이혼/별거인 경우에 48.6%였다. 한부모 가구에서 자녀 양육 및 교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이혼/별거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인 경우에 27.1%, 사별인 경우에 55.4%, 이혼/별거인 경우에 62.1%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이혼/별거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은행, 시·군·구청 등 기관 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유배우자인 경우에 11.0%, 사별인 경우에 3.8%, 이혼/별거인 경우에 5.9%로 나타났다. 오히려 유배우자인 경우에 기관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편견과 차별을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인 경우에 13.1%, 사별인 경우에 9.2%, 이혼/별거인 경우에 13.1%로 나타났다.

〈표 II-2-10〉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한국생활의 어려움

							단위: %, 명
한국 국적	혼인상태	1	2	3	4	(5)	합계(수)
전체	유배우자	36.3	35.1	27.1	11.0	13.1	100.0(10,502)

<sup>\*</sup> p < .05, \*\* p < .01, \*\*\* p < .001

(표 Ⅱ-2-10 계속)

한국 국적	혼인상태	1)	2	3	4	5	합계(수)
	사별	33.8	43.8	55.4	3.8	9.2	100.0(130)
	이혼/별거	37.9	48.6	62.1	5.9	13.1	100.0(290)
	유배우자	37.0	37.3	31.4	6.2	14.4	100.0(4,616)
있음	사별	34.0	45.0	58.0	2.0	10.0	100.0(100)
从百	이혼/별거	37.6	50.0	62.8	4.8	14.0	100.0(250)
	X²(df)	0.418(2)	18.196(2)***	132.717(2)***	3.707(2)	1.554(2)	
	유배우자	35.7	33.4	23.7	14.7	12.0	100.0(5,886)
어.으	사별	33.3	40.0	46.7	10.0	6.7	100.0(30)
없음	이혼/별거	40.0	40.0	57.5	12.5	7.5	100.0(40)
	X²(df)	0.395(2)	1.367(2)	33.251(2)***	0.682(2)	1.587(2)	

주: 1) ①외로움, ②자녀양육 및 교육, ③경제적 어려움, ④은행, 시·군·구청 등 기관 이용, ⑤편견과 차별

다문화 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Ⅱ-2-11>에서와 같이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의논하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인 경우에 26.1%, 사별인 경우 20.8%, 이혼/별거인 경우에 29.3%였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배우자인 경우에 23.2%, 사별인 경우에 28.5%, 이혼/별거인 경우에 33.4%였다.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의논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인 경우에 31.0% 사별인 경우에 33.8%, 이혼/별거인 경우에 23.1%였다.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인 경우에 35.4%, 사별인 경우에 44.6%, 이혼/별거인 경우에 50.0%였으며, 몸이 아플 때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인 경우에 34.8%, 사별인 경우에 40.0%, 이혼/별거인 경우에 42.1%였다.

전반적으로 사별, 이혼/별거 가구에서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별거 가구가 모든 사회적 관계 항목에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가장 높게 나타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sup>2)</sup> 표 안에 제시된 수치는 각 항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만 제시하였음. 자료: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적용)

<sup>\*</sup> p < .05, \*\* p < .01, \*\*\* p < .001

$\langle \Pi$	11-2-11	구저최드	어디아	호이산대변	사회적관계도
\	11 / 11/	$\neg$ $\neg$ $\neg$ $\neg$	UT L		게외국근게도

						단위: %, 명
한국 국적	혼인상태	1	2	3	4	(5)
	유배우자	26.1	23.2	27.7	35.4	34.8
전체	사별	20.8	28.5	30.0	44.6	40.0
	이혼/별거	29.3	33.4	40.7	50.0	42.1
	유배우자	28.8	25.3	28.2	36.7	35.0
있음	사별	24.0	34.0	33.0	48.0	39.0
双百	이혼/별거	30.4	33.6	41.6	50.0	42.4
	X <sup>2</sup> (df)	1.437(2)	11.864(2)**	21.308(2)***	22.594(2)***	6.261(2)*
	유배우자	23.9	21.6	27.2	34.3	34.6
없음	사별	10.0	10.0	20.0	33.3	43.3
以口	이혼/별거	22.5	32.5	35.0	50.0	40.0
	X <sup>2</sup> (df)	3.204(2)	5.193(2)	2.010(2)	4.344(2)	1.520(2)

주: 1) ①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②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③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④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 ⑤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표 Ⅱ-2-12>에서는 교육지원 필요정도에 대한 교육지원 필요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혼인상태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순위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이 7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방문 을 통한 각종교육(한국어 교육, 자녀 지도 등)이 62.2%,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 개와 아이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 55.4%,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교육 53.4% 순이었다.

사별도 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이 7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63.1%,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한국어 교육, 자녀 지도 등) 62.3%,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교육 53.8% 순이었다. 이혼/별거의 경우에도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이 75.5%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자리교육, 일자리 소개 61.4%, 가정 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한국어 교육, 자녀 지도 등) 55.9% 순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가구와 한부모 가구 모두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

<sup>2)</sup> 표 안에 제시된 수치는 각 항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만 제시하였음. 자료: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적용)

<sup>\*</sup> p < .05, \*\* p < .01, \*\*\* p < .001

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자 가구에 비해 한부모 가구에 특징적으로 필요 지원이 높았던 것은 일자리 교육 및 일자리 소개였다. 특히 국적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2〉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교육지원 필요정도 1

						단위: %, 명
한국 국적	혼인상태	1	2	3	4	(5)
	유배우자	62.2	53.4	31.0	38.0	32.5
전체	사별	62.3	53.8	33.8	23.1	19.2
	이혼/별거	55.9	37.9	23.1	15.2	15.5
	유배우자	57.3	44.9	24.7	30.5	28.7
있음	사별	63.0	50.0	32.0	22.0	23.0
从百	이혼/별거	56.8	38.4	23.2	15.6	14.8
	X²(df)	5.612(8)	9.224(8)	8.964(8)	56.136(8)***	164.990(8)***
	유배우자	66.0	60.1	35.8	43.8	35.5
없음	사별	60.0	66.7	40.0	26.7	6.7
<b></b>	이혼/별거	50.0	35.0	22.5	12.5	20.0
	X²(df)	8.310(8)	16.645(8)*	13.204(8)	38.584(8)***	43.742(8)***

주. 1) ①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한국어 교육, 자녀 지도 등), ②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 교육, ③통번역 서비스 지원, ④임신출산 지원 및 부모 교육, ⑤배우자 및 배 우자 가족 교육

〈표 II-2-13〉 국적취득 여부와 혼인상태별 교육지원 필요정도 2

							단위: %, 명
한국 국적	혼인상태	6	7	8	9	10	11)
	유배우자	46.2	72.2	36.5	42.6	55.4	55.4
전체	사별	45.4	78.5	33.1	43.1	63.1	46.2
	이혼/별거	28.3	75.5	36.2	37.6	61.4	46.2
	유배우자	38.5	73.6	33.5	33.1	54.9	51.0
있음	사별	40.0	81.0	32.0	37.0	62.0	44.0
	이혼/별거	28.4	74.8	36.0	32.0	59.6	45.2
	X²(df)	30.219(8)***	8.833(8)	10.223(8)	7.919(8)	16.164(8)*	32.138(8)***

<sup>2)</sup> 각 질문에 대해서 약간 필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적용)

<sup>\*</sup> p < .05, \*\* p < .01, \*\*\* p < .001

(표 Ⅱ-2-13 계속)

한국 국적	혼인상태	6	7	8	9	10	11)
	유배우자	52.2	71.0	38.8	49.9	55.9	58.8
어ㅇ	사별	63.3	70.0	36.7	63.3	66.7	53.3
없음	이혼/별거	27.5	80.0	37.5	72.5	72.5	52.5
	X²(df)	17.000(8)*	9.475(8)	7.582(8)	18.556(8)*	9.648(8)*	7.503(8)

주: 1) ⑥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육, ⑦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⑧사회 활동 지원(자조 모임 등), ⑨각종 상담(가족관계, 비자 및 국적 취득 관련 법률 상담 등), ⑩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⑪아이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

## 3. 소결

본 장에서는 다문화 결혼, 이혼 및 출산 현황과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특성 및 자녀 양육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다문화 동태조사 결과 위주로 살펴보면 다문화 결혼은 최근 9년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혼에서 다문화 결혼 비중이 2008년 11.2%를 정점으로 2016년도에 현재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구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합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고, 남편과 아내의 연령차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결혼의 경우는 한국인 간의 혼인과 다르게 남편과 아내가 모두 초혼인 비율이 낮고 재혼 등 결혼 유형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비중 감소와 함께 전체 이혼 건수 중 다문화 이혼 건수도 최근 9년간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6년도 전체 결혼 중 다문화 비중이 7.7%인 것에 비해 전체 이혼 중 다문화 비중이 9.9%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혼 건수 대비 이혼 수가한국인간 이혼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과 유사하게 남편의 이혼연령은 한국인 간 이혼 보다 높고 아내의 연령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이혼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 보다 재판 이혼이 한국인 간 이혼 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출산 수는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인 간 결혼에서 출산 수치보다 감소폭이 많지 않아 출생아 수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8년

<sup>2)</sup> 각 질문에 대해서 약간 필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적용)

<sup>\*</sup> p < .05, \*\* p < .01, \*\*\* p < .001

에 2.9%에서 2016년도에 4.8% 크게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구에서 어머니의 출산 연령이 한국인 가구에 비해 어리고, 출산 간격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임신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한부모 가구는 유배우자 가구에 비해 생활 여건, 자녀 양육, 한국생활 적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 가구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특히 국적이 없고 사별일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가 더욱 많았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건강상태, 정신건강 등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배우자 가구에 비해 아프더라고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이 높았으며,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도 낮았다.

자녀 양육 부분에서는 한부모 가구에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가 자녀 양육의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높았다. 한부모가구, 특히 이혼/별거가구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렵고,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국생활 적응에 대해서도 한부모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표현하였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사회적 지원부분도 유배우자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취업교육 및 일자리 소개 등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구에서는 어린 나이에 연령이 많은 남편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혼 특성과 함께 충분히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인간 결혼보다 이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하는 과정에서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이혼, 즉, 이혼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경우가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할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한부모 가구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별거 가구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5세 아동의 경우에는 관 련 정보 접근과 학부모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높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진학하 게 되면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성을 인식하여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한부모 가구뿐만 아니라 다 문화 가구 전반적인 요구 사항이었다.

특히 한부모 가구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며, 국적이 없는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업교육/일자리 소개 등에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Ⅲ.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지원 정책 현황

본 장의 처음 부분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을 개관한 후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시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과 관련 있는 것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을 개관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중에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본 연구의 심층면담 결과 욕구가 파악된 결혼, 이혼과 사별 과정에서의 상담지원, 법률적 지원,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부모 자립지원,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에는 국외 정책 사례로 우리와비슷하게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문화정책을 발전시켜 온독일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나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체류외국인이 증가하자 국민과 이민자의 공존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2007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한「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희망제작소, 2016: 11).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비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법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II-1-1〉과 같다?〉.

<sup>2)</sup>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인출일: 2017년 12월 8일)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 5년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시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3조 2항),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제3조 3항). 다문화가족 정책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를 설치하고(제3조 4항),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 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공표한다(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제5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이나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 및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다문화가족이 평등한 가족관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 여야 한다(제7조).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 한 경우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제8조). 결 혼이민자 등에게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제9조), 다 국어로 상담·통역 서비스 및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1조 2항). 다문화가족을 지원하 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으며(제12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 시(제13조)할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제13조 2항).

제10조에서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특 히 2015년 12월 1일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육 및 교육현장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등 기관의 장은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명시하고 있다. 제14조 2항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로 부모의 이혼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16조).

〈표 III-1-1〉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다문화가족지	제3조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원 기본계획	2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연도별	제3조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3항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다문화가족	제3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전述위 전책위원회	세5도 4항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78억키천위	4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둠.
다문화가족	제4조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태조사	A)143L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함.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해증진	제5조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이에 중신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조치를 해야 함.
		-결혼이민자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정보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한국어교육 등 지원함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공 및	제6조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고 비용도 차등 지원
		-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신설 2015.12.1.>
 가족관계를	»-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위한 조치	제7조	있도록 기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기족생활교육 추진
- 기기 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가정폭력	-1)O - <b>7</b>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보호·지원할 수 있음.
피해자	제8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지원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함.

(표 Ⅲ-1-1 계속)

(亞 Ш-1-1 계득)		
구분		내용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됨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음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아동·청소년 보육·교육 기관의 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
	제14조 2항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다국어 서비스 제공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제11조 2항	-다국어에 의한 상담·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관련 공무원 교육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양성	제13조 2항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해야 함.
민간단체 지원	제16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주. 관련 법령을 본 연구에서 정리함.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인출일: 2017년 12월 8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2008년에 시작되어 2012년 마무리되었다. 현재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그림 III-1-1 참조).

비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목표	■ 사회발전 동력 ■ 다양성이 존령	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5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정책과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1-1.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2. 한국어능력 향상 2-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2-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3-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3-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3. 소외계층 지원 강화 3-4. 피해자 보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5-1.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6-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6-3.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정책추진체계 정비	6-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6-3.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자료: 여성가족부(2017b).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7년도 시행계획. p. 21.

[그림 III-1-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이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으로 모두 6대 영역 8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기관은 1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국방부, 복지부, 고용부, 외교부, 경찰청, 방통위, 법원,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7b, 2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17년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에 나타난 중앙부처의 6대 영역 과제를 이혼과 사별로 인해 혼자생활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

### 가.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

다문화 한부모가 결혼 생활 중에 경험한 갈등이나 남편 원가족과의 관계는 한부모가 된 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한부모가 되기 이전에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절한 가정환경을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혼 이전에 당사자 간에 상대방의 문화나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표 하에 다음의 여러 가지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b: 74-77).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 현지사전교육>을 2개국(베트남, 필리핀)에서 기본과정(8시간)과 심화과정(16시간)으로 국가별 수요를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입국 초기의 적응을 돕기 위한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법 ·질서, 대한민국 소개, 기초생활정보, 체류관리제도 및 결혼이민자 특수교육(3시간)을 조기적응센터로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자 또는 이미 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3시간)을 법무부 산하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결혼을 통해 함께 살게 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간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또한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sup>3)</sup> 이상 내용은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하였음.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계층별 · 직군별 맞춤형 커리큘럼 및 교안을 개발하고, 교육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며 문화다양 성 교육 연수를 운영한다(여성가족부, 2017b: 79). 또한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 교류재단)과 해외 방송사간 방송프로그램 교류 등을 통한 다언어(다문화) 프로 그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7b: 82). 문화다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관련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채용 지원센터 등) 내에 다문화 자료실 및 구역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 문화 다양성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도 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를 통해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간의 문화 격차를 해 소하고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한다(여성가족부, 2017b: 83). 쌍방향 문화다양성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의 다문화 이해 체험 프로 그램 운영, 문화시설에서의 외국문화 체험전시, 문화다양성이 반영된 미술관 전 시 등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b: 90). 국립현대미술관 경우에는 2016년 다 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구분 없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미술문화 활동의 일환 으로 어린이를 위한 <다문화 미술관 소풍>과 가족이 함께하는 <도란도란 작품 숲 이야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 참여자 포함 단체의 경우 왕복 교통편 및 다 과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여성가족부, 2017b: 90-91).

## 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 이하 자녀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을 지 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300명을 배치하여 센터 및 보육시설 등에서 언어발달 평가를 실시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해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보육시설 파견 등을 통해 언어발달 교육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7b: 95-98).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부모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 업>에 참여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부모-자녀 활동 프로그램, 자조모임 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족 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 어로 소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로 성 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교육부에서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나 다문화언어

강사를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주중·주말) 이중언어교육 실시를 통해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b: 99). 다문화가족 자녀를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를 모집·심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시 다른 취약계층(기초생활,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 북한이탈, 법적차상위, 농어촌 거주, 학교밖 청소년 등)에 포함시켜 우대한다(여성가족부, 2017b: 99).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 지도)을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 유아기, 아동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지도사(방문 가족생활지도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학령기 자녀와 부모 대상으로 자아정체성, 사회성 발달, 자기역량 강화, 미래설계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인 "多재다능" 프로그램을 2016년에 81개소에서 신규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107개로 점차 운영기관을 확대해 나가려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와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을 통 해 대상자를 발굴 한 후 초기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센 터나 연계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레인보우스쿨,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수련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 부, 2017b: 104).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교육은 물론 방문교육을 실시하며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지원대상 범위를 2017년부터 중도입국자녀의 경우에는 연령기준을 삭제하고(2016년에는 만 24세 이하),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결혼이민자라도 임신·출산·취업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했다(여성가족부, 2017b: 104).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별 관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공교육 진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편입학 절차 및 학교생활 안내가 소개된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9개언어로 제작)을 보급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등록외국인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력증빙이 곤란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편·입학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취학 전 준비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유치원과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예비학교를 운영한다(여성가족부, 2017b: 112-115).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및 기초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생활 초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아동과 통합하여 교육하면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 단계 및 다문화적 요소 등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다문화 유치원을 확대 운영(2016년, 12개 시도, 60개원에서 2017년, 17개 시도, 90개원으로 확대)하고 「다문화 유치원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학생 등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교육하여 초등 6개월, 중등 2학기 이수한 후 원적 학급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예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다문화 대안학교도 4개교를 운영한다.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만 3세~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생활지도사가 1:1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7b: 112-115). 교육부에서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농어촌 지역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향상과 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학교생활·진로 상담, 문화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고 동시에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 및 봉사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 학생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진로・진학지도를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17b: 121-122). '글로벌브릿지'사업은 수・과학, 언어, 리더십, 예체능 등다양한 분야에 잠재능력을 가진 다문화 학생을 선발하여 한국연구재단과 시・도교육청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우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는 다문화 학생에게는 직업교육 지원기관을 통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SW교육, 자동차 정비, 요리, 메이크업, 바리스타, 제과제빵, 공업 분야 등)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강료와 실습비 등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내에서도 위기청소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역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지지, 상담, 보호, 자원연계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CYS-Net 사업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복지를 포함시키고 성과지표로 다문화 청소년의상담건수를 성과지표로 평가하며 청소년동반자 수도 2016년 1,044명에서 2017년에는 1,066명으로 늘렸다.

## 다. 안정적인 가족생활 구축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결혼중개업 건전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7b: 132),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초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초기 맞춤형 가족관리 서비스를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와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제공하는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를 양성하고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2016년에 50개 센터에 각 1명씩 배치되었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와 50개 센터에 각 1명씩 배치되었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와 50개 센터에 각 1명씩 배치되었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와 50개 센터에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를 2017년에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로 통합 운영하여 한 명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가 다문화가족의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다양한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심리,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7b: 137-138).

다문화가족에게 통역지원이나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갈등이나 고충상담, 긴급 및 위기상황에 처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상담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인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365일, 24시간(중앙) 13개 언어로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b: 137-138).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지에는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정보매거진', '한국생활가이드북', '다문화가족지원 정보안내 리플렛'이 있다. '한국생활가이드북(Rainbow+)'에는 결혼이민자의 실생활을 돕는 주제별 심충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여성가족부, 2017b: 14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정보는 한국어와 다국어(13개 언어)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 '다누리 포털'을통해 제공된다.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누리 서포터즈'를 통하여 신규제작 콘텐츠 감수, 번역내용 확인 및 개선에 대한 건의를 받는다(여성가족부, 2017b: 144).

결혼이민자 간 심리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기 정착 결혼이민자가 멘토가 되어 초기 정착단계의 결혼이민자인 멘티에게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무부의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행 센터 및 결혼이민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결혼이민자 멘토 활동이 나 눔봉사단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2017년 지침을 개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17b: 146-147).

다문화가족 중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지원서

비스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제도 및 사업 발굴이 올라있다. 그러나 정부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16년 추진한 실적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연 4회 개최하였다는 내용만이 있고, 2017년도 추진계획에도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내용만이 있어(여성가족부, 2017b: 152),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안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임을 알 수 있다.

자녀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 자녀(만 12세 이하)의 집으로 찾아가 1:1 개별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비용을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결정은 읍면동에 신청한다. 취업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으로 '영아종일제 돌봄'은 만2세(이전의 만1세아에서 2017년부터 대상 연령 확대)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안전 관리 등의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제 돌봄'의 경우 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교) 동행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맞벌이, 한부모 등의 돌봄 취약계층에 우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복 가점제를 2016년 추진하였으며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2017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하였다(여성가족부, 2017b: 152-153).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은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며 의료, 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주거제공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한다. 2016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게 일시보호, 의료·법률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쉼터는 25개소(입소정원 286명)이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의 주거지원을 위한 그룹홈은 2개소, 보호시설 퇴소 후 원활한 자립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는 1개소다(여성가족부, 2017b: 159-160).

# 라.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과 역량개발, 일 자리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보건복 지인력개발원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우수한 인 재를 발굴하여 의료코디네이터로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및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한다(여성가족부, 2017b: 163).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주체들과 상호 연계·협력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안하 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ㆍ지원하 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통해 2016년에 결혼이민여성의 유망직종 창출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 희망디딤돌 취업사업"(서울구로구),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봉제인력양성"(서울 금천구), "결혼이민자 코칭 코디네이터 양성과정"(경 기 시흥시),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 청년실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무역 보 조인력 양성교육 과정"(춘천), "결혼이민자 대상 초고령화시대 전문요양보호사 양성사업"(해남군), "누비교육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사업"(통영)의 6개 가 지원을 받았다. 언어 · 문화의 차이 등으로 민간 고용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고 생계 를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선발한 대상자에게 지원되었으며 2016년에 다문화 강사 양성 프로그램, 출산·학습도우미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등 171개 사업장을 통해 765명이 참여하였다(여성가족부, 2017b: 165-166).

결혼이민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등을 채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연차별로 인건비를 차등지원하기도 하며(여성가족부, 2017b: 168), 자녀양육으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신규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을 임금의 80% 한도로 1년간 지원하거나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월 최대 40만원), 간접노무비(월 20만원, 중소기업만), 대체인력 인건비(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사업도 있다(여성가족부, 2017b: 170).

고용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위탁 운영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자격상담·직업적성검사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6년에는 새일센터 12개소에 1명씩 배치된 전담인력이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전체 새일센터에서 모든 인력(직업상담 사)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여성가족부, 2017b: 173).

직업교육훈련 지원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직무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의 훈련상담 결과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적합한 훈련과정을 성실하게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와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훈련에 참여할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을 매월 지원한다. 집중 취업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지원하며, 2017년 1월부터는 다문화가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7b: 177-178).

결혼이민여성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맞춤형 직업교육을 받고 인턴십을 통한 직장체험을 할 경우 인턴기간 3개월 동안 1인당 총 300만원 한도에서 기업 및 인턴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인턴프로그램이 일자리로 연계되도록한다. 결혼이민여성이 새일여성인턴사업을 통해 인턴십을 할 경우 새일일턴의실적을 2배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2017년에 추진한다(여성가족부, 2017b: 180).

농촌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착단계에 따라 기초농업교육, 전문여성 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여성 및 그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을 가족단위로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17b: 182).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 집중거주지역 고용센터에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담당인력을 배치한다. 2016년 기준 48개 고용센터에 일자리발굴 전담팀 109명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확대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7b: 185). 결혼이민자 등 취업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개인별 취업역량 진단 결과를 토대로 최장 1년간 특화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참여자격은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했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으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016년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전문 위탁기관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2017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중도입국자녀)를 참여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7b: 187).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등이 활용될 수 있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등의 공공 분야 일자리에 결혼이민자를 우대 채용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대한다(여성가족부, 2017b: 187).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기 정착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 지도자나 지역별 수요에 따라, 지역사회참여, 봉사 및 리더십 함양 활동 등을 통한 사회통합촉진 및 지역사회지도자로 육성하는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민간 위탁사업자를 통해 운영되어 2013년 1,514명, 2014년 1,200명이 지원을 받았으나 유사중복 사업 정비 방침에 따라 2014년 이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통ㆍ폐합되 었다(여성가족부, 2017b: 191). 국제결혼 초기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내거주기간 이 길어짐에 따라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어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프로그 램 역시 정착 단계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 생활의 초기적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생활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탐색하며, 계획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6년 78개소에서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7b: 195-196). 또한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이나 다문화지원 정책을 결 정하는 <외국인주민 등 지원 민관협의회>나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에 결혼이 민자 등의 참여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당사자인 결혼이민자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 6월 기준 <외국인주민 등 지원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지자체는 153개로 2011년의 87개 대비 66개 증가했다(여성가족부, 2017b: 197-198).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기 정착한 다문화가족이 신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초 기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 형성 및 조기정착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7b: 203). 다문화가족의 유형도 다변화하는 만큼 다문화 한 부모가족이 서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면서 문 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다문화 한부모 자조모임의 운영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마.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2007년부터 인종, 문화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입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차별금지법 안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법률안에 관한 의견 수렴과 연구 검토 단계에 있다(여성가족부, 2017b: 209).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얻기 위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반국민과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수용성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사용하기 위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매 3년마다 진행한다(여성가족부, 2017b: 211). 다양한 인종,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관련 TV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7b: 215), 다양한 홍보매체(언론방송·온라인, SNS 등 포함)를 활용하여 일반국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예방하고, 다양한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영상을 송출한다(여성가족부, 2017b: 222-223).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 부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150 명 정도가 함께 참여하는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캠프'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 부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 공공기관을 통해 지역 내 소수문화계 층(이주민)과 지역주민 간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무지개 다리사업'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b: 224-225).

공무원들의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정부 여러 부처(여가부, 행자부,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 문체부, 농식품부)에서 실시한다. 다문화가족 업무나 외국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은물론이고 일반 공무원의 다문화에 대한 지식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다문화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경찰과 군인, 다문화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및 청소년지도사, 어린이집교원, 농촌지역 다문화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지역본부 및 지역농협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도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한다. 다문화이해교육을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온라인으로도 실시하기 위해 2016년에 다문화이해교육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다누리배움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시작했다(여성가족부, 2017b: 228-238).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해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 실시한다. 모든 학생이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다문화 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다문화 교육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다문화 친화적인 교과서를 개발 및 보급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습자료를 활용한다. 예비교원 및 현직교원 연수를 통해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중진시키고 다문화 학생지도와 관련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및 심화연수를집합과 원격교육 등으로 운영한다(여성가족부, 2017b: 240-246).

#### 바.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건가ㆍ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을 2015년의 22 개소에서 2016년의 78개소, 2017년 101개소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서비스의대상을 기존에 지원하던 일반, 다문화가족은 물론이고 맞벌이가정, 취약위기 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한다. 특히 한부모, 조손가족 등취약계층가족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중심의 지원을 모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과 자녀지원으로 확대한다. 지원시간도 가족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과 주중 중심에서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하며, 지역여건 및 정책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총 12개소의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5개소)에 다문화 상담인력을배치하여 초기 상담 및 정보연계를 추진한다(여성가족부, 2017b: 240-246). 다문화가족정책의 유사·중복 방지 및 정책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및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를 연 4회 개최하여 부처별 신규 및 계속사업 확대계획을 사전에보고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일부 조정한다(여성가족부, 2017b: 258-259).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지자체, 교육청, 경찰청, 고용센터, 출입

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학계, 언론인, 기관 및 단체, 다문화가족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정부 3.0 실천을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 및 제공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부처 간 정보공유 및 연계 그리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점차 다양화되는 다문화가족 정책대상과 서비스 욕구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7b: 260-261).

# 2.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2007년 10월 17일 모·부자복지법에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여성가족부, 2017a: 11)으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a: 470).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또한 규정하고 있다(제3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II-2-1〉과 같다4).

⟨표 Ⅲ-2-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제4조, 제5조	한부모가족은 모(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로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함.		
	제5조 2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		
실태조사	제6조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sup>4)</sup>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인출일: 2017년 12월 8일)

# (표 Ⅲ-2-1 계속)

 구분		 내용		
관련 공무원	제6조2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항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단체 지원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크 이 리 시 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		
지원대상자	제10조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회 이상 `		
조사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함		
 보기고선 지키	ح 11/11 ت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신청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급여내용	제12조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복지 자금의	-1)40 <del>-7</del>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대여	제13조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제14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의 촉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고용지원	مر د الاحت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연계	제14조2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_ ,		도모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21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제17조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자녀양육비	제17조3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이행지원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1 //		

(표 Ⅲ-2-1 계속)

(		
구분		내용
아동・청소년	게17고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보육・교육	제17조5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주택의	7)]10.7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분양 임대	제18조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설치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 관련 법령을 본 연구에서 정리함.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인출일: 2017년 12월 8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이며 이 중 한부모가족이란 '모(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로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인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가족이다(제4조 및 제5조). 귀화하지 않은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한 외국인에 대한 특례(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17a: 198-199). 여성가족부장관은 매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제6조2항),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수 있다(제9조).

복지급여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제11조), 지원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 2017a: 2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제10조). 복지급여의 내용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이며(제12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자금의 대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제1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부)와 아동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알선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제14조),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지원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제14조 2항).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부양 서비스, 교육·상담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제17조),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제17조 5항).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제18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20조). 자녀양육비 이행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3항).

한부모가족의 복지 중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 자녀양육으로 인해 교육이나 고용에서 차별받는 일 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에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본 연구의 심층면담 결과 욕구가 파악된 결혼, 이혼과 사별 과정에서의 상담지원, 법률적 지원,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부모 자립 지원, 지원체계로 구분 정리하였다.

## 가. 결혼, 이혼과 사별 과정에서의 상담 지원5)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치료 지원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상담·치료 지원과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으로 협의·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지원이 있다.

##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통해 가족생활의 안정 및 조기 자립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시설 입소자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의 한부모에게도 지원한다. 시설 내자체 상담 역량에 따라 내부적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한다. 심리치료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먼저 모든 신규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및 초기 면접으로 시설에서 실시한다. 입소자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인된 심리상담 자격을 가진 상담사에게 의뢰해 심리검

<sup>5) 2017</sup>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정리함.

사를 수행한다(다면적 인성검사 MMPI, Beck 우울 척도 BDI, K-WAIS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등). 1단계 검사 결과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입소자는 2단계의 전문 심리치료센터 혹은 3단계의 병원(정신보건센터, 신경정신과, 정신과 등)으로 연계해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

전체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 3회 이상의 주기적인 집단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치유를 지원하고 추가적인 단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치유캠프' 등 다양한 형태의 집단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a: 261).

## 2)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6)

이혼을 앞두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은 이혼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지원하고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원연계 서비스다. 2008년부터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는 3개월)제도를 두고 있으나, 강제가 아닌 권고조항에 그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자녀양육비, 자녀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이혼이 결정되고, 자녀에 대한 심리·정서적 상담이 없어 아동복리에 취약한 상황이다.

협의·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혼 상담 관련 전문성과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중에서 선정된 전문 기관에 의해 상담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담인력 1명을 반드시 배치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상담위원이나 전문강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다. 기관은 법원이나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7a: 326-328).

사업내용에 이혼 신청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가족기능 회복 및 아동복리 증진을 위한 무료 상담·교육·문화서비스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상담 내용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혼 후 의사소통을 통한 자녀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부모들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충실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회복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상담회기 등은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정한다(여성가족부, 2017a: 331).

<sup>6) 2017</sup>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정리함.

#### 나. 법률적 지원

한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법률적 지원은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1) 양육비이행관리원

2014년 제정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1회 신청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지원, 양육지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추심지원을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지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후관리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와 자녀 간의 관계개선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부부간의 이별이 부모자녀 관계의 단절로 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양육비이행이 시행되지 않아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처할 것이예상되면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인 경우 일단 자녀1인당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경우는 10만원)을 긴급지원한 후 양육비이행의무자인 부나 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은 총 6개월 지원이며 위기상황이 여전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하다.

한부모와 양육 자녀 또한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별 혹은 집단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대상별로 전문가가 이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지지그룹 운영을통해 가정 해체를 통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화, 방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및 양육비 이행확보신청 등이 가능하고 상담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1644-6621이다.7

## 2)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민사 혹은 형사사건, 행정 소송 등에 휘말려 법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등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sup>7)</sup>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childsupport.or.kr (인출일: 2017년 11월 29일)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가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관련 지원 사건은 대한법률구조 공단이 수행하는 다른 민 가사 사건과 분리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담당한 다(여성가족부, 2017a: 316-317).

### 다. 주거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주거 문제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갑자기 거주하던 곳에서 나와야 할 때 한부모가족이 이 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고, 그 외 공동생활가정형 매 입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어바웃빌리지) 등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이 있어 자립의 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유형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 한부모는 자신의 가족 유형에 맞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가족은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가 기준이지만 자녀가 취학 시에는 만 22세 미만인 경우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a: 199). 최근 개정된법에 의하면 입소 이후에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보장받는다(여성가족부, 2017a: 201).

결혼이주여성과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다문화 한부모가족도 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입소대상이다. 시설마다 최초 입소기간과 연장 가능 입소기간이 다르다(여성가족부, 2017a: 17).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생활시설 122개소와 이용시설 4개소로 총 126 개소가 있다. 이중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로 이루어진 다문화 한부모가 2년 이상이용할 수 있는 모자가족복지시설은 총 48개소로 기본생활지원형이 42개소로가장 많고, 자립생활지원형과 공동생활지원형이 각 3개소를 차지한다(여성가족부, 2017a: 199). 시설 유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입소 정원을 <표 III-2-2>에 제시하였다.

시설 유형	시설 수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연장가능)	입소정원
기본생활 지원	42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2년)	1,026세대
자립생활 지원	3 (경기1, 충북1, 전북1)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우선 입소 가능	3년(2년)	41세대
공동생활 지원	3 (인천2, 경북1)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2년(1년)	45세대

〈표 Ⅲ-2-2〉모자가족복지시설 유형

자료: 여성가족부(2017a).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99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표를 재구성함.

모자가족 시설중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은 한부모가족에게 주거할 곳을 제공하고, 자녀에게는 방과후 아동지도와 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모(부)에게는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을 연계해주고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계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7a: 202).

공동생활지원형의 경우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입소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입소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충격을 경험한 가족을 포함한다. 한부모가족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의 직업교육을 시설 내에서 실시하거나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하여 제공한다. 자녀양육 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을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7a: 202).

일시 지원 복지시설은 2016년 12월 현재 전국에 모두 11개소가 있으며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각 1개소가 있다 (경북 삶의 쉼터는 휴지). 입소정원은 총 321명이며, 입소대상은 배우자의 물리

적·정신적 학대로 인해 모의 건강이 상당히 우려할만한 상황이며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입소기간 6개월에 6개월을 연장할 수있다. 입소한 한부모와 자녀의 입소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숙식 무료제공은 물론이고 생활보조금, 의료혜택,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한다. 자녀의 방과 후 지도, 아동급식비를 지급하며 학령기의 시설입소자 아동이 가까운 학교에 출석을 원하면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며 전·입학 문제 등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a: 206-207).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이용시설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을 지원하며, 서울과 대전 각 1개소와 충북 2개소로 전국에 모두 4개소 가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모 만이 입소할 수 있 었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이 2017년 이후 이혼 임산부 및 출산 후까지로 입소대상을 확대하였다(여성가족부, 2017a: 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자립준비금 공제제도가 있다. 시설에 입소한 뒤 근로를 통해 번 월별 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소득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그러나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립준비금을 저축하는 한부모에게는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는 지급하지 않으며 시설의 퇴소 유예 여부는 시설의 장이 대기자를 고려하여 시행한다.이 제도로 인해 시설 입소가 유지된 경우 시설 입소기간 연장은 어렵다(여성가족부, 2017a: 224)

# 2)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 주거로 인한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a: 290).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은 정부가 지원하고 입주자는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직업이

있거나 아니면 자립 의지가 확고한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입주 기간 중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2016년까 지는 저소득 미혼모, 미혼부 가족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7년에 무주택 저소 득 한부모로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 입주 우선순위는 미혼한부모가족(1순위), 부자가족(2순위), 모자가족(3순위)다. 미혼모자가족이 아닌 일반 모자가족은 전체 수용가능 가구 수(방별 1가구)의 20% 미만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하는 기 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1회에 한해 최대 2년 내 연장 가능하여 최장 4년을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a: 8).

입주 방식은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가 원칙이지만, 주택 규모나 가족 특성(가족 구성원 수, 자녀 연령)을 고려하여 1호당 1가구 입주가 가능하기도 하다(여성가족부, 2017a: 288).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여성가족부에서 결정한 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주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최근 5년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나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수행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들이 선정된다(여성가족부, 2017a: 289). 운영기관에서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LH공사·지역공사와 임대주택계약, 입주자 모집·선정, 관리비 수납 및 주택 관리점검과 함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입주자 상담,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등의 자립 지원을 한다.

#### 3) 민관협력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민관협력을 통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자립의 의지는 있지만 주거비용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못 하고 있던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자립지원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6: 20).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나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입주기간 중 상담 및 직업 훈련, 취업연계 등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임대보증 금은 면제이며 입주자는 저렴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 및 공과금을 부담하나 지자체에 따라 월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8)

<sup>8)</sup>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의 한부모주거지원사업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http://www.kihf.or.kr/lay1/bbs/S1T62C63/A/3/view.do?article\_seq=982&mode=view&tp=1

#### 4)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특별공급하는 유형의 주거 지원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한부모가족을 선정·특별공급대상 추천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015.6.8.)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파악하고 민간 주택사업자 등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시·도지사는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가족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평점요소는 가구원 수, 한부모 등록 시부터 무주택 기간, 특별공급 대상지역 거주 기간, 근로 기간 등 자활의지, 아동 장애여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배점 기준표"를 작성, 사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a: 226-228).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도시공사에서 시행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 (30년)나 영구 임대, 기존주택 매입 등의 임대주택에 관계 법령상의 신청자격을 갖춘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이 된다(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10-1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 경우에는 본인은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이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데 있어 지자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최근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11.7.)를 통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가 개정되었음을 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에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확인 절차를 생략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서 경험했던 임대주택 신청절차 상의 어려움이 시정되라 본다.

<sup>(</sup>인출일: 2017년 11월 20일)

<sup>9)</sup>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316 (인출일: 2017년 11월 20일)

#### 5) 기존주택 매입임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 지원에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있다(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71). 그 예로 은평구는 2017년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한부모가족 맞춤형 공공주택'인 어바웃빌리지를 공급하였다.10) 지역 내의 기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예정자의수요를 고려한 평면조정과 설계, 시공을 거쳐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 2층에서 5층까지 다양한 가족규모의 8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며 2층의 커뮤니티실과 공동 주방 및 옥상을 갖춘 5층 공동주택을 공급하였다.

입주대상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 8세대로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를 참조해서 선정되었다. 전 용면적은 최소 42.16㎡, 최대 65.12㎡,이고, 임대보증금은 13,730,000(원) - 20,240,000(원), 월 예상 임대료는 178,800원 ~ 263,700원 사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9회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71).

어바웃빌리지는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돌봐주고 바라보고 소통하는 이웃으로 살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해소는 물론 한부모 가구 세대 간 공동양육을 통해 긴급상황시의 양육공백을 방지하고 가족품앗이를 통해 자녀들은 물론 어머니들도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운영하는 커뮤니티실내 작은 도서실과 공부방, 공동주방이나 옥상 텃밭을 통해이웃 간 유대감 형성은 물론 자조모임의 발전 및 자연스러운 리더십의 발달도기대해 볼 수 있다.

## 6) 기존주택 전세임대

무주택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전세금을 지원하는 유형의

<sup>10)</sup>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 분양임대 안내페이지 https://blog.naver.com/together\_sh/220973991117 (인출일: 2017년 11월 20일)

주거 지원이다. 지원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한부모 가족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전세지원금의 한도액은 수도권은 8천5백만 원, 광역시는 6천5백만 원, 기타지역은 5천5백만 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입주자인 한부모 가족이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이내의 해당액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고 9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어야 한다(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11, 72-73).

#### 라. 경제적 지원

다문화 한부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지원제도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귀화하지 않은 다문화 한부모 경우 예전에는 소득수준이 낮아도 국민이 아니어서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다문화한부모는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표 III-2-3>에서 제시하는 소득수준에따라 생계급여를 받거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11)

〈표 Ⅲ-2-3〉2017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301 2인 4인 5인 2017년 기준 중위소득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생계급여 수급자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기준 중위소득 30%) 한부모 및 조손가족 1,893,276 2,323,038 1,463,513 2,752,799 (기준 중위소득의 52%)

자료: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7). 2017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p.41의 표일부임.

<sup>11)</sup>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는 가구이며, 보장가 구에 포함되는 사람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외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32, 34).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에는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소득공제, 그 외 교육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의 기타 지원이 있다.

## 1)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a: 4).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은 기존의 만12세 미만에서 상향 조정하여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에 아동 1인당 월 12만원을 지원한다(2012년 월5만원 → 2013년 월7만원 → 2015년 월10만원 → 2017년 월12만원으로 지속적 인상). 사업예산을 보면 2016년의 대상 아동 수 75,000명에서 2017년에 81,260명으로 증가하여 예산도 66,960백만 원에서 87,058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2016년까지 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 1인당 연 5.41만원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a: 4). 그러나 예산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4,175백만 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하여 대상 아동 수가 2016년의 113,000명에서 2017년에는 104,437명으로 축소되었다.

한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17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은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으나 2016년 4월 4일 이후 주민센터는 물론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높였다.

2012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가구당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a: 15). 사업예산을 보면 2016년 290가구 대상, 132백만 원이 2017년에도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의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중복해서 지급 가능하다.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 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과 중복해서 지급되 지 않는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 원대상자와 동시 선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복지급 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복지급여액이 많다(여성가족부, 2017a: 142).

## 2) 한부모가족 소득공제

한부모로 20세 이하의 자녀와 생계 및 거주를 함께 할 경우 종합소득에서 연 100만원 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6: 10). 그 외 일용 근로소득은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10% 공제가 적용된다(여성가족부, 2017a: 73).

일례로 자활근로소득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인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25만원/월, 취업성공수당은 1인당 최대 150만원,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11.6만원/월,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 최대 31.6만원/월이다.

## 3) 자녀장려금

한부모는 물론 부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 이하 소유이고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검색). 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124).

# 4)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포함해서 다음 <표 III-2-4>와 같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요금감면 혜택이 있다. 모두 별도 신청해야 지원 가능한 혜택이며 이 외에도 지자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및 인터넷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경감	42.5원/㎡할인혜택 (신청일 익월1일부터 요금경감적용)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전력 정액감면 (월8천원 한도) 심야전력(갑):31.4%감면 심야전력(을) 20%감면 차상위계층: 주택용전력 정액감면 (월2천원 한도) 심야전력(갑): 29.7% 심야전력(읍):18%	이동통신 (휴대폰)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3만원 이내 사용요금 기본료면제,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 : 3만원 이내 사용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연소득 360만원 미만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	여가지원	개인별 연간5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지원

〈표 Ⅲ-2-4〉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자료: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7). 2017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p.48표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표를 재구성함.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51.do (인출일: 2017년 11월 20일)

## 마. 자녀 양육 지원

# 1) 취약위기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취약·위기가족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 득 72%이하인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및 정서지원을 제공하고(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한부모의 건강상태 악화 등의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지원하며(키움도움이 파견) 자녀에 대한 긴급 일시 돌봄,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면 긴급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지리더를 파견하여 가족들이 위기 상황을 잘 넘기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필요할 경우 정신적 외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사업수행은 전국적으로 지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진다.12)

<sup>12)</sup>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취약위기 가족 지원

## 2)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이유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을 신청할수 있다.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며 차액은 본인부담이다. 서비스 비용은 24시간(A형)이면 월 244,800원, 27시간(B형) 경우 월 275,40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A형은 면제이며, B형은 월 10,040원이다.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110-111).

#### 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2015년 기준 국가예방접종(14종)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게 지원한다. 접종기관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사이트 및 시·군·구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국어디에서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모든 예방접종기록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이 누락되는 것을 예방한다. <예방접종 제공 서비스>를 통해 다음 예방접종일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자녀의 예방접종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입학(입소)시 예방접종기록이 전산등록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여성가족부, 2017a: 277).

# 4) 아이돌보미서비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종일제와 시간제의 두 유형이 있다.13) 아동의 가정에 아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33.do (인출일: 2017년 11월 30일) 1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아이돌보미서비스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31.do (인출일: 2017년 11월 30일)

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야간과 휴일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돌봄서비스만을 제공하며, 종합형 돌봄서비스는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한다.

### 5) 드림스타트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제공한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이 사회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목적이다.

사례 아동의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수준을 사정한 뒤 그에 따라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의 양육환경과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특히 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한다. 부모 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부모양육 기술을 지원한다. 신청은 시군구가 설치한 해당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립스타트)로 문의하면 되며 전국적인 현황은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www.dreamsta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120)

# 6)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미만의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무료로(저소득 이외의 아동은 실비 부담) 보호·교육, 문화체험, 복지상담 등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보호프로그램(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제공, 생활안전지도, 귀가지도), 교육프로그램(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인성교육, 진로지도, 특기적성지도), 문화프로그램(체험활동, 참여활동), 정서지원(아동상담 및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연계(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로 구성된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돌봄이 방과후 ~ 19:00(17:00), 저녁돌봄이 19:00(17:00) ~ 22:00, 토요돌봄은 09:00 ~ 13:00이다. 방학 중에는 10:00 ~ 18:00까지 운영하며 수요에 따라 야간 및 토요일에도 운영하다.14)

#### 바. 부모 자립 지원

### 1)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원스톱 종합 취업지원기관으로 주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 등이다. 지원내용은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이다. 전국적인 현황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전화 1544-1199)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127).

## 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1단계 진단ㆍ경로 설정  $\rightarrow$  2단계 의욕ㆍ능력 증진  $\rightarrow$  3단계 집중ㆍ취업 알선)로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만18세~만64세 이하의 결혼이민자, 한부모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용노동부(전화 1350)나 한국고용정보원(전화 1577-7114)에 하면 된다(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125).

# 3) 자산형성 지원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근로자가 자활에 필 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을 통 해 자산형성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안은 유사한 재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sup>14)</sup>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지역아동센터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32.do (인출일: 2017년 11월 30일)

없으며 한 번 혜택을 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다. 해당지자체나 지역 자활센터에서 가입문의를 처리한다(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134).

〈표 III-2-5〉 자산형성 지원

 구분	희망키움통장I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금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자활근로사업단참여 (최근 1개월 성실참여자)
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10만원	5만원또는10만원(선택)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9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1)	<ul> <li>내일키움장려금 -시장진입형: 본인저축액1:1 - 사회서비스형 A: 1:0.5 매칭 지원 - 사회서비스형 B: 1:0.3 매칭 지원</li> </ul>
추가 지원액			내일키움수익금 최대 15만원(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에따라차등지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통장3년 유지 및 교육 이수조건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사용관계증빙서류 제출
실질	3년, 3인 가구 기준 : 평균 1,400만원 (최대 2,052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5년 개인통장 유지 시 약 1,000만원)	3년 기준 : 평균 900만원 (최대 1,300만원) 적립

자료: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7) : 2017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p. 134의 표를 재구성함.

## 사. 지원체계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라는 특성으로 인해 안정된 생활 및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라는 생활밀착 서비스제공자를 양성하여 심리·사회적으로 위축된 초기 한부모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29). 먼저 한부모가장으로서 살아온 경험이 축적된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가 취약한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 당사자와 1:1 연계를 통해 심리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가 지원하는 내용은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정보, 자녀양육 정보, 심리·정서적지지그리고 양육비 이행 정보제공 및 지원기관 동행서비스 등이다. 한 명의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가 보통 한부모가족 5~8명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당 총 8회기까지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다문화 한부모 중에도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다문화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0개 센터에만 그것도 1명씩 배치된 다문화사례 관리사가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 한가족을 발굴하고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2017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최근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한 기관수가 100개소를 넘으면서 다문화사례관리사와 입국초기 맞춤형 가족관리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던 다문화생활지도사의 역할을 통합했다(여성가족부, 2017c: 397). 기존의 다문화사례관리사는 5일제 다문화사례관리사로, 다문화생활지도사는 4일제 다문화사례관리사로 각각 각 1년에 25건과 15건의 사례를 발굴하여 다문화가족의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7b: 137-138)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가정을 위기, 일반, 통합으로 분류한 후 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기 가구에는 가족폭력, 이혼, 자살(시도), 재난 등의 경험을 한 가구가 속한다. 4일제 다문화사례관리사는 멘토링의 관리 도 담당하는데 한국에 먼저 적응한 결혼이민자 멘토와 한국이 낯선 초기 결혼 이민자인 멘티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5-10회 정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그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7c: 397, 401, 406-407). 다문화 한부모가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해 〈표 III-2-6〉에 정리하였다.

〈표 III-2-6〉다문화 한부모 지원체계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구분	다문화 사례관리사 (5일제)	다문화생활관리사 다문화사례관리사 (4일제)	멘토	전원센터 한부모가정지원 생활 코디네이터
소속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50개소, 50명 건가다가센터 93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가다가센터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주요 업무	-1인당 연간 누적 25사례 이상 신규사례 대상가구 발굴	-1인당 연간 누적 15사례 이상 발굴 -멘토링 운영관리, -방문지도사 연계사업	초기 결혼이민자 -정서적 지지 - 돌봄 등 - 1:1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국에서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기여	초기 한부모가정의 -자립의지 고취 -동기부여 -생활설계 -정서 지원 -사회·정책 정보제공
사례 관리 대상	-위기가구 (가족폭력, 이혼, 저 경험) -일반·통합가구	· 사살(시도), 재난 등	1인당 총 5~10회 실시	1인당 8회 사례: 다문화 한부모: 5~8명,
업무 빈도	주5일	주4일	멘토링 프로그램 : 5회~10회	1인당 평균 8회기(최대 40회기)
보수	28,500천원(연)	20,000천원(연)	25,000원(회)	35,000원(회)
자격 기준	-관련학과 석사학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년 이상		-국내거주 1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한국어 구사 -모범적인 가정생활 유지	-기본과정교육 10:00~17:00 -전문과정교육 10:00~18:00

자료: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7). 2017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p.29, 여성가족부(2017c).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II) 부록. pp.397, 401, 406-407, 1차 전문가 자문회의(2017년 9월 21일 실시)를 토대로 재구성함.

# 3. 국외 정책 사례

본 장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2000년대 들어 이주민들에 대한 개방정책과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문화정책을 발전시켜 온 독일(한영빈, 2013: 39)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처럼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족주의와 속인주의에 기반한 국적법을 고수해 왔던 독일이 2000년 국적법의 개정과 2005년 이민법의 제정을 통해 이주민 사회통합을위한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김영란, 2012: 31, 34).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진 21세기는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민족국가가 지배하는 시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권형 진, 2017: 7-8).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5년 말 기준 약 190만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3.69%이며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체류하는 이민자 중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재외동포 그리고 한국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자다(희망제작소, 2016: 10, 28). 독일은 2013년 기준 전체 인구의 20.5%가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은 전체인구의 8.7%에 이르고 있다(독일 통계청, 2014: 한영빈, 2013에서 재인용). 독일의 통합정책은 단기 노동을 위해 들어 왔던 터키계 및 비유럽국가에서 온 이주민 및 난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영빈, 2013: 47).

독일은 과거에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1년 단위로 취업허가를 내주며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던 초청노동자라는 제도를 이용해 이주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영구 체류는 정책적으로 막았다(한영빈, 2013: 48). 그럼에도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1973년 초청노동자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귀국촉진법까지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 힘을 기울였으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을 데려오는 것이 가능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을 초청함에 따라 외국인 숫자는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증가하기도 했다(한영빈, 2013: 49). 또한 1989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동유럽 및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던 독일동포 및 난민들이 독일로 대거 이주해 들어옴에 따라 독일은 1990년에 외국인법을 개정하여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독일국적 취득을 처음으로 허용하였다(한영빈, 2013: 49-50). 그러다가 이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 교육, 언어 등 이민자 가정과 자녀들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 시작하여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저출산과 고

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염려되던 시점이라 1998년 독일 정부는 이주민들에 대한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김영란, 2012: 36).

독일은 2000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으로 정해진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갖춘 경우에 독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이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독일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권형진, 2017, 36). 기존에 15년 이상 거주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나아졌다고 하지만 간이귀화를 통해 입국 후 거주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2년 혹은 3년 이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한국의 결혼이민자와 비교하면 훨씬 어려움을 알 수 있다(문흥안, 2013: 296). 그러나 한국경우 간이귀화 신청 시 배우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귀화허가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가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큰 어려움이다. 독일은 또한 개정국적법을 통해 부부 중 한사람이 8년이상 합법적으로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출생을통해 독일국적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속인주의적 전통에 속지주의적 성격을 보완하였다(권형진, 2017, 35).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위기를 느낀 독일은 이주민의 유입이해결책이라고 믿어 2005년 외국인의 이민과 이주민들의 독일문화로의 통합을 규정하는 새로운 이민법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에게 독일인과 같은 권리와 사회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 독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란, 2012: 38-39). 독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독일로유입되는 이주민을 한 개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가족들의 이주까지 고려한 즉 여러 세대를 내다보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김태원, 2011: 104). 따라서 다문화가족에게도 독일인과 같은 수혜를 주고 있고, 취업과 양육지원을 중점으로 한 사회보장혜택을 펼치고 있다(김영란, 2012: 38-39). 이를 위해 독일정부는 외국인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초기 개별상담을 통해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개인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 주는 기초상담실을 운영하며,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연방부(이하 연방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이주 상담소를 따로 지원하고 있다(행자부, 2007: 이용승, 2007에서 재인용).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통합프로그램에 이주민들은 반드시 참여하여 독

일어와 독일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역사, 정치, 제도 그리고 문화적 규범들을 학습하도록 규정하였다(Rita Süssmuth, 2009: 한영빈, 2013에서 재인용). 통합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일어 강좌와 오리엔테이션 강좌가 제공되고 나중에는 시 민권 시험도 추가되었다(한영빈, 2013: 52). 또한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통합이 일자리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은 독일은 일자리와 교육을 연결시켜 언어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 진(한영빈, 2013: 58)하여 독일의 통합정책은 독일어 교육에서 출발한다. 이주민 들이 독일어에 유창하면 그만큼 현지인들과의 간격도 좁혀지고 독일의 교육이 나 복지 혜택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취업기회도 높아지기 때문이다(김영란, 2012: 45). 이주민들은 기초 독일어 수업 600시간(3개 등급)과 독일 이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업 45시간을 합해 총 645시간의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독 일어 B1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만 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합격률이 6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이주민들에게 쉽지 않은 일 인 듯하다(한영빈, 2013: 59). 독일의 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을 독일 사회로 동화시키려 하고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 이주민들은 배제 혹은 추방시키는 정책 을 실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독일은 통합프로그램에 투입하는 예산과 수 업시간을 점차 늘려 2010년 실시된 통합프로그램은 독일의 역사, 문화 등의 배 경지식을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의무 수업만 900시간에 달했고 청소 년, 여성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하는 대상자 등을 위한 특별 언어 지도까지 더하 면 최대 1,200시간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김영란, 2012: 45). 한국의 사회통합프로 그램 교육과정이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를 포함해서 6단계 총 465시간(법무부, 2016: 40)임을 고려할 때 독일이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독일 연방가족부는 "더 강하게 일찍부터 기회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육시설과 이주민 어린이들의 언어교육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독일어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유아기부터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다문화가정 특히 다문화 한부모의 자녀가 다른 한국인 가정 자녀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있다(김영란, 2012: 45, 57-58).

독일의 경우 연방내무부 산하의 '연방이민 난민청'이 통합정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원제도는 각 주정부가 운영하여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통합하도록 한다(김순임·민춘기, 2011: 김영란, 2012에서 재인용). 한국의 경우 다문화정책기본계획에 의해 각 부처에서 정책들을 수립하고 다문화정책위원회가 조정역할을 맡기 이전부터 각 부처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들 중에 아직까지도 조정되지 않고 이어져 오는 중복 사업들이나 단기적 성과만을 바라보는 사업들이 있어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이는 다문화정책 방향이 동화주의인지 아니면 다원주의인지에 대해 우리사회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각 부처별 정책영역의 확장이나 새로운 정책의 발굴차원에서만 다문화정책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김영란, 2012: 59; 희망제작소, 2016: 36).

독일 정부의 다문화정책 기조는 통계청의 인구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민법 제정 이후 실시한 통계청의 인구조사에서는 이전처럼 독일인과 외국인으로만 이분화한 기준이 아니라 보다 이주민의 지위에 따라 보다 세분화한 이주배경을 인구통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것은 독일이 이러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수요자에 맞는 다문화 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김영란, 2012: 41, 44).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주 배경이 있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률이 이주 배경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나며 그 격차가 점차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서의 격차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낮추고 이는 결국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갖는 것을 막는다. 이주 배경이 없는 취업자에 비해 이주 배경이 있는 취업자가 노동자 직군에는 2배 정도 많고 사무직이나 공무원 직군에는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한영빈, 2013: 59-60).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학교 급이 올라가면서 학교이탈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의 개입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정책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희망제작소, 2016: 54).

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국적취득률이다. 국적취득은 이주 민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이규영·김경미, 2010: 15)는 점에서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독일은 2012년 기준 1.7% 정도로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적취득률이 낮은 이유는 이민법에 있는 이중국적 포기 조항과 시민권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독일 정부가 2008년부터 실시한 시민권 시험 때문으로 보인다(한영빈, 2013: 61).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다문화 한부모 경우 법률 및 정책 변화를 통해 사회복지혜택은 받지만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권리 행사는 하지 못함을 고려할 때 간이귀화 신청자격에 있는 재정능력 부분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독일은 많은 법규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적극적인 이주자 유치 정책과 통합정책을 통해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오히려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불만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2010년 10월 독일의 다문화주의가 실패하였음을 선언한 것을 보면 독일은 다문화사회로 갈 길이 아직 먼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한영빈, 2013: 40, 62). 이런 독일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정책이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미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지원한다는 식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된다면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자신이 일자리나 복지혜택 등에 있어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회구성원들이 늘어나는 즉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통합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한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에 발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으로 한국인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 수준이나 다문화수용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이나 자원봉사 등 유관 활동 참여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희망제작소, 2016: 50). 따라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의 자연스런 어울림을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받아들임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핵가족이 가장 기본적인 가족 유형이며 독신가구와 한부모가족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0년 기준 한부모가족은 전 세대의 17%를 차지하며 그 중

86%가 모자가정이다. 2005년 독일의 출산율이 1945년 이후 최하를 기록하며 국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켜지자 독일정부도 출산율을 향상시키기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나섰다(조성혜, 2008: 563). 가족정책은 직장생활과의 병행에 주안점을 두어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직장과 육아를 양립할 수있도록 모성보호법,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제도, 아동수당, 보육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만들거나 개선하였다. 독일은 일찍이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954년 자녀수당과 자녀공제를 만들었으며 1965년에는 주택수당법, 1968년에는 모성보호법을 제정하여 자녀를 둔 가족에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임종헌・한형서, 2011: 198). 1992년에는 자녀가 있는 가족의 부담을 위해 최저생활비를 비과세로 하였으며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양부모 가족 연소득 비과세 한도액의 절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 또한 자녀수당과 자녀공제의 2중 제도를 개정하여,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비과세 가구는 자녀수당 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임종헌・한형서, 2011: 203).

가정과 직장생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는 육아수당과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1992년 육아휴직은 최장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육아휴직은 3차례에 걸쳐 모나 부가 교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 19시간까지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1993년에는 육아수당 지급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렸으며 육아휴직 중 소득보장은 육아휴직 이전 부모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생후 8개월까지는 월정액800마르크의 육아수당을 지급하였고, 생후 7개월 이후에는 수입에 따라 육아수당을 차등화하였다(임종헌·한형서, 2011: 204).

자녀수당도 2000년 개정하여 셋째 자녀부터는 월정액을 첫째나 둘째보다 늘리고 지급연령의 상한선도 자녀의 취학이나 취업상태에 관계없이 16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하였다. 자녀공제액이나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주거비 지원액도상향 조정하고 수급가능한 양육자의 연소득 상한선도 인상하였다(임종헌·한형서, 2011: 203).

2005년 독일은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과 여성취업의 증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정하고 부모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아동수당제도를 개선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추가수당, 보육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임종헌·한형서, 2011: 206). 수당은 소득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바꿨

으며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지역가족연대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의 통합을 추진하였다(정재훈, 2010: 168).

독일은 자녀양육에 있어 남성의 참여를 높이고자 2000년 부모휴직법과 연방 부모휴직수당을 제정하였다. 이 제도로 인해 신생아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동 시에 또는 교대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육수당은 종전의 정액지 급에서 휴직 전 부모의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부 모 중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도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 자격은 독일에 거주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동거한다면 일시 적 거주자를 제외한 외국인도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 부모휴직수당 은 세금을 제한 기존 월급의 67%를 총 14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다. 12개월은 부모 중 한명에게 2개월은 다른 한명에게 지급되도록 해서 혜택을 모두 받으려 면 부모가 교대로 양육을 해야만 하도록 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에 게는 최대 14개월 동안 지급된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학생 등의 경우에는 가족수입에 무관하게 일정액을 부모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조성혜, 2008: 570-573). 부모휴직은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부모휴직 기간은 아동이 만 3세가 될 때까지나 전 기간을 사용할지 일부만 사용할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지 교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사용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고 용주가 동의할 경우 전체 부모휴직 기간 중 12개월 이하의 기간을 아동이 8세 가 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가 제한되며, 휴직 후에 는 종전의 업무 혹은 그와 동일한 업무로 복귀가 보장된다. 1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서는 경영상의 필수불가결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 시간 이하의 단축근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조성혜, 2008: 574-576).

독일은 오랫동안 만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족 내 특히 모에 의한 보육이 중시되어서 시설보육 비율이 높지 않았다. 유니세프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3세 미만 아동의 시설보육 비율은 25개 조사국 중 14번째로 나타났다(임종헌·한형서, 2011: 210). 그러나 독일의 젊은 부모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보육시설확충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만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을 활성화하고 취학 전

유아들에 대한 전일보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내 보모에 의한 보육, 시민의 자발적 참여 또는 민간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조성혜, 2008: 579-580), 직업이 있는 부모뿐 아니라 구직 중에 있는 부모의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을 지원하는 것이다(임종헌·한형서, 2011: 211).

독일 연방가족부는 2003년 12월 1일'지역가족연대'를 구성하였다. 지역가족연대는 전국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 기관과 조직이 함께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 내의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 키우고 싶게 하자는 것이다(BMFSFJ, 2004: 정재훈, 2010에서 인용). 지역가족연대는 가족친화적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가정생활과 취업생활의 균형 그리고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의 사회 통합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 가족의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카페를 만들어 문화교류의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다문화가정 모와 자녀가 함께 어린이집에 와서 자녀는 돌봄을 받는 동안 모는 바로 그 곳에서 문화 및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에 작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독일어 교육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통합에 기역할 수 있다(정재훈, 2010: 186).

독일의 다문화정책은 합법적으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가정과 외국인들을 포함한다. 또한 이민법 제정과 국적법 개정으로 독일인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혜택과 기회에 외국인도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는 통합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그범위가 협소하다. 사회통합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다문화관련 정책의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주된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에 어느 한쪽은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자민족 중심주의적 통합모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희망제작소, 2016: 36).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관련 정책이 다양한 국제결혼가족 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가리키는 협소한 의미로만 사용되며(박복순 외, 2013: 희망제작소, 2016에서 재인용) 그나마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한국인 남성이 그 가족에 존재하지 않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결혼이민자 가족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일지원이 아닌 차별화된 지원과 사회보장은 한국 내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히 깊다.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귀화한 결혼이민자는 국적이 한국임에 도 불구하고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고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또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귀화자와 이주노동자는 한국 국적 여부에 따라 법률적·정책적 차별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또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자라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정체성 형성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자신과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받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자긍심을 갖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의 한부모 자녀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나 국적, 가족유형에 따라 다르게 대우 받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 수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현재 다문화정책의 대상임에도 소외되어 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힘써야 하겠지만 동시에 다문화정책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많은 다문화 구성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4. 소결

본 장에서는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 과제 중 다문화 한부모가족과 관련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지원 법은 2008년 제정되었으며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여를 위해 수행하거나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마무리되는 2017년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은 6대 영역(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구축,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8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한부 모가족은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 한부모는 귀화를 안 해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 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지원대상자가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에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결혼, 이혼과 사별 과정에서의 상담지원, 법률적 지원,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부모 자립 지원,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한부모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치료 지원에는 주로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갈등으로 인해 복지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나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제공되고 있다. 다문화 한부모가족 경우 가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남은 가족들이 그심리적 충격을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가정의 이혼 경우 협의보다는 재판에 의한 이혼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다문화 한부모가 이혼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아 자녀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이 소송 등에 휘말려 법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때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주거 문제인데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일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주거비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많아지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다문화 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공동주택을 시공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주거시설의 제공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들이 공동으로 육아하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도 양성될 수 있는 고무적인 일이다.

넷째,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공공부조는 물론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한부모가 족 소득공제나 자녀장려금, 고교학비나 학교급식비 지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긴급한 상황에일시 돌봄,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위기 가족 지원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종일제와 시간제의 아이돌보미서비스 그리고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여섯째, 자립 의지를 가진 다문화 한부모에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취업성

공패키지 등과 연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을 저축하면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은 다문화 한부모가 내일을 위 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다.

일곱째, 다문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는 한부모가 정지원생활코디네이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사례관리사와 다문화생 활지도사 그리고 결혼이민자 멘토링까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문화와 한부모라는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서비스전달체계 간에 연계가 필요하다.

# Ⅳ.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양육지원 요구

본 장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부모 대상 심층면 담 내용과 다문화 한부모 관련 지원 정책 실무자와 지원 단체 관련자의 면담내용을 분석 제시하였다.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15인의 면담내용을 통해 결혼, 이혼과 사별 등 한부모가 된 과정과 국적 취득 문제, 거주,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지원 이용의 어려움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련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 선행연구자, 지원 실무자, 자조모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무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과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1. 결혼, 이혼과 사별의 어려움

한부모가 되게 된 과정 또는 원인은 그 이후 어머니와 자녀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 생활 중의 경험은 이혼인지 사별인지에 따라 대체로 차이를 보여, 사별한 경우는 남편에 대해 긍정적 추억을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혼한 경우는 부정적 경험이 상처로 남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정불화 기간 동안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학대를 곁에서 본 경우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양육과정에 어려움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이혼의 과정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사별 뒤에라도 재산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아 경제적 빈곤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남편의원가족과의 관계는 가족에 따라 달랐고, 이혼한 경우 자녀와 아버지와의 만남이지속되기도 하였다.

(결혼 생활 중의 갈등이 상처로) 이혼 이후지만 갈등상황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상처로 남아있다고 하였다. 또 사별한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좀 놀아주기도 하고 그랬던…직장 잃게 되고 나서,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밤낮없이 술 먹게 되고 나서, 사람이 좀 너무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좋아하지 않죠. (Q: 지금도 아이들은 아버지와 만나나요?) 3년 정도는… 가정폭력 처벌이 심해져서…경찰을 불러내는 일이 아주 잦았거든요. 경찰이… (Q: 접근금지 명령을?) 예 그것도 수없이 했었고(이혼 9).

저희 남편도 구치소에서 이제 나온 지,..(손목에 찬 시계를 보여주며)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해주는 스마트워치에요. 제가 움직이는 위치를, 지금 저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세 번이나 저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제 머리 상처도 다 남 편이 한 거고. 자는 거를 야구방망이를 쳐서 이렇게 했고, 음식에다 약을 탔었고, 그리고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었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애들을 안 만나게 하 고 싶은 거예요(울먹이심)(이혼 8).

(자녀와의 관계가)너무 좋았죠. 우리 신랑은 어렸을 때부터 유복자였고,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사랑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욕 하나 안 하고.. 이렇게 아빠가 갑자기 술 먹으러 간다고 해 놓고 없어지니까 애한테는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지금도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놀아주고 기억해요(사별 2).

(남편 원가족과의 관계) 사별한 경우와 이혼한 경우는 한부모이라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이혼의 경우가 남편, 남편의 원가족과의 갈등이나 폭력 등 어려움이 심하다. 사별한 경우에는 남편의 원가족과 연계를 이루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혼한 경우 자녀와 남편과는 친밀하게 관계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결혼과정에서 시댁하고 마찰이 너무 심했어요. 시부모님은 아닌데 시누들. 시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싸움도 시키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이혼 8).

시부모님이 폭행, 시누들이 욕하고, 신랑도 술 먹으면 폭행. 우리 아들이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기억나 그래서 신랑 돌아가니까 애들이 기억이 나면 아빠가 나 빠 그것 밖에 몰라요(사별 3).

저는 자주. 시어머니께서도 일주일이나 한번, 이 주에 한번 씩 전화도 드리고, 이번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아주버님 그리고 아가씨 그 형님, 선물 사왔거든 요. 그때 명절 때마다 가요. 그리고 연락도 자주 해요(사별 6). 아빠가 아이들과 놀 때는 정말 확실하게 놀아줘요. 근데 놀다가 자기가 기분이 나빠지면 주먹이 나간다든가 욕이 나간다든가 그런 게 좀 싫었던 거예요. 놀 때는 확실히 놀아는 줘요. (Q: 아이들은 아빠를 좋아했나요?) 좋아했죠. 그래도 아빠니까. 지금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래요. 제 눈치를 좀 보고(이혼 8).

(관계 단절 후 주로 경제적 문제 갈등) 이혼과 사별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 상황을 맞기도 하였다. 이는 자연스레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게 되고 자녀 에게는 확대가족과의 유대가 끊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저는 재산 때문에 연락 끊었어요. 남편 돌아가서 보상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시댁에 다 가져갔어요. 그러고 하나도 안주고 또 저쪽에서 먼저 연락 끊은 거예 요. 그래서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아도 얼굴도 안 만나고 그래요(사별 7).

아주버님이 해서, 제가 한국말을 전혀 몰라가지고 상속포기 다 해 줬기 때문에 애들이 다 포기했어요(사별 3).

저는 다문화센터 한국어선생님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다문화 가정을 겪었잖아요. 중간에 어떤 베트남 가정에 남편이 일하러 갔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시어머니하고 아이 두 명, 아빠, 엄마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그 어르신이 대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어르신이 며느리하고 손자 두 명을 나가라고 쫓아요(전문가 4).

우리 외국 사람한테 한 달 양육비만 줘요. (헤어질 때)그 재산은 우리한테 안 줘요. 소송한 것도 소용없어요(이혼 2).

# 2. 국적 취득/귀화 관련 문제

국적의 취득은 최저생계비, 임대주택 등 각종 한부모 지원과 연계되므로 다 문화 배경을 지닌 어머니들에게 국적의 취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기에 국적 미취득 한부모 가정은 현재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국적의 취득을 도울 수 있는 다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적 취득과정이 어려움)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던

국적의 취득이 한부모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는 벅찬 과정임을 설명한다. 한국어 등 시험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증명하는 과정(은행 잔고 증명)까지 필요로 하며, 서류 준비의 복잡함, 잦은 법규의 변경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한국 국적) 취득한지 한 두 달, 세 달? 됐어요. (국적 취득)엄-청 어려웠었어요. 네. 진짜 개고생했어요(웃음)(사별 5).

아, 저는 남편 있었을 때는 국적 취득하는 생각이 별,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 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애기 한국에서 키우려면 국적 취득해야 된다고 막 여러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취득 할 생각했죠. 근데 너무 서류가복잡하고 그리고 시험도 봐야 된대요. 실력이 아예 없어서 시험 보는 게 되게 못했었어요. 근데 한지 한 2년, 2년, 3년 정도... 남편 가고 난 다음에 2, 3년 동안 계속 기관이나 다문화센터나 뭐 학원이나 다녔었어요. 그러고 한국말 좀 늘어져서 시험 보고 합격해서 바로(웃음)... 엄청 어려웠었어요(사별 5).

남편 있는 경우하고 남편 있는 경우에는 서류가 완전 다르거든요. 틀려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그 보증인 그거 업, 없으니까. 삼천만원 이상 있어야 국적 취득할 수 있거든요(사별 5).

(영주권)신청만 하려면 삼천만원 있어야 해요. (귀화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재산 이죠(이혼 3).

한국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3000만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시험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한번 떨어지면 또 6000만원 필요해요. 한국 법 계속 바뀌어요. 우리 다문화를 위해서 한국법 많이 바꾸면 우리도 힘들어요(이혼 2).

(귀화 시험이) 한국에서 앞으로 한국 사람처럼 능력이 있는 건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삼년 안에 오년 안에 한국 사람처럼 말도 할 수 없고 한국문화를(알 수도 없고)… 한국 사람으로 바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까다 롭게 보는 게 어렵죠(이혼 3).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 통과 벽이 너무 높아요. 일단은 통합사회프로그램을 해라고 하는데 이 통합사회프로그램은 시험을 쳐라 고 하는데 시험을 치려고 하면 공부를 1단계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됐어요. 그러 면 2단계 또 시험을 칩니다. 또 3단계 또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칩니다. 4단계 했 어요. 합격했어요. 또 5단계 또 공부하고 시험치고. 그럼 여기서 만약 탈락된다 그러면 다시 공부하고 합격 될 때까지 시험치고 이 과정에서 한 단계 공부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럼 이 다문화 한 부모 엄마가 혼자서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진 일을 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아이 키우고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단계공부를 5단계까지 통과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 뭔가 하면 저축이 3천만 원 있니, 뭐가 있니,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이 됐니 이런 것들을 다 따져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니, 그 전에는 네가 한국인 자녀를 키울 한국어 능력이 있니, 그 다음엔 경제력이 되니 이런 거죠...이걸 담당하시는 분은 모두 남자 분이세요. 여자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도 이주 여성이 아이까지 혼자 키워야 되는 얼마나이게 힘든 일이고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입는 지를 그 분은 남자니까 공감을 못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전문가 4).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체류 가능) 국적을 미취득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체류가 인정되는 상황이다.

(Q: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체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 연장 안 해줘(사별 4).

(미귀화 가족, 지원의 사각지대) 귀화하지 못한 상태의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경우가 기초생활수급, 임대주택 제공 등에서 배제되는 지원의 사각지대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지원 전문가는 한부모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급해주고 그를 토대로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가 센터에도 있었고... 사실 보면 사각지대가 있더라구요. 귀화하신 분은 차라리 나은데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가 되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래 한 부모가 차별적인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국적이시기 때문에 수급권 지정에서도 배제된다든지 임대주택 선정신청할 때도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세대주가 안 되니까(전문가 1).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이 이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그 누구도 다 방치하는 한 부모 쪽에서도 방치되어 있고 다문화에서도 방치되어 있는 집단이 다문화 한 부모이고, 이 나라에 어떤 규제와 법령의 사각지대.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보면 단체에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이 120가정 정도 됩니다(전문가 4).

국적 없는 한 부모 증명서 달라 이거예요. 국적이 없어도 한국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게 현실인데 현실을 봐야지 국적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국적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안 됐을 뿐이고, 지금 우리 회원 중에 지금 7년 째 국적을 신청하는 데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경제력이 딸려서(전문가 4).

## 3. 주거 및 공간 문제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 중 하나이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 해 임시 지원 방안으로 쉼터가 제공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에 입소 우선순 위를 부여하지만 국적문제 등으로 이러한 정책에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국적 미취득 상황에서의 주거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 공간 마련이 가장 중요한 문제)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안정적 주거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면담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공간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살려면 한 부모든 양부모든 다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주거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살기위해서 첫째 조건이 주거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도 국적이 없는 한 부모는 엄마가 국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국적이 없는 한 부모 다 안 줘야죠. 그런데 어떤 국적이 없는 한 부모는 안 돼요. 다 칼자루 쥔 사람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라는 것처럼 저는 이게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안되면 다 안 되든가 되면 한 부모 증명서만 내면 다 준다든가(전문가 4).

현재 제일 어려운 부분은 집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있으니까 그나마 저는 위로가 되지만, 오늘도 여기 참석 못한 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이혼 8).

남편하고 갑자기 이별을 해서 헤어지고 집도 구할 데 없으니까. 집세도 엄청 뛰어오르고 한 달에 오십 짜리 들어가서 사는 형편도 되었는데, 월세도 지금 부담하는데 혼자 벌어서 애 둘 키우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돈보다도 주거가 안정이 돼야, 마음이 편해야 어디 나가도 일을하니까... 집이 제일 문제에요(이혼 8).

(국적 있어야 임대주택 신청)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임대아파트의 신청이 가능하여 국적 미취득 다문화 어머니들에게는 주거 공간 마련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주거. 주거도 우리는, 저는 그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한국 국적이 없

으면 신청 자체가 못돼요(사별 6).

(기초생활 수급은) 세대주가 그 미성년자라도 세대주가 한국 국적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되잖아요. 한국 국적이 없으면, 그거 때문에 좀 어려운 거 있다고 들었 거든요. 그래서 미성년, 아 그 주거 문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못한다는(사별 7).

네, (아이들은) 한국 국적인데, 아, 엄마가 외국 국적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신청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한국국적이 있는 자녀, 근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안돼) 신청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면 되냐? 라고 들었거든요? (사별 7).

그거 우리 신청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공공임대. 하지만 언제 신청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신청했어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국적 있는 사람 먼저 해요. 그래서 국적 없는 사람은 신청해도 어려워요(이혼 2).

만약에 수급자 같은 경우는,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싼 게 있어요. 저도 매입임대거든요, 법원에서 저를 해준 거라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1순위로 되요, 근데 만약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한부모로 되는 거예요. 수급자 혜택이 한부모랑 차이가 있어요. 수급자가 더 많죠. 수급자는 돈이 조금 생긴다든가, 예를 들어보험 같은 거도 들었잖아요, 만약에 저랑 애 아파서 병원 입원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바로 탈락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혼9를 가리키며) 기실 이 집같은 경우에는 애 4명이면 1순위에요. 근데 안 되는 거 보면 이게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탈락을 많이 해요. 저도 지금 수급자에요. 몇 년 뒤에 탈락되겠지만, 탈락되면 제가 월세를 다 내야 해요(이혼 8).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의 불안) 아이를 기른 상황이라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 필요하나 현 상황을 그렇지 못함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었다. 임시 거주지에 대한 불안과 불편함도 있다.

서울에서 지금 월세는 비싸요. 1층에서 살아요. 반지하방은 아기는 안돼요. … 화장실은 사람들 많이 같이 써요. 공동화장실. (이혼 7).

지금 있는 곳은 다문화센터도 아니고 한부모센터도 아니고. 드림하우스… 쉼터는 2년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년 살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이혼 3).

(센터에 살면서) 어려운 점이 있죠… 한 집에 두 가족 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요(이혼 3).

만약에 제가 바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제가 국적이 있어야 되고, (주택)청약 적금통장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상태로는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 적이 필요해. 국적 필요하면 돈이 필요해. 그런데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어려운 점이에요(이혼 3).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여도 외국인이 세대주가 될 수 없어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

제가 외국인이라 주민등본은 큰 딸이 세대주로 되어있어요. 저는 맨 밑에, 안보이니까 어머님은 어디 있냐고 맨날…그러니까 임대계약이 제 이름으로는 안 되거든요. (Q: 따님은 미성년자일텐데?). 네 미성년자인데도 등본은 그렇게…외국인이 세대주가 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게…(이혼 9).

(한부모 증명이 필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 증명이 있어 야 모자원에 입소 가능하다.

한 부모 증명서가 있어야 모자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도 저축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아이는 키우고 있고, 아이가 어려서 그 때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정말 복합적인 문제에서 이게 지금 한 부모 증명서만 있다면 모자원에 가 있으면 시설에서 한 달에 60만원 씩 돈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아이랑 살면서 일단은 아르바이트 같은 거조금 조금씩 할 수 있거든요(전문가 4).

# 4. 경제적 문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들은 대부분 이혼 사별 이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직장을 갖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기초생활비 수급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다. 이 지원 또한 국적과 연계되어 있어 국적 미취득의 경우 제외된다. 이혼의 경우라도 양육비 추심이 어렵고 이혼 과정에서 이를 포기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사교육 이용 기회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도) 다문화 한부모 중에는 어머니가 직장도 가지고 일하면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수급자는 아니구요, 그냥 제가 직장 다녀요. 직장 다니면서 그 월급으로 아이를 키워요. 저는 월급 받으면서 아이 키우는 게, 뭐 넉넉하지 않지마는 부족하지도 않아요(사별 5).

(국적 미취득은 경제문제로 연결) 국적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는 기초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더 심각하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도 소 득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어 일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저기 우리, 수급, 수급자, 이것만 나와요. 국적 없어서 아이 것만 나와요. 이거 어려워요 저(웃음)(이혼 4).

알, 알바, 알바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있어요. 네 알바하면 수급자 떨어지고…수급자는 백이십만 넘으면 수급자 탈락(이혼 4).

(경제력 부족으로 자녀에게 미안) 성장하는 자녀의 양육에 비용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 아픔을 토로하였다.

이렇게도 있어요. 왜냐면 돈도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 애기 먹을 것도 옷도 사줘 (야 하는데)... 나야 안 해도 되지만 애기는 학교 가니까…네, 과일 먹고 싶으면 이거 안 사고. 먹으면 우리 아들이 고기 먹으면 과일 먹지마? 이렇게 (이혼 4).

(기초생활비 지급이 유일한 생계지원) 다문화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경우 건 강상의 문제, 자녀양육지원의 문제로 직장을 지속적으로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기 쉽고, 복지관 등 시간제 일자리에서도 지속하기 어려웠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생활비 지급이 유일한 생계지원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수급자에서는 제외되고 자녀만 기초생활 수급이 가능하다.

어 저는 애기 어렸을 때부터는 계속 직장 생활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애기학교 조금 힘들다고 해서 제가 일을 그만 뒀어요. 근데 그 작년부터는 저기 동사무소 상황 얘기해보고 그래서 생계비(기초생활수급)는 나눠줬어요(사별 7).

계약 끝나서 저기(복지관)에서 우리 뭐야 80만 받아서 일할 때. 아파 때 안 나가면 안주고,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몸이 안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저기 재봉 배우고 있어요(이혼 4).

기초수급권자 지정은 가족단위 개인으로 하는데 모두가 3인이 다 한국 국적이면 3인에 해당하는 걸로 받는 거예요. 외국 국적이시면 그 분 자체는 국민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청을 할 자격도 안돼요. 그냥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대상으로 그거를 신청을 해서 엄마가 보호자시니까 한정된 금액을 받는 거지 본인 자체는 지원이 안돼요(전문가 1).

그건 담당 직원이 이야기하는데 수급권자가 국민대상이기 때문에 이 외국 국적 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전문가 1).

(자녀 교육비 부담이 막중) 어린이집, 고등학교, 대학등록금 등 보육이나 교육을 위한 비용 등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비용 빼고는 지금 어린이 집에도 한 달에 한 10만원이 넘어서 돈 내야 해요. 현장 학습비, 학습지 이런 것도 다 내야 돼서 힘들고. (이혼 5)

우리는 지금도 수급자들이잖아요. 수급자는 아이들 열여덟 살에 그때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한부모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면 어려워요. 고등학교 가면… 우리 아무것도 받을 수 없잖아요. 나중에 아이들 크면 그 고등학교 보낼 수 없으면 마음이 아파요(이혼 2).

수급가정이 되어서 수급비가 나오긴 하는데, 아이 4명하고 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작년도 큰애가 대학교에 붙긴 했어요. 몇 군데 네 군데인가. 근데 등록금도 마련해주지도 못하고(이혼 9).

지금도 우리 아기는 아직 학교도 안다니는데, 다니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알아봤더니 한 달에 몇 십…어휴 그걸 어떻게…혹시 한부모인데 할인 되냐고 물어봤더니 수급자는 되는데 한부모는 안 된다고…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수급자는 뭐든지 할인이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다 되잖아요. 한부모는 할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이혼 3).

(사교육 이용 요구)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한 사교육 이용에

#### 의 요구도 높았다.

태권도비, 방과후 수업비, 월세비 너무 비싸요(이혼 6).

중학교 같으면 정말 앞 다투어서 가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럼 학원도 2개는 아니어도 1개는 보내야 하는데. 애가 두 명씩 세 명씩 된다는 식구는, 2개 3개만 해도 학원이 100만원은 되가지고. 요즘은 학원이 너무 비싸가지고(이혼 8).

취직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집도 월세도 계속 나가고 했더니 애기 학원 보낼 돈도 엄청나요(사별 1).

(남편의 양육비 지원 못 받아) 이혼의 경우 자녀양육 비용에 대해 남편이 양 육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는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었다.

(양육비) 지금 아무것도 안 받아요. 남편 돈 없으면...남편 안 주고 싶으면 우린 방법 없어요. … 남편은 회사 안다녀요. 자기 통장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남편은 우리한테 돈 주고 싶으면 줘요. 우리한테 안주고 싶으면 안줘요. 다 남편 마음이 에요. 진짜 우리 어려워요. (통장) 안에 있는 돈이 500만 원 이상이면 뺄 수 있 어요. 500원만 이상이 아니면 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외국 사 람들 되게 어려워요(이혼 2).

(자녀양육 위해 시간제 일자리 선택) 자녀 양육 시기에는 어머니가 시간제 일 자리를 선택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10살 11살인데, 제가 식당가서 늦게까지 일하면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돈에 너무 얽매이면 애들을 망치니까, 그냥 내가 돈을 100만원을 벌어도 애들을 챙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침 9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100만원 안돼요(이혼 8).

성장한 자녀들의 용돈 요구 등에 대해 불편한 마음도 있었다.

애들이 경제적인… 돈을 요구하거든요. 애들한테도 장학금 조금씩 나오긴 한데, 그건 자기가 챙겨 쓰고 그거 말고 저한테 따로 용돈을 요구하거든요. 알바까지 하는 애들이(이혼 9).

## 5. 자녀 양육 과정의 어려움

자녀 양육 과정에서 양육의 어려움, 양육자로서 강점으로 여겨지는 양육 역 량감, 그와 반대로 양육자로서 부족하게 여겨지는 부분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 한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가. 양육 어려움

자녀양육과정에서 문제는 무엇보다 어머니 혼자 양육하는 어려움으로 요약된다. 자녀와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여야하며, 일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얻기 힘든 상황이며, 친인척이 가까이 없어서 양육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갑자기 맡길 곳이 없고, 자녀들은 어머니 양육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재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녀를 데리고 일하기 힘든 경우에는 자녀를 취학 전 일정시기 동안모국에 보내어 양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듯 자녀가 중도입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적응이 수월하지 않은 문제를 지닌다. 또 모국에서 자녀양육에 도움 받기위해 친정어머니를 초대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와 함께 있지만 어머니스스로는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녀의 기관이용이나 학교생활 시 따돌림을 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까 염려하며 자녀의 또래 관계, 학업 등에관심이 높다.

(긴급 양육 지원의 부재)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또는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였다.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프기도 어렵다는 호소이다.

어 근데 어느 날 12시 밤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여: 어휴) 어 쓰러졌는데, 이, 을, 119 불러서 응급실에 갔는데 제가, 정신 없는 거에요. 아이가 옆에 있는데 도, 근데 아이 없는 줄 알고 막 아이를 찾는 거예요. 아이가 맡기.. 맡길 수 없는 게 누군가를 맡길 수 없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해요(사별 5).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질 수가 없어요. 쓰러지면 이런 상황 되면 애기가 누가 봐주는 지, 그래서 쓰러질 수도 없어요(사별 6).

(자녀와의 시간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양육을 혼자 감당하면서 가시일과 직장 일을 병행하게 됨으로써 시간이 부족함을 토로하였다.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다(사별 6).

저는 시간이 없어서...남편이 있으면 좀 같이 놀을 수 있고, (자녀가)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남편 있을 때. 같이 살아 있을 때는 저녁에는 그 식사하고 근데 식사 후에는 애기랑 남편이 같이 놀고 있는 동안 저는 설거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일을 할 수 있는 데 지금은, (한숨) 그렇지 않아요(사별 6).

직장 다니고 (여: 네) 어…주말에만 아이랑 놀 수 있는 엄마입니다(사별 5).

직장 제일 어려워요.…회사 다니면서 애기 진짜 못 키워요(이혼 2).

저도 혼자 애기 키울 때 직장 다니고 24시간 일해서 우리 딸이 혼자서 일어나고, 혼자서 학교가고 그랬죠. 저도 하루만 일하고 하루는 안하고 지금도 그렇게하는데 그 때 우리 딸이 무서워서 혼자 못 잔다 해가지고 은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어린이집에서 보조 선생님으로 일했다가 다른 회사를 다녔는데 우리 딸이다시 어린이집에서 일해 공항가지 말고...(사별 1).

(부모로 권위 존중 어려워)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도 한부모의 상황은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자녀에게 어머니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했다.

예는 나이 좀 더하니까 말 좀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마음이 좀 힘들어요. 이 아이 앞으로, 지금 아직 어린앤데 이렇게 말 안 듣고 뭐 엄마 말하면 다 [반]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크면 좀 더 심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거 좀 불안을 갖고 있어요. 좀 내가 잘 키울 수 있나 그런 거 좀 고민이 있는 거예요(사별 7).

아빠가 엄마에게 욕하는 걸 많이 보고 들어서 자랐기 때문에. 이혼 초기에는 애들이 괴로운 심한 말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니가 애미야'이런 소리도 하고. …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되었더라구요(이혼 9). (아버지 부재감) 아버지 부재에 대해 초등학생 저학년 어린 자녀가 힘들어 할 때 도와줄 방법이 없음이 마음 아프다고 했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따른 친구들이 어디 가면 아빠 옆에 있고 학교 갈 때 아빠 차, 자주 데려다 주고 이럴 때에는 되게, 뭔가 마음이 아픈 거 같아요. 집 에 와서 막 자꾸 아빠가 같이 다니면 좋겠다고 뭐 아빠가 학교 데려다 주면 좋 겠다고...(사별 5)

저는 저기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 있으면 좋겠다고. 네, 지금도 아빠 언제 오시냐고(사별 7)

어떨 때는 '그냥 러시아 가서 살자'하면 애기는 '엄마 왜? 대한민국 왜 안 좋아?'하면서 안가겠다고.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여기서 키워야하는데, 힘이 있어야지 내가 애기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옆에 남편이 있으면 다른 거죠. 힘이 있고 내가 자신이 있어. 그런데 옆에 남편 없으니까. 이 시설에서도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두려움이 되게… 막 흐려요, 어떻게 살아야하는 건지. 당당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이혼 3).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아빠가 돌아가시다 보니까...그리고 부모라고 하지만 엄마로써 할 일이 있고, 아빠로써 할 일이 애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게 있 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 애를 잘 키울 수 있고, 정서적 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사별 2).

(자녀양육을 위해 친정식구를 초대하기도 함) 어머니가 일하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모국에서 친정식구를 초대하기도 하나 기초생활 수급은 지원되지 못해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사실적으로 보면 가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경제도 책임져야하고 양육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혼자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부모님까지 하면 3,4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또 어머니는 외국분이시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소득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 주는 지원이나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야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어요(전문가 2).

(양육 위해 자녀모국으로, 중도입국의 문제) 혼자서 양육이 어려워 모국 친정에 보내서 자녀의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에는 입국 이후 적응과정에서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론 중도입국 자녀의 어려움이 문제 상황으로 드러나기 도 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우리도 세미나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게 결국 다시 중도입국 자녀로 돌아오잖아요. 그 뒤에도 적응의 문제가 더 어렵죠. 엄마와 떨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관계가 서먹해 지는 부분들, 언어 문제에서도 나중에 적응하기 더 힘들고. 저런 사례...결국은 심리 상담 쪽으로 연계를 해야 하는데(전문가 3).

다문화 자녀의 40%정도가 외국에 거주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자라다가 중간에 들어왔다는 통계가 있어요. 꽤 많죠. 그런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요청이 들어오는 게 아이의 우울에서 상담 요청 하시는 분도 있고, 대기시간을 못 기다리고 포기하는 엄마들도 많으세요(전문가 3).

저 주호 1년 보냈어요, 태국에. (Q: 친청어머님께요?) 예, 1년 도와줬어요. (Q: 몇 살 때인가요?) 두 살 때요. …(Q: 다녀오시기 잘하신 거 같아요?) 네 태국어가…지금 태국어는 알아들어요. 말은 못해요. (Q: 아이가 모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적응을 잘 하였나요?) 네 괜찮았어요(이혼 6).

애들이 베트남에서는 한국 국적 때문에 학교 못 다니고 비자 연장하고 돈을 내고 조금 힘들었어요.…데려와서 친정엄마 모시고 애들 돌봐 주고 저는 회사 다녀요(사별 3).

(외로움과 사회적 편견) 혼자인 어머니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이 어렵다고도 하였다. 또한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런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면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감도 어려웠음을 토로하였다.

좀 외로워요. 애랑 둘이만 있으니까 가족 옆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애기 양육부터 해야 되고 내가 또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그런 거 또 애 맡길 데 없고, 또만일에 지금 건강은 모르지만 좀 약간 아플 때는 너무 걱정돼요(사별 7).

혼자, 옆에 누구 친척도 없고 하니까 되게 두려움이 많아졌어요. 자신이 없어지고(이혼 3).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지금. 밤에 못자요. 그래서 그 약 먹고 있어요(이혼 2).

저는 뭐 무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아니 뭐어쨌든 내가 한, 외국인인데 무시당하든 말든 난, 그 사람 나를 무시당하는 게 그 사람 더 나쁜 거지 왜냐면 내가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말, 한국어나 당연

히 모르잖아요. 나를 무시당하면 나보다 더 나쁘지(사별 5).

제가 지난달에 회사에서 잘렸잖아요. 애기가 아파서. 제가 높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했더니, 얼굴 표정도 안 좋아요. 보통 왜 잘렸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안 물어봤어. '나라에서 돈 받고 바로 일 끝내는 거예요?' 했어. 그렇게 말이 나와서 나 많이 울었어요. … 무시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아서 어려워(이혼 2).

(자녀의 또래 적응) 자녀의 또래와의 적응, 학교에서의 적응에 대해 우려가 있고 이것이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애기 키우는 거 좀 제가 애 잘 키우고 싶긴 한데, [나중에] 더 잘 키우고 싶다고 하지만, 애기는 따른 애기들 어울리기 좀, 좀(어려워요), 약간 따른 애기 비하면 약간 좀 느리거든요 우리 애가. 그래서 좀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잘 어울리고 그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웃음) 지금은 불안하고 있어요. 좀 불안해요(사별 7).

(자녀의 기관 이용 중 어려움) 어린이집 신청이 어렵고, 선생님과 소통이 제한적이고, 자녀의 친구 어머니와의 교류 어려움 등을 이야기 하였다.

어린이집 신청은 너무 어려워요. 인터넷...그 어려워요 다들 몰라요. 공인인증서무슨 서류 많아요(이혼 7).

어린이집 갔을 때 선생님과 우리가 대화하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말을 못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이가 어디가 안 좋든지 아프든지 전화하면 우리 다들 몰라요.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과 우리 엄마들 소통 못하잖아요.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혼 2).

애들은 괜찮은데 다른 엄마하고 잘 어울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이혼 5).

(학습 지원의 어려움) 자녀에게 학습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지 못함이 어렵다고 하였다.

(자녀) 교육 제일 어려워요. 수학 국어 도와주는 거 못 하잖아요. 영어도 못하잖아요. 우리 자기나라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여기 한국어 나오는 거…. (이혼 2)

(자녀에의 차별적 시선에 대한 염려) 자녀가 다문화 배경을 지녔다고 또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놀림이나 차별 받을 까봐 전전 궁궁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 한부모다, 엄마만 있다, 아빠가 없다고. 애기가 6살인데 아직 얘기 안했어요. 애기가 내년에 학교가면 아마 무시, 차별 같은 거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이혼 3).

차별 때문에 무시 때문에 아직도 밖에 나가서 회사 가서 한부모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한국문화가 그렇잖아요. 한부모를 되게 불쌍하게 보는 게 아직 있어요.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쉽게 내가 혼자 애기를 키우고 있다 남편이 없다말을 못하더라고요(이혼 3).

#### 나. 자녀양육 시 강점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들에게 양육자로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무엇보다 다문화 배경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자녀의 또래 관계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어머니가 먼저 주도적으로 직장에서 동료나, 자녀의 학교에서 어머니들과 사귀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강점이라고도 하였다. 또 자녀와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모델 되어주는 것) 자녀에게 어머니가 좋은 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강점이라고 하였다. 또 엄마로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모습에 대해 스스로 강점으로 파악하고 있기도 하였다.

친구 많은 게. 네. 저는. 자랑하는 거 아니고 발이 좀 넓거든요(사별 5).

제가 친구 많아서, 근데 집에 와서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엄마 엄마가 왜 이렇게 친구 많은 거야? 엄마가 친구가 많은 게 좋더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너도 엄마처럼 친구 많이 사귀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엄마 하는 행동을 보고 밖에 나가면은 ...얘가 제가 말하는 대로 가서 뭐 좀 얘기도 하고 같이 노는 거보니까 좀 아 엄마가 뭔가 좋은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얘도 엄마 하는 거 보고따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사별 5).

저는 자신은 없지만, 어 엄만, 열심히 키우고 있다(사별 7).

(가능한 한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 주말에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함을 강점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외식도 하고 아는 친구 집에도 놀러 가고 이렇게 놀고… 바람 쐬러(사별 5).

자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저는 뭐 주말마다 에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또 친구 만나고(사별 7).

저는 가장 잘하는 거 맛있는 거 해주는 거. 저는 애들이 그래요 엄마는 맛있는 거 잘 해준다고. (Q: 뭘 해주시나요?) 저는 맛탕 같은 거(이혼 6).

다문화에서 체험 같은 것도 있고, 어디 놀러가는 것도 있고. 내가 시간이 맞고 부지런하면 찾아서 갈 수 있어요(이혼 8).

#### 다. 자녀양육 시 부족한 점

양육자로 자녀에게 미안하고 부족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부분과 어머니 이외에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경제적 빈곤) 어머니로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체감은 경제적 어려움과 시간 사용의 제약이라고 답하였다.

저도. 저도 경제적으로. 아이가 그거 사달라고 해도. 으음 안돼 라고. 우리가 돈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이혼 4).

(확대 가족의 부재) 한부모 가족으로 어머니 스스로의 외로움과 더불어 자녀에게 다른 가족(확대가족)을 경험하기 못하게 함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었다. 이혼이나 사별 이후 아버지의 원가족과도 멀어져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경제적 도움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저는 식구. 다른 친척이나 식구들이 없는 거. 얘는 항상 심심하다고. 왜 누군가 를 뭐 이모, 할머니 뭐 삼촌 와서 같이 살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주(사별 7).

애기도. 아빠 얼굴도 모르고, 또 할머니하고 또 가족 몰라요(이혼 4).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있었을 때는 약, 어 연락 했었어요. 근데 남편 가고 난 다음에 아예 끊겼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예 연락 안하고. 전혀. 도움 안주고 (사별 7).

#### 라. 대응 방안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들은 스스로 인지하는 양육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조집단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양육도 지원하며, 자녀의 또래 친구어머니들과 유대를 형성하여 양육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한국인과 유대 강화) 자녀의 또래 친구 엄마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자조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고향방문이나 급한 상황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지인들을 통해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도움으로 인식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저도 뭐 한국 엄마들이 많이 생각했어요. 그 아프기 전에는 되게 없었거든요. 근데 아프고 나서 사귀고, 그 얼마 전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고향 며칠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데리고 갈 수 없어서 그냥 그 친구한테 며칠 동안 맡겼어요(사별 5).

우리 회사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사람 같이 다니는 게 되게 도움도 많이 받고 저한테도 사랑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사별 5).

(자조모임 참여) 한부모 가족 중 다문화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모아 자조적 모임을 구성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접하게 된 경로는 구청과 건 강가정지원센터의 한부모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내 받구,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 훨씬 많은 거 찾아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별 6).

저는 (자조모임을) 구청에서…(여: 구청에서 소개해 줬어요?)구청에서 소개해 주 셨어요(사별 5). 저는 먼저 여기 들어가고 있어서, 근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 부모 캠프가 있 었거든요. 저도 그 서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났거든요(사별 6).

한 부모 캠프. 캠프가 있어서 거기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야기 들었더니 한 부모, 다문화 한 부모라고 들었으니까 우리 단체로 그거 소개했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 시 한부모가족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했거든요. 거기서 만났거든요(사별 7).

## 6. 지원 이용 및 개선 요구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어머니들은 이용 가능한 지원책들을 활용하고자 노력하며 또한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자녀를 위해서는 방문교사제도와 학교 급식제도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다문화 한부모 들의 제도 활용의 편차가 큼을 고려할 때, 상황에 적절한 정보의 접근,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 스스로 정보와 지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지원제도가 많아 한부모가 자녀를 기르기에 모국보다 낫 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가. 다문화 지원 관련

(자녀는 한국인) 저출산 지원을 논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외국에 보낸 다는 것은 모순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엄연히 한국의 국민이라는 것이다.

저 출산 문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못 키워서 보내게 하는 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사실 대게 많이 들었거든요. 다문화는 지금 이 사회에서 방치되어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돼요(전문가 3).

이 아이들은 그냥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자라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베트남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몽골에 가서, 키르기스탄에 가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거 든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정이 해체가 되든 해체가 되지 않든 아이들이 장기적 으로 외국에 가 있는 거를 나라에서 금해 줬으면 좋겠어요(전문가 4). 이 아이들이 한국 국민으로 자라야 되는데 결국은 엄마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이 아이는 베트남가서 베트남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가 막히죠 (전문가 4).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족이어서 받는 지원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과 의료지 워 등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한국어 교육 또 그거 의료…뭐야 그 진료 그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었 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사별 7).

어린이집 다니기 전에 집에 있을 때 다문화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책 읽어주고 그런 거 있었어요… (사별 4).

지금은 초등학교 갔을 때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멘토링이라고 있어요. 대학생 그 분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공부를 가르치고 애들이 학원을 못 가니까 학원 갔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 끊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도 한 시간씩 대학생들 와서 재밌게 하니까 그냥 교육은 그거 밖에 안하고 있어요(사별 4).

그리고 복지관에서 또 저희 둘째가 딸이 미술 쪽 예체능 쪽으로 애들 후원해 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후원해 줘서 1년 동안 미술학원 다니고 있어요. (Q: 1년간무상으로?) 네, 무상으로. (Q: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애들 어렸을 때 다문화센터 다녔어요. 그 때는 부모교육해서 양성과정, 다문화그런 교육이 있어서 찾아봤어요(사별 4).

## 나. 한부모 지원 관련

(취약계층 저소득 지원) 한부모라서 받은 혜택은 없다고 하였고 저소득층이어서 받은 혜택으로 기초생활 보장과 드림스타트 등을 들었다. 자립지원을 위한특별 통장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한 부모기 때매 준 건 없죠. 저소득층 그런 거 받고 있거든요. 한 부모이라면 그거 저소득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사별 5).

저희 기초수급자나 한부모들은 희망플러스통장이나 꿈나무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3년이면 3년 5 년이면 5년 한 달에 내가 부을 수 있는 만큼 부으면, 2배로 돈을 불려서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받는 대신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요. 우리가 수급자에서 탈락이 안 되면 그 돈을 받을 수 없어요(이혼 8).

#### 다. 도움 되는 정책

(학습지원제도) 현재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의 방문 교사 프로그램에 대해 어머니가 돌보아주기 어려운 부분인 학교 공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아동센터에서 학교공부지원과 저녁식사까지 제공해 주 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 저는 다문화 센터...방문으로… 우리 집에 와서 그거 이용하고, 그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오시고 한 번에 두 시간. 그래서 ...학교 지도부터... (사별6).

아동센터는 그거, 아동 센터에서도 그런 교육이 있는데, 그리고 게다가 그 저녁 식사까지 (웃음) 너무 좋죠(사별6).

복지관이랑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지금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복지 선생님 있어요. 학교 교장선생님이랑 다른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왜냐면 1학년들어가면 쓰잖아요. 애 어떻게 지내는 지 다 써요. 그래서 저는 1년 마다 상담다 가요(사별 3).

딸이 수학이 너무 떨어지니까, 내가 상담을 좀 덜 받고 딸을 학원 보내주고 싶다고 해서, 복지관에서 우리 딸 학원을 12월 달까지 지원해줘요.…Dream Start는 구로에 있는데 가끔 영화나 뮤지컬 같은 거 보게, 아니면 야외 어디 갈 때면 애들 가겠냐고, 이번에도 다행히 Dream Start에서 추천을 해서 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거든요. 내 가족은 저를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복지관 이런 데서는 노력을 많이(이혼 8).

(상담 제도) 다문화 또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상담 제도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닌 부분을 진단하고 예방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상담 시 언어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저랑 우리 딸을 도와주는 기관은 안산에 있는 ooo아동센터가 있어요. 거기도 놀이치료가 있어요(사별 1).

(상담) 저는 받았어요. 다문화(센터)에서 받았어요(이혼 5).

그 치료(상담)하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은 잘 돼요. (한국말은) 대화 조금 이해 안 되어가지고. 그 치료(상담) 이용해도 이해 잘 안돼요(이혼 2).

복지관에 계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한 선생님이 애를 꾸준히 잡고가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2개월 3개월에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정말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몇 번 그만뒀어요. 어디에서 어떤 선생님이 공 짜로 해 준다면 그만큼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 가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치료는 안 되고 시간 낭비만 한 거예요.…이런 어려운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사별 2).

(급식 제도)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무료 급식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 여기 초등학생 또 중학생 급식 이런데 돈 안내잖아요. 저희 나라는 1학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돈 다 부담해야 돼요 100프로 부모님 다 부담해야 되고 또 급식도 안 되고(사별 7).

셋째가 방과 후에 돌봄교실에 있었고. 그리고 초중고를 봐주는 지역공부방?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다니게 되어서 좀 늦은 시간까지 돌봐주기도 하고, 밥도 제공해주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죠. 공부도 어느 정도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학 같은 것도 연결을 시켜줬는데 아이가 안 다니려고 해서. …일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런 상황입니다(이혼 9).

(입소우선 순위 부여) 다문화 가정이라, 한부모 가정이라 어린이집 입소에 우선순위가 있었다.

(어린이집) 신청할 때 다문화라고 하면 금방 자리가 나더라고요(이혼 3).

(한국은 아이 기르기 좋은 나라) 한국이 아이들 기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모국하고 비교해서 볼 때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어머니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모국보다 한국이 한부모인 자신들이 자녀를 기르기 좋은 곳이라 여겨진다고 답하였다. 한부모를 위한 정책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이 한국

에 마련되어있어 자녀를 기르기에 좋다고 하였다.

100배 좋아(웃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되게 혼란스러워요(사별 5).

저는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는 다문화 제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한국) 다문화 가정에 좀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사별 6).

저도 저희 나라는 애기 혼자 키우는 것도 혜택 이런 거는 전혀 못 받아요. 지원이 안돼서요. 그래서 애기 교육 이런 것도 아니면 생활 이런 거는 여기 훨씬 더많이 좋죠(사별 7).

저는 좋아요. 제가 중국 사람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가 일을 한다고 해도 애들 둘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열심히 벌면 중국 보다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좋아요(이혼 8).

자녀가 한국인이므로 한국에서 자라도록 해주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저는 저 아들 위해서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요 왜냐면 아들 위해서. 나 위하면 내 나라 가고 싶으지. (그런데) 왜냐면 여기에서 혜택도 받으라고. 자기 아들나라니까(이혼 4).

저기 제가 옛날에 이렇게 헤어졌을 때 제가 애가 들리고 갔어요. 갔을 때 애기가 한 한 두 살 한 살, 너무 아파요. 저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죽을 까봐 (한국으로) 다시 왔어(이혼 4).

#### 라. 필요한 지원 정책

(문화 또는 체험 학습 기회 제공) 주말에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 위해 문화 공연 초대장을 제공함 등을 통해 문화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주기 희망하였다.

문화생활 할 수 있는 뭐 티켓 이런거. 좋은 것 같아요. 교통비 되게 많이 들어요 (사별 7).

애들한테 체험 같은 거나 놀이 같은 거나 그런 걸 해주고는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여건이 안 되죠, 경제적으로 안 되잖아요. 어쨌든 움직이면 돈도 들어야 하고, 한번 움직이면 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차비부터 시작해서 밥도 먹여야 하고. 그런 걸 제가 원하는데 애가 원하는 데. 경제적(으로) 안 돼서 데리고 못 가는 데가 있어요(이혼 8).

(교통비 지원)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기 위한 교통비 지원에의 요구가 많았다.

근데 저도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 걱정하는 거는 역시 그 교통비. 교통비 그 거는 지원은 거의 없거든요. 저도 주민센터 가서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닐 수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사별 6).

(법적지위 보장) 미성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외국인 어머니에게도 국적취득의 유예기간을 두어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들은 한국인이지만 엄마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외국여자, 외국인이라도 그 한국 사람처럼 혜택 받을 수 있게 그런 법을 만들면 좋겠어요(사별 7).

(지원 프로그램 관련) 주말 프로그램 기회 확대에의 요구도 있다. 이용하고자 하나 평일에 일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고 주말에는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적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부모교육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다문화센터) 참석하고 싶은데 다 (평일에 있다)(이혼 3).

(Q; 한부모가정 중심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요?) 부모교육 같은 거죠. 혼자서 아기 키우는 게...(Q: 자녀양육 정보 같은 거요?) 네. (이혼 3).

(다문화 배경을 살린 일자리 제공)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대한 요구도 있다.

국적을 좀 쉽게 따고 임대주택을…..그 2가지가 족하다면.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다문화적인 직장을… 제가 작년에 다녔던, 여기 oo구청에서 계약적으로 다닐 수 있게끔 나라에서 직접해주던 걸 제가 7개월 다녔었거든요. 지금 글로벌(사회가) 되었잖아요. 한국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만약에 영어도 하고 필리핀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를 지원 좀 해주셨으면(이혼 3).

저는 회사가 제일 급해요. 처음에 애가 어려워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계속 면접 봤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애 혼자 키운다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출장 어떻게 가 니 뭐 여러 가지가 문제되어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두 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잘 안 돼요. 우리도 주말에도 근무할 수도 없고(이혼 5).

#### 마. 행정 지원

(행정 지원 역량 강화) 주민센터나 행전전달체계에서 도움을 받으려 해도 담당자가 다문화나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또 담당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였다.

행정상의 여러 가지를 밟으려고 했을 때, 그 때 동사무소 직원 분들도 완전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지 혼인신고를 해도 비국적자로 하려고 하고 너무 화가 났거든 요. 은행 금융기관 가고 동사무소 가도 순조롭게 되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하고서류 필요하다 뭐가 안 된다 조회가 안 된다 그런 게 힘들었었고(이혼 9).

상담을 한 2년 동안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애도 복지관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인턴 선생님이 많더라고요. 한 복지관에서 한두 달 정도하고 적응할 만하면 선생님이 또 바뀌고 물어 본 걸 또 물어 보고 또 물어보고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사별 2).

(전담업무 부재) 다문화 한부모를 전담 지원하는 업무는 없는 상황으로 다문화 지원에서 한부모가, 한부모안에서 다문화 정책이 겉돌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서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담당업무가 애매한 거예요. 한 부모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다문화 한부모라고 해서 따로 다문화 한 부모 지원이 거의 없어요. 한부모 가정 지원 안에서 다문화가족이 빠지는 부분을 확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부서의 일이냐는 물음표가 딱 찍히니까 못하는 거죠(전문가 1).

직접 소통이 안 되니까 저희가 가정 폭력부터 시작해서 법률 지원부터 원스톱으로 가는데 그 분들이 저희한테 계속 요청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관할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주민 센터 여기까지 저희가 다 해드려요(전문가 3).

지원 체계가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기도 해요(전문가 3).

(첫 연결점은 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 된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고, 그 이후에 관련정책에의 안내가 이루어짐이 일반적이다.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센터 등을 통해 지원정책을 접하기도 한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보통 주민센터를 많이 가서 한부모

신청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수급신청이나 차상위계층을 신청을 하게 돼서 제일 먼저 주민센터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전문가2).

갑자기 다문화 가정에서 갑자기 한부모가 되면 저희가 편안한 느낌이 있으니까 저희 센터로 오시면 상담을 하고 그러면 제가 주민센터에 같이 가서 서류 뭐 필 요한지. 한국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꾀 있거든요. 가운데서 제가 중간 역할을 하 면서 이거 신청해야 한다고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역할들을 해요(전문가2).

#### 마. 기타

(기업 중심 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혜택을 받아 고국에 자녀 동반하여 다녀온 경우도 있었다.

아 저도 작년에 그 지원 받고, 지원 받고 갔다 왔는데, OO자동차에서 그거 모국 방문하는 그 다문화 가정들한테. 그거 당첨됐거든요(사별 6).

(사회적 지위 차이) 모국에서 대학까지 나왔지만 한국에서 일할 것이 없음에, 학력에 적절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상실감도 보였다.

네 저도 저기 이렇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나라에서 대학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일 시작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공부하고 대학 나왔는데 해서 여기에서 힘들었다, 이래하니까 마음이 안 따라가요(이혼 4)

## 7. 소결

첫째, 다문화 한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지원을 위해서는 한 부분의 개선이 아닌 종합적이고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배경을 지닌 여성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이혼 상황과 사별 후 재산 분배의 과정이 어머니들에게 불리하고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다문화 배경을 지닌 어머니들에게 국적 취득은 지원정책과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나 그 과정이 수월하지 않다. 한국어 교육, 귀화준비 교육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서류 준비나 은행 잔고 확보 등에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이러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이 국적 취득 후 지원 가능하므로 국적의 취득을 돕는 것이 우선 필요한 과정으로 고려된다.

다섯째, 다문화 한부모의 경제적 빈곤은 이혼과정의 불평등, 국적 미취득 등의 결과로 파생되는 문제이다. 기초생활비 지원 같이 생활비용의 지급을 넘어서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문화 한부모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영아와 유아 자녀를 둔 경우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영아를 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영유아시기는 자녀 돌봄의 문제가 학령기 자녀의 경우에는 학업지원에의 문제가 가장어려움으로 나타난다. 또한 다문화 한부모로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이라는 부담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대안으로 자조모임을 구성한다든지 자녀 또래친구 어머니와의 유대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적극적 대처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문화 한부모들의 자조모임과 자녀또래친구 한국인 어머니와의 멘토-멘티 형성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면담에 참여한 다문화 배경의 한부모 어머니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찾고 또 어려움을 표현하는 집단이다.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의 상황에 따라 정책 활용에 편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은 이 미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들 중에 는 도움조차 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양육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자와 정책실무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어려움과 고려되는 대안을 정리하면 다음 〈표 IV -7-1>과 같다.

〈표 IV-7-1〉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과 고려되는 대안

 구분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고려되는 대안
결혼/이혼 사별	어려움 및 개선 요구 이혼과정의 갈등, 가정폭력, 학대 등이 자녀에게 상처	자녀를 위한 상담 및 치유 기회 확대 이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 방안 모색
	이혼 사별 후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 자녀에게 어머니이외 가족 경험이 부족	자조모임 등에서 유대강화로 가족 경험
	이혼과 사별 후 경제적 어려움 가중	자립위한 최소한의 경제활동 기회 제공
국적취득/ 귀화관련	직장 문제로 인해 통합사회프로그램 시험 등 귀화시험 보기 어려움 최종 귀화 심사 단계에서 지지기반(재산) 미흡으로 인하여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육 제공 귀화 선배와 멘토 멘티 형성
	제출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서류 준비를 돕는 과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설치
주거	임대주택 입소 어려움	주거 지원방법 개선(다문화한가족 맞춤형 공공 임대매입주택 - 어바웃빌리지
	미성년 자녀에게 임대주택 신청기회 없음 (국적 미취득인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	임대배업수택 - 어마웃빌디시 유형 확충) 및 변경된 지침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방안 마런(국민임대주택도 미국적 다문화 한부모가정 지원 가능해짐)
경제적 측면	이혼 사별은 경제적 빈곤으로 연결 이혼 후 양육비 추심이 제대로 안됨	양육비이행관리원 연계 경제적 자립 위한 역량강화 및 일자리 마련
	많은 경우 기초생활 수급지원이 소득의 전부(국적이 없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 몫의 기초생활수급 받는 것뿐임)	미국적 다문화 한부모도 기초생활수급신청자격 있음 연소득 4,000만 이하 한 주택 이하 소유자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 시행(신청시만 지급)
	사별 후 재산처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사망보험금 등을 다른 친척이 갖는 경우가 많음	안내 및 상담 기회로의 접근성 강화 마을변호사(3자 전화 통한 다국어지원) 연계 통한 법률지원(법무부)

# (표 IV-7-1 계속)

구분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어려움 및 개선 요구	고려되는 대안			
자녀양육 관련	어머니 혼자 양육 전담하여 갑자기 맡길 곳 없음 자녀가 아버지의 부재감 느낄 때 미안함	아이돌보미서비스, 취약위기가족지원서비스 안내-긴급일시돌봄, 가사활동지원 자조모임이나 자녀또래 친구들			
	자녀 돌봄 위해 모국에 어머니를	부모와의 연계 강화 어머니가 한국에서 자녀 키우며			
	모셔오는 경우 5세 이상 아동이면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음(16년부터 불법임)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강화			
	자녀를 모국에 보내고 일을 하는 경우 나중에 자녀들의 적응이 문제임(다문화 가구 40%는 중도 귀국함)	중고입국자녀를 위한 지원서비스 안내 및 연계-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를 중도입국자녀 경우 2017년부터			
	가정폭력 등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은 경우가 많으나 아동, 청소년 우울 지원 및 진단체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연령기준 없이 제공(2016년에는 만24세 이하) 자녀 상담 및 진단 지원 마련 2016년부터 시행된 학령기 다			
	자녀의 학교적응 우려 및 차별적 시선에 대한 염려	문화가정 아동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 램인 "多재다능" 연계			
지원체계 관련	다문화와 한부모 지원이 이원화 되어 있어 어려움	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체계의 연계가 필요			
	주민센터와 다문화센터 등을 이용해 최초 지원을 요청함	시현세계의 현세기 필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정폭력의 경우는 서울이주민상담센터에 연락하는 경우가 많음	부서가 생기는 방향을 고려해야함 다누리콜센터와 긴급지원 전화서비스가 통합되어서 서비스.			
	다문화 사례관리사 부족으로 지원 상담 기회 부족	다문화 한부모 전문 상담사 배치 결혼이민자멘토링을 다문화 한부모 간의 멘토링으로 활용			
	직장 문제 등으로 주말만 상담 가능	상담시간 배치조정			
	이주여성시설에서 한부모증명서 미발급 경우가 많음(모자원으로 가게 될 경우 지원금이 떨어지기 때문임)	이주여성시설-모자원 등의 업무 연계			

# (표 IV-7-1 계속)

 구분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어려움 및 개선 요구	고려되는 대안
	다문화센터 담당자가 한부모에 대한 법적지식이 없어, 다문화 한부모 가구 지원할 여력이 부족함 지원단체 또는 기관에서 정확한 내용 파악 못함	다문화 한부모지원 제도 안내 및 대응 매뉴얼 구성
	자조모임인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적조직이 많음	자조모임 지원강화
	문화기회 확대 및 교통비 지원에의 요구 높음	교통비 지원 방안
기타	다문화 한부모 가정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미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시 다문화 여부 변인 추가

주. 본 연구의 심층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구성함.

# V.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지원 정책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다문화 한부모 현황, 다문화 한부모 지원 정책 및 개선 필요, 심 충면담으로 도출된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 내용과 지원요구 수렴결과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를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과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지원정책 개선 방향

먼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아동, 어머니, 정책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무엇보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안에서 자라는 아동에 초점을 두고 건강한 국민으로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은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그가 지닌 배경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15)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5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10조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보육이나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각 교육기관의 장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17조 5항에서는 한부모가족 구성원으로 자라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sup>15)</sup> 유엔아동권리협약(제1부 제2조).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https://www.unicef.org/magic/media/documents/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인출일: 2017년 11월 28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개의 법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할 정도로 다문화의 배경을 지니고, 부모의 이혼, 사별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된 이중적인 어려움의 가족상황에서 자녀들은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부모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지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유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 특히 다문화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단체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보육현장에서부터 차별 없는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직 교사는 물론 예비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한부모와 그 자녀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어머니의 역량 강화 에 초점 두어야 한다. 자립한다는 것은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수의 타자에 의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경제학자의 견해16)에 동의하며, 이처럼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들이 다양한 지원이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와야한다. 3장에서 다 문화가족지원정책이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 한부 모 가족의 자립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 여러 부처를 통해 상당 수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 언어의 장벽이나 심리ㆍ사 회적인 위축 등으로 인해 그러한 사회적·정책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 거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안내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길라잡이'라고 서울특별시한부 모가족지원센터에서 발가한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같은 책자를 다국 어로 발간해서 다문화 한부모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다문화 가족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 한국어와 다국어로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다누리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sup>16)</sup> 生きるための経濟學〈選擇の自由〉からの脫却 (NHKブックス) 살아가기 위한 경제학, 선택의 자유로부터 벗어나기, 야스토미 아유무, 2008년, NHK출판사. p.237.

다문화가족 지원 정보에 있어도 막 한부모가 되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한부모에게 적기에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보를 알아도 혼자서 지 원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혹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한부 모생활코디네이터 같은 지원체계를 통해 취약한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발굴하고 그 가족의 특성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센터 공무 원의 경우 언어 문제로 인해 다문화 한부모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의 경우 현재 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국에 기관이 있고 다국어 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사례 관리사가 다문화 한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장 적합할 수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도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역 시 결혼생활 초기의 다문화가족에 집중되다 보니 소수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가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 한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기에는 역 부족인 상황이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부족과 다문화 한부모의 자립역량 및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시키기 위해 결혼이민자들 간의 멘토링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주로 기존에 정착한 결혼이민여성이 초기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멘토링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방식을 도입하여 어느 정도 자립의 경험을 쌓고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다문화 한부모를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로 양성한 후 취약한 다문화 한부모와 1:1로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면 이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사회·정책적 정보 제공에서 멈추지 않고 다문화 한부모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식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를 맺은 다문화 한부모들과 그 자녀들의 사회적 관계망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지원 중인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 현재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준비된 정책의 전달과 활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 전달체계 간 업무 및 역할 분담, 다양한 지원의 정비와 더불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실행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원이나 정책 수혜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한부모가 없도록 이를 발굴하여 지원 전달체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방향	지원방안
다문화 <b>한부모</b> 가족 안에 성장하는 <b>아동</b> 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제공	-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 자녀양육 기간 동안 기초생활 지원 -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다문화 <b>한부모</b> 가족 <b>어머니</b> 역량 강화	- 예방적 접근으로의 상담, 학습기회 확대 - 원스톱 정보제공 및 안내 -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제공 - 사회적 네트워크/자조모임 등 연계 강화
다문화 <b>한부모 지원 제도 및 정책</b> 의 효율성 제고	- 법적 제도적 정비 - <b>지자체</b> , 중심 정책안내 - 전달체계 역할과 업무 분장 명료화 - 다문화 <b>한부모</b> 현황 자료구축

[그림 V-1-1] 다문화 한부모를 위한 지원정책 개선방향 및 방안

# 2. 지원정책 개선 방안

## 가. 성장하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건 그 안에서 자녀는 성장하고, 시간이 지닌 이후 그 과정을 돌이킬 수는 없다. 이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1) 주거 지원 위한 임시 공간 제공과 임대주택 우선순위 부여

갑작스럽게 한부모가 된 상황에서 임시 주거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18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 다문화 한부모는 자신의 가족 유형에 맞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나 입소 가능한 가구 수는 전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지원형에 해당하는 디딤터 경우에는 주거 제공은 물론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을 시설 내 혹은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그 외에 자녀양육 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을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와 같은 시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 한부모 가족들은 임대 주택의 우선 공급을 희망하였다. 현재 지원 중인 정책 중에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은 다문화가족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별 분양 자격을 부여하나 분양가격이 적지 않아 실수요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임대주택 신청 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나 다문화 한부모 가족에게는 가점이 없음을 고려할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은평구에서 2017년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급한 다양한 가족규모의 8세대가 거주할 수 있고 커뮤니티실과 공동 주방 및 옥상을 갖춘 5층의 '다문화 한부모가족 맞춤형 공공주택'인 어바웃빌리지(함께 어울려서, 서로 돌봐주고, 바라보고 소통하는 이웃)를 추천했다. 이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인 '기존주택 매입임대'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어바웃빌리지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부담해소는 물론 한부모 가구 세대간 공동양육을 통한 긴급상황 시의 양육공백 방지, 가족품앗이를 통한 이웃 간 유대감 형성은 물론 다문화 한부모들의 자조모임 및 리더십의 발달도 기대해 볼 수 있어 앞으로 이런 모델의 주거지원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2) 자녀양육 기간 동안 다문화 한부모의 한국 국적 인정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지

<sup>17)</sup> 출처: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2017년 11월 22일 인출.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

난 아동의 양육자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수월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지원 필요는 시급한 상황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거의 공통적으로 다문화 한부모들이 직면한 문제이며, 많은 경우 기초생활비 지원에의 의존이 높다. 그러나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초생계비 수급이 어렵고 자녀에게만 지원된다. 이로 인해 국적 미취득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하다. 성장하는 아동을 지원한다는 맥락에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적 미취득 어머니에게 한시적인 한국인 지위를 부여하여 기초생활수급, 주거지원 등 지원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한부모에게 지원해 주는 안전망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취득을 하면 되는데 국적취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방향이 사실은 국적취득하면 가질 수 있는 주거라든지 그런 생활비 지원이란 말이죠... 국적문제가 그런데 최소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적을 미취득 한 상태라도 한부모로써 주거라든지 생활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는 범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되면 (한부모 어머니가) 공부도 할 수 있고 국적도 취득 할 수 있고 재산도 모을 수 있는데...(전문가 4).

사회통합이라든지 다문화사회 정책에 반영할 때 현재는 국적취득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적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전문가 4).

## 3)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강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나 자녀의 사교육 지원, 학습 지원에의 요구가 높았다. 특히 관련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교육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에는 자신이 자녀의 학습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여겨 역할 부담을 느끼며 그러한 지원 요구가 높았다. 자녀의 학교교육 및 또래 적응에의 염려도 많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학습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생활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1:1로 만 3세~만 12세이하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 및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나 지원내용 및 기회 확대에의 요구가 높았다. 다문화 한부모에게는 익숙지 않은 기관이지만 건강건강가정지원센터 중 일부지정된 기관에서는 취약위기 가족 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배움지도사를 파견해 자녀의 학습 및 정서지원을 제공한다. 다문화 한부모 경우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정책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습지원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농어촌지역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지원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을 실시하고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 데 이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나.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 역량 강화

예상했던 것처럼 통계자료의 검토나 면담 과정에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 모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이혼/별거 가구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을 앞두 고 있는 부부와 아동의 경우 법원과 연계한 전문 기관에 의해 상담 및 교육 서 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다문화 배경을 지닌 어머니 경우 사실 이용하기 쉽지 않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도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 나 이는 입소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혼 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 소하지 않거나 갑작스런 사별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다문화 한부모를 위 한 심리상담이나 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만5세 아동 자녀를 둔 경우에는 관련 정보 접근과 학부모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높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진학하게 되면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성을 인식하여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한부모 어머니는 스스로에 대한 역량감이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 우가 많았으며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5 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에서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스스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드림스타트가 있다. 한부모 가족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자녀의 발달 영역별 서비스 및 양육자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양육자로서의 역량,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자녀 양육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특성에 맞는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각 시군구의 아동통합서비스지원 기관인 드림스타트에 있는 지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이 다문화라는 명칭이 붙은 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느 기관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이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을 고려해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와 부모 대상으로 자아정체성, 사회성 발달, 자기역량 강화, 미래설계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인 "多재다능" 프로그램을 새로이 추진하고 다양한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레인보우스쿨,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수련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특히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성장하면서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더 심각할 수 있는 만큼 "多재다능" 프로그램이 다문화 한부모와 그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머니 스스로 양육자로의 역량을 낮게 인지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 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보완되어야 한다.

## 1) 예방적 차원의 상담 및 학습기회 확대

무엇보다 다문화 배경 어머니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문화 가족에서 한부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가는 노력을 선행하자는 것이다. 사별로 인한 부 분은 예외로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에서 흔히 발생하는 언어적 소통이라든지, 자 녀 양육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더 나아가서는 가정 폭력 까지 등 문제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담이나 한국어 교육 자녀양육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줄여갈 수 있다. 최근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 은 이러한 갈등 요인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많다. 그러나 정보의 부 족, 남편의 반대 같은 가족문제, 지리적 접근성 부족, 언어 의사소통의 문제 등 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해서인지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결혼이 민자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6조에 신설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을 생애주기별(임 신·신생아, 유아기, 아동기)로 제공하며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지도사(방문 가족생활지도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도 지원한다. 가정으로 찾아오는 부모교육서비스는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의 병행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다문화 한부모에게도 반가운 서비스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나 제도를 통해 다문화 배경을 지닌 어머니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공 중인 다 문화 가족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참여 안내를 강화해야한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상담 전문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문화 배경 지닌 인력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선도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다가센터에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어소통이 되면서 상담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한국어로는 상담 전문가예요. 그런데 아니면 내가 베트남에서 오래살았는데 상담 자격증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없어서 누굴 하나 끼고 같이 상담을 해야 하는 거죠(전문가 6).

면담한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런 상담치료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불만이 뭐냐면 그거는 공적인 지원도 받고 다른데 해서 많이 받는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상담사가. 그리고 이 가정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 상담사다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전문가 5).

저희 사회복지 대학원에 일부러 전액장학금을 주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을 일부러 교육을 해요. 대학과 MOU를 체결을 해서 베트남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을찾아가지고 그 분이 사회복지로 석사학위 따고 사회복지 2급 따고 저희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그런 역할을...)(전문가 5).

## 2) 원스톱 정보제공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 제공과 이용가능한 지원제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이혼이든지 사별이든지 한부모가 된 경황없고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움처를 찾을 때 이를 지원제도와 연결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연계 핫라인 구성을 제언한다. 이는 서울시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개념을 다문화 한부모 가족으로 차용하는 방안이다. 즉, 전입신고 시,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push services 형태로 제공하며, 지역 내의 이용가능한 정책의 안내와 자조모임의 결성과 운영을 지원

하는 것이다.

처음에 결혼이민여성이 한부모가 됐든 안됐든 결혼이민여성이 딱 들어와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남편이 한국어 배우러 가는 걸 반대하고 그런걸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혼 당하고 그럼 또 본국으로 가지 못 하겠다 하면불법체류로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 맨 처음에 한 게 사실은 우리가 주민센터에전입신고 할 적에 여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여기 이 구에는 어디어디에 있다,여기가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주자(전문가 1).

그래도 매뉴얼이라든가 전체적인 걸해서 전입신고 때 주던가, 우리가 한 장짜리로 대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맨 처음 전입할 때 안내해서 주고 우리 동네에 어떠어떠한 가족 NGO라든지,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디어디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든가 이런 정보도 주면(전문가 6).

##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마련 및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운용중 이다. 그러나 이 중 한부모 가족을 위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문화가족 사 례관리사가 다문화 가정을 위기, 일반, 통합으로 분류한 후 대상자별 특성에 따 른 맞춤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위기가정에 하부모 가족이 포함되 기는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시행계획에서도 지금까지 배제되어 온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에 지원을 집중해 온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의 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더군다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가 5 일제일 경우에는 연간 25 가구, 4일제일 경우에는 15가구 이상을 신규로 발굴해 야 하는 현재의 업무 체계에서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에 일반가구나 통합가 구보다 훨씬 까다롭고 오래 걸릴 수 있는 다문화 한부모 가구가 사례관리 대상 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사례를 관리할 경 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에게는 일반가구에 비해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센터의 기관 평가지표와 다문화 한부모 가구 지원서비스 정도를 연계하는 제도 마련 등을 통해 다문화 한부모 가구를 위한 지원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높음을 고려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다문화 하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져 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운용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들은 다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어, 한국어가 미숙한 다문화 배경을 지닌 어머니들 에게는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이를 이용함에 한계가 있다. 한부모생활코디네이 터 경우 선배 한부모가 후배 한부모에게 1:1로 정서적지지 및 정책 정보 제공 등의 유용한 지원체계 역할을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전체적인 기 관의 수나 제공하는 프로그램, 인력이나 예산 등에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다문화 한부모의 접근성이나 서비스 대상 다문화 한부모 가구를 발굴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 배경 을 지닌 한부모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적절하게 여겨진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 다문화 한부모 가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다문화가족 사례관 리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며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제도에 대 한 벤치마킹을 통해 다문화 한부모 당사자의 역량을 키워서 자신보다 더 취약 한 상황에 처한 다문화 한부모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별의 경우 보다 이혼의 경우 이혼과정의 갈등과 폭력 등의 다면적인 문제 상황을 자녀들도 동반 경험함에 따라 자녀에게 우울, 부적응 등의 증상이 나타 나기도 한다. 다양한 상담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한부모들의 자 녀 상담은 어머니와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효과적이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실 제적인 필요에 중점을 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마련되 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방문 가족생활지도사의 부모교육서비스나 학령기의 다문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多재다능"의 심리치료와 상담에 부모의 이혼으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녀와 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 4)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관련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한부모 가구, 특히 이혼/별거 가구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렵고,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한부모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가 필요하다. 직장동료, 이웃 주민, 자녀의 학교 학부모 등 한국인과의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할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자녀양육 시기인 만큼 자녀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 또래 친구 부모들과 연계 형성은 자녀의 학교적응과 어머니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국립현대미술관의 <다문화 미술관 소풍> 등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 참 여하는 쌍방향 문화 다양성 이해 프로그램을 보다 확충함으로써 다문화 한부모 와 자녀의 보육이나 교육 기관의 부모들이 함께 문화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연수 시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교육내용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교사가 다문화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지원체계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 5) 자조모임 활성화

비슷한 경험과 어려움 지닌 경우 상호 지원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면 담과정에서 만난 어머니들은 자조모임이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도움에 되었음에 입을 모았다. 특히 다양한 행사나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 뿐 아니라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부분에서 자조모임의 긍정적 기능발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가족과 관계가 소원하고 아버지의 부재 상황에서 확대가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든지, 귀화준비과정에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든지, 갑작스런 돌봄 필요에 양육지원 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글로벌한부모회'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자조모임이 결성 운영 중이나 사적 성격의 단체이다. 이러한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자조모임을 비영리단체로 지정하거나, 법인화 하는 등 법적 단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의 역 량강화를 통해 자조모임을 넘어서는 자립이 필요하다. 자조모임이 이혼이나 사 별 직후 안정과 정착에는 도움이 되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한부모 스 스로의 힘으로 폭넓은 정책 활용을 통한 자립이 필요하다. 자조모임처럼 의존적 이던 부분에서 힘을 얻고 그를 토대로 다양한 도움처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가도록 하는 과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다. 다문화 한부모 지원 제도 운용 효율성 제고

## 1) 법적 제도적 정비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구에서는 어린 나이에 연령이 많은 남편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혼 특성과 함께 충분히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인간 결혼보다 이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하는 과정에서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이혼, 즉, 이혼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할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한부모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법률적 지원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나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이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 한부모의 이혼이나 법률 분쟁과 관련하여 나타났던 중점 사례들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법률적 지원서비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2) 지자체 정책 숙지와 담당 업무분담. 정확한 안내가 필요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개발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도 지자체 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하므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이렇듯 특색 사업의 경우에는 주무 담당부서가 어딘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실행에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한부모 가족지원의 경우는 다문화지원 담당인지, 한부모 지원담당인지 역할 구분과 분담이 어렵다는 행정전문가의 의견도있었다. 면담과정 나타난 것처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주택 및 주거지원을 구마다 다르게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 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담당자부터 정확한 업무분담과 관련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의 시정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다산콜에서 처리되듯이 다문화 한부모지원과 관련한 문의도 다누리콜센터 등에서 다국어를 통해 서비스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 3) 다문화 한부모 지원정책 안내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정책의 내용을 행정 담당자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과 정책의 접점인 주민센터 등에 다문화 정책에 대한 내용 숙지 및 지원 연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매뉴얼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것이 있으나 한국 국적을 가진 한부모를 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 다문화 한부모에게 지원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

는 행정 담당자라도 어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귀화하지 않은 다문화 한부모 에게 지원자격이 있는 지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 하는 데 혼선을 빚기도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한부모 지원정책을 안내하는 책 자를 마련하고 주민센터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의 한 국 사회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지로 이미 '다문화가족정보 매거진', '한국생활가이드북', '다문화가족지원 정보안내 리플렛'을 발간하였고 앞으로 '한국생활가이드북(Rainbow+)'에는 결혼이민자의 실생활을 돕는 주제별 심층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위 한 매뉴얼 역시 발간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 된 정보는 한국어와 다국어(13개 언어)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 '다누리 포털' 을 통해서도 제공되므로 다문화 한부모가 보다 손 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누리 서포터즈'를 통 하여 신규제작 콘텐츠 감수, 번역내용 확인 및 개선에 대한 건의를 받는다고 하 므로 '다누리 서포터즈'에 역량 있는 다문화 한부모를 참여시킴으로써 다문화 한부모를 위한 지원정책 안내 매뉴얼이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제대로 개발 및 번역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정책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엄마들이야기가 당신이 다 찾아가서 주민센터에 해 달라고 해도 거기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다문화 한부모 정책 사례라든가 이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세요 라든가 기본 정책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센터 전체에 배포를 해야겠단 생각이 들어요(전문가 2).

## 4) 지원 정책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통합센터로 운영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높아질 수있다. 그러나 다문화 한부모가 지닌 국적 미취득, 언어제약 등의 취약부분으로인해 통합된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로의 접근과 이용에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서 소수의 주변지대, 사각지대로 남는 다문화배경의 한부모를 위해 보다 섬세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간에 칸막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 내느

냐의 문제가 있고...(전문가 5).

현재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의 복합적인 욕구를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다문화 한부모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문화 한부모들의 심층면담은 물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나왔다. 이렇듯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전문성을 지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정비함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통합된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상황도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반가정과 다 문화가정이 서비스 지원대상으로 통합됨으로써 다양한 가구 유형 중에 가장 취 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 더군 다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존 전문인력 중에 다문화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다문화 사례관리사는 통합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유형의 가구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다문화 한부모에게 적절한 사례 관리를 제공하기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문화 한부모의 자립역량 증진과 자녀양육 증진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담당할 추가 인력의 배치 또한 필요하 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현재 추진 중인 일이 많아 새로운 사업 전 개에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미 있는 기존 결혼이민자와 초기 결혼이민자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 형식에 선배 다문화 한부모와 후배 다문화 한부모로 이루어진 멘토링 서비스를 접목하 는 것은 어떨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자립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갖 추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다문화 한부모를 선발하여 필요한 교육 과정을 거친 뒤 다문화 한부모 코디네이터(가칭)로서 취약한 다문화 한부모에게 일정 기간 1:1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결혼이민자의 사회 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연계 하여 진행한다면 다문화 한부모는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다문화 한부모에게 심 리ㆍ사회적 지지와 사회ㆍ정책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이는 다문화 한부모 코디네이터로서 다문화가족지워센터에서 일할 수 있 는 기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추후 다문화 한부모 가족들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 한부모를 위한 다문화 사례관리사로서 역할을 확장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 사례관리사는 지금과 같이 다문화 한부모 코디네이터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면서 멘티로 참여한 다문화 한부모 가구 중에 사례관리 대상으로 중점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발굴하여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다문화 가족 중 다문화한부모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음을 고려하여 몇 군데 센터를 중심으로 앞에서 제시한 다문화 한부모 중심 특화지원을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해 보고 그 결과를 살펴 확산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의경우 다문화 한부모 코디네이터에 대한 보수는 이미 멘토의 보수로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면 되므로 추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고 여기에 기관을 평가하는 성과지표에 시범사업 실시여부를 반영한다면 참여하는 센터가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아까 모든 다가가 하는 건 어려우니까 OO시 몇 개 특화된 거기만이라도 전문상담이나 서비스 이런 것도 다문화배경 한부모 양육지원 이런 거 코디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몇 개 시범사업만이라도 하면...(전문가 6).

## 5) 지원정책에 접근 못하는 다문화 한부모 사각지대 해소 필요

주민센터로, 가족지원센터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자조모임 등에 나아와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이미 지원 정책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가족 문제로 또는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개인 성향의 차이로 그조차 하지 못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많고 그 상황은 훨씬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숨은 정책수요자와의 접점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하는 때를 활용할 수 있다. 전입신고 시 다문화 지원관련 정책을 push service의 형태로 제공받는 데에 동의를 얻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 6)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현황 파악

본 연구 과정에서도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통계자료나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는 다문화 배경여부가 변인으로 들어있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는 자료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다문화가구실태조사에는 혼인상 태를 통해 한부모 현황에 대한 부분적 파악이 가능하나 자녀양육 중인 다문화 한부모 비중이 높지 않고 조사내용에 자녀관련 요인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 자녀양육과정에서 경험되는 어려움이 가장 취약한 부분 임을 고려할 때 향후 전국다문화가구실태조사 시에는 다문화 한부모의 비중을 다소 과 표집하고 자녀관련 요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형진(2017). 국적법 제도 속에 나타난 '독일국민'의 법적 개념 변화, 독일연구, 35, 5-51.
- 김강남(2016).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다문화와 평화, 10(3), 54-84.
- 김성옥(2013).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지원서비스의 문제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2012).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3, 31-67.
- 김이선·김영란·이해응(2016). 다문화가족의 구성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3.
- 김태원(2011). 저출산과 독일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연구. 민족연구, 48. 96-117.
- 문흥안(2013)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비판적 검토 가족법연구, 27(1), 277-316.
- 박영신(2014).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지원 사례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2016).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7). 2017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 심인선(2013). 경남 한부모 다문화 가정 실태와 과제. 경남발전, 129, 103-111.
- 여성가족부(2016).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 여성가족부(2017a).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17b).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7년도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2017c).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II) 부록.

- 이규영·김경미(2009).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정치 참여: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27(2), 1-24.
- 이용승(2007). 독일의 다문화 가족 정책, 민족연구, 31, 113-129.
- 이지훈(2013). 이혼·별거 다문화 가족의 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주(2013).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23(1), 171-214.
- 임종헌·한형서 (2011). 메르켈 정부 수립 이후의 복지정책 변화와 방향. 한·독 사회과학논총, 21(2), 189-216
- 장명선(2015).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공공사회연구 5(4), 72-106.
- 정예리(2011). 해체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삶-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재훈(2010). 독일의 저출산문제 등장 배경과 정책적 대응 양상, 민족연구, 41, 168-190.
- 조성혜(2007). 독일의 양육 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 공법학연구, 8(3), 561-592.
- 최승인(2012). 다문화 한부모가정 발생 전후 삶의 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팜티휀짱・김영순・박봉수(201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유형에 따른 영유 아기 자녀양육 경험. 교육문화연구 20(4), 137-164.
-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 한영빈(2013). 독일의 이주통합정책. 다문화사회연구, 8(1), 39-70.
- 희망제작소(2016). 다문화정책 연구 보고서: 새로운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 生きるための経濟學〈選擇の自由〉からの脫却(NHKブックス)(2008). 살아가기 위한 경제학, 선택의 자유로부터 벗어나기, 야스토미 아유무, 2008년, NHK출판사.

#### <재인용 자료>

Rita Süssmuth, 2009: 한영빈, 2013에서 재인용

행자부, 2007: 이용승, 2007에서 재인용

BMFSFI, 2004: 정재훈, 2010에서 인용

김순임·민춘기, 2011: 김영란, 2012에서 재인용

박복순 외, 2013: 희망제작소, 2016에서 재인용

#### <온라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인출일: 2017년 12월 8일) http://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인출일: 2017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316 (인출일: 2017년 11월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 분양임대 안내페이지

https://blog.naver.com/together\_sh/220973991117 (인출일:2017년 11월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워 홈페이지

http://www.childsupport.or.kr (인출일: 2017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 (인출일: 2017년 11월 14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검색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51.do (인출일: 2017년 11월 20일) 아이돌보미서비스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31.do (인출일: 2017년 11월 30일) 지역아동센터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32.do (인출일: 2017년 11월 30일) 취약위기 가족 지원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33.do (인출일: 2017년 11월 3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부, 제2조.

https://www.unicef.org/magic/media/documents/CRC\_korean\_language\_ve

rsion.pdf (인출일: 2017년 11월 28일).

통계청 2016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 q=364679&pageNo=1&rowNum=10&amSeq=&sTarget=title&sTxt= (인출일: 2017년 11월 17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의 한부모주거지원사업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http://www.kihf.or.kr/lay1/bbs/S1T62C63/A/3/view.do?article\_seq=982&m ode=view&tp=1 (인출일: 2017년 11월 20일)

# 부록

부록 1.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면담지

## 부록 1.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면담지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면담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양육지원」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다문화 한부모 어머님께 면담 조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본 면담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야기 나눈 내용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응답하신 내용은 실명이 아닌 응답자 A, 응답자 B 등으로 정리됩니다. 허락하시면 면담 상황을 녹음하였다가 전사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우남희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부연구위원 02-398-7775 mkkwon@kicce.re.kr 이재희 부연구위원 02-398-7773 leejaehee@kicce.re.kr

L	7	H	Ö	i Hi	내경

1.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 )세	
2. 귀하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 )	
3. 귀하가 한국의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4. 귀하가 결혼한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5. 남편과 헤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혼 □② 사별 □③ 기트 6. 귀하의 자녀 수, 연령, 이용 및 재원 기관은?	ŀ

6-1.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부터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자녀수 ( )명					
구분	· 연령 성별		이용 및 재원 기관		
자녀 1	만 (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이상** □ ⑦ 직장인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		
자녀 2	만 (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이상** □ ⑦ 직장인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		
자녀 3	만 (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이상** □ ⑦ 직장인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		
자녀 4	만 (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이상** □ ⑦ 직장인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		
자녀 5	만 (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이상** □ ⑦ 직장인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		

기 바라나요?  2. 그럼 상황별로 경험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가. 결혼 생활  □ 결혼 후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결혼 후 시부모님과는 어떠했나요? □ 결혼 후에도 직장에 다니셨나요? □ 결혼 후 같은 국적의 사람과 교류가 있었나요?(친구들) □ 사별(이혼)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체류자격, 양육권, 경제적 어려움) □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었나요? □ 현재도 시부모님과 교류가 있나요? □ 이혼/사별 별거 이전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 ① 자녀와 함께 거주함 □② 모국에 있음 □③ 시부모님 댁에 있음 □④ 기타친척
□① 취업하였음(⇔10·1) □② 취업하지 못함 9·1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II. 면담 질문  1.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 바라나요?  2. 그럼 상황별로 경험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가. 결혼 생활  □ 결혼 후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결혼 후 시부모님과는 어떠했나요? □ 결혼 후에도 직장에 다니셨나요? □ 결혼 후 같은 국적의 사람과 교류가 있었나요?(친구들) □ 사별(이혼)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체류자격, 양육권, 경제적 어려움) □ 해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었나요? □ 현재도 시부모님과 교류가 있나요? □ 현재도 시부모님과 교류가 있나요?	
1.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 바라나요?  2. 그럼 상황별로 경험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가. 결혼 생활      결혼 후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결혼 후 시부모님과는 어떠했나요?     결혼 후 집안 직장에 다니셨나요?     결혼 후 같은 국적의 사람과 교류가 있었나요?(친구들)     사별(이혼)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체류자격, 양육권, 경제적 어려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었나요?     현재도 시부모님과 교류가 있나요?     현재도 시부모님과 교류가 있나요?     이혼/사별 별거 이전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① 취업하였음(➡10-1) □② 취업하지 못함 9-1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기 바라나요?  2. 그럼 상황별로 경험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가. 결혼 생활  □ 결혼 후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결혼 후 시부모님과는 어떠했나요? □ 결혼 후에도 직장에 다니셨나요? □ 결혼 후 같은 국적의 사람과 교류가 있었나요?(친구들) □ 사별(이혼)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체류자격, 양육권, 경제적 어려움) □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었나요? □ 현재도 시부모님과 교류가 있나요? □ 이혼/사별 별거 이전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Ⅱ. 면담 질문
<ul> <li>가. 결혼 생활</li> <li>□ 결혼 후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li> <li>□ 결혼 후 시부모님과는 어떠했나요?</li> <li>□ 결혼 후에도 직장에 다니셨나요?</li> <li>□ 결혼 후 같은 국적의 사람과 교류가 있었나요?(친구들)</li> <li>□ 사별(이혼)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ul> <li>(체류자격, 양육권, 경제적 어려움)</li> </ul> </li> <li>□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었나요?</li> <li>□ 현재도 시부모님과 교류가 있나요?</li> <li>□ 이혼/사별 별거 이전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li> </ul>	1.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 바라나요?
□ 결혼 후 시부모님과는 어떠했나요? □ 결혼 후에도 직장에 다니셨나요? □ 결혼 후 같은 국적의 사람과 교류가 있었나요?(친구들) □ 사별(이혼)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체류자격, 양육권, 경제적 어려움) □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었나요? □ 현재도 시부모님과 교류가 있나요? □ 이혼/사별 별거 이전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 (이혼) 아이와 아버지와의 교류가 있나요? □ (이혼) 이혼의 결정을 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 았나요?	□ 결혼 후 시부모님과는 어떠했나요?

#### 나, 주거 및 경제, 재산

- □ 아이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있나요? 저축 가능한 정도인가요?
- □ 이혼 사별 이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 □ 사는 곳을 구할 때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어떤 곳의 도움을 많이 받았나요?

#### 다. 자녀 양육

- □ 자녀를 양육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가요?
- □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 제도가 있나요?
- □ 자녀양육에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
- □ 자녀양육에서 어머니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 □ 자녀양육에서 어머니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 □ 양육 때문에 자녀가 모국에 다녀온 적이 있나요?
- □ (다녀온 후 자녀가 어떠한 부분을 많이 어려워했나요?)
- □ (이혼)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계신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 요청 경험?)

#### 라. 자녀 관련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나요?(보내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 □ 자녀가 어린이집(학교)에 적응을 잘 하나요? 자녀의 학교생활은 어떠한가요?
- □ 자녀와 함께 보낼 시간이 있나요? 자녀와 휴일에 어떤 일을 하나요?
- □ 혹시 이혼/사별 이후 자녀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나요?
- □ 혹시 이혼/사별 이후 자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 이혼/사별 이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 마. 건강 및 일반복지

- □ 의료보험 혜택은 받고 있나요?
- □ 자녀의 영유아 건강 진단은 받고 있나요? 본인은 건강진단 등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 □ 기초 생활 수급 받으신 적이 있나요?

#### 바. 직장 및 사회관계

□ 현재 주로 교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현재 직장은 어떻게 구하게 되셨나요?
직장을 구하실 때 어떤 것이 어려우셨나요?
□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나요? 4대 보험이 가입되었나요?
□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직장에서 특별히 힘든 점은 없나요?

#### 사. 귀화

- □ 귀화를 몇 번이나 신청하셨나요?
  □ 귀화과정의 어려움은 없나요?
  □ 귀화를 하는데 도움 받은 곳은 없나요?
  □ 향후 귀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 아. 한국사회 인식 및 문화 적응
- □ 한국이 자녀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로서 한국사회에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자. 향후 계획

- □ 계속 한국에 거주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귀국할 계획이신가요?
- □ 계속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어떠한 부분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 차. 정책 이용 및 요구

- □ 다문화 가족이어서 받은 혜택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 혹은 한부모 가족이라 받은 혜택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나요?
- □ 현재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 □ 현재 어떤 도움이 마련 또는 개선되었으면 하나요?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정리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연구협력진

이 신 옥 (서울특별시 주무관)

연구보고 2017-20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 방안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정인애드 02) 3486-679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33-6 9359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87 "952336"